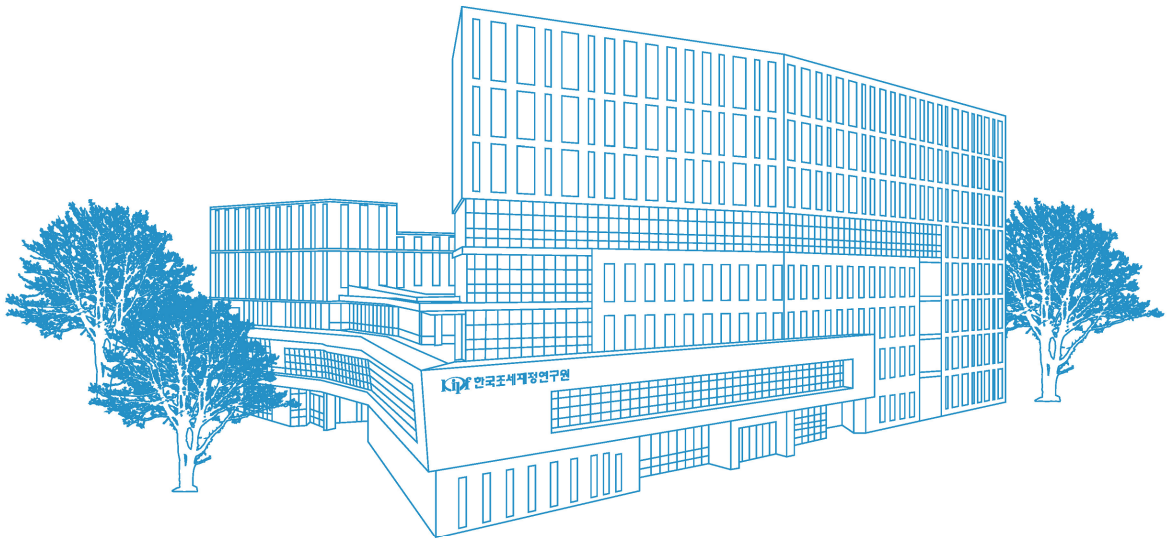


GAFSC  
IPSAS 연구

2024

#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2025. 5.



동 보고서는 2024년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https://www.ipsasb.org/meetings>).

## ■ 연구책임자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진태호 국가회계팀 팀장

## ■ 공동집필진

임정혁 특수전문직2급  
안지현 특수전문직3급  
김보성 특수전문직3급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25. 4. 30., 국가회계팀)

- **(목적)**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결과를 공유함으로써 IPSAS에 대한 이해 증진
  - IPSASB의 최근 논의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 공공부문회계 관계자의 IPSAS에 대한 이해 지원
- **(주요 구성)** IPSASB 및 IPSAS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자료와 IPSASB 정례회의 안건에 대한 프로젝트별 분석결과로 구성
  - 국가회계에 대한 영향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5개의 프로젝트별로 당해 기간 중 논의된 IPSASB 정례회의 안건의 분석결과를 편집·정리

〈 IPSASB 안건 분석 보고서 모음집의 구성 〉

IPSASB 프로젝트	2024				합계 <sup>1)</sup>
	Q1	Q2	Q3	Q4	
① 재무제표 표시	✓	✓	✓	✓	4
② 리스	✓	✓			2
③ 지속가능성	✓	✓		✓	3
④ 천연자원	✓	✓	✓	✓	4
⑤ 중요성 판단 기준				✓	1

1) IPSASB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전체 개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01 | IPSASB와 IPSAS의 소개

- 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연혁 ..... 3
- ②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 4
- ③ 국가회계기준과 IPSAS의 관계 ..... 5

## 02 | 2024 IPSASB 안건 분석 보고서 모음(프로젝트별)

- ①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11
- ② 리스(Leases) ..... 53
- ③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63
- ④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101
- ⑤ 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 125



# 01

## IPSASB와 IPSAS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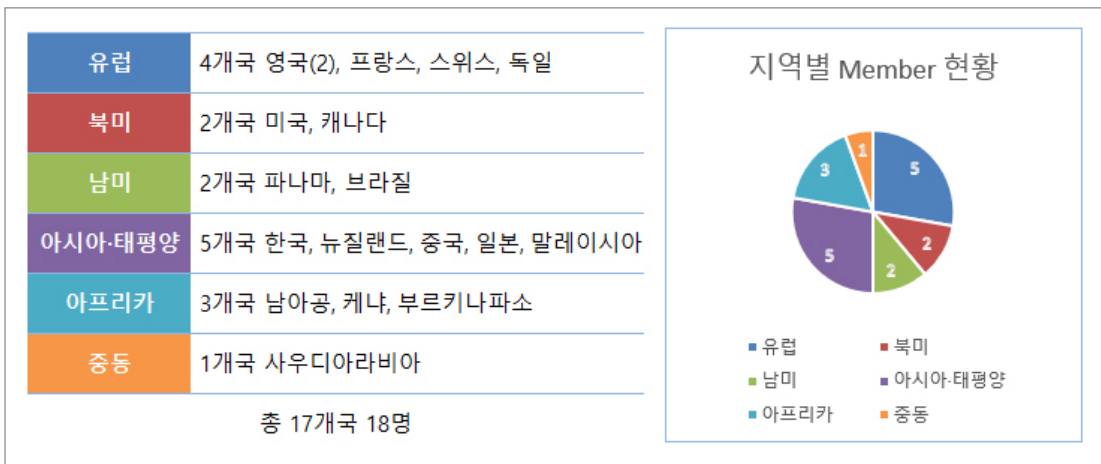
- 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연혁
- ②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 ③ 국가회계기준과 IPSAS의 관계



# 1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sup>1)</sup>) 연혁

- 1986년 국제회계사연맹(IFAC)에 의해 **공공재무관리(PFM)\*** 및 **회계책임성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위원회(PSC<sup>2)</sup>) 설립
  - \* Public Financial Management(PFM)는 공공서비스 결과물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실체의 재무적 자원을 계획·감독·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함
- 1996년 **국제회계기준 제정 역할**을 시작한 이후, 2004년 정부 등 공공부문을 위한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 개발 및 발행에 중점을 둔 IPSASB로 위원회 명칭 변경
- 현재 **매년 4회 개최되는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재무보고 개선 및 공공재무관리 강화를 위한 회계기준 및 지침 개발
- IPSASB는 **17개국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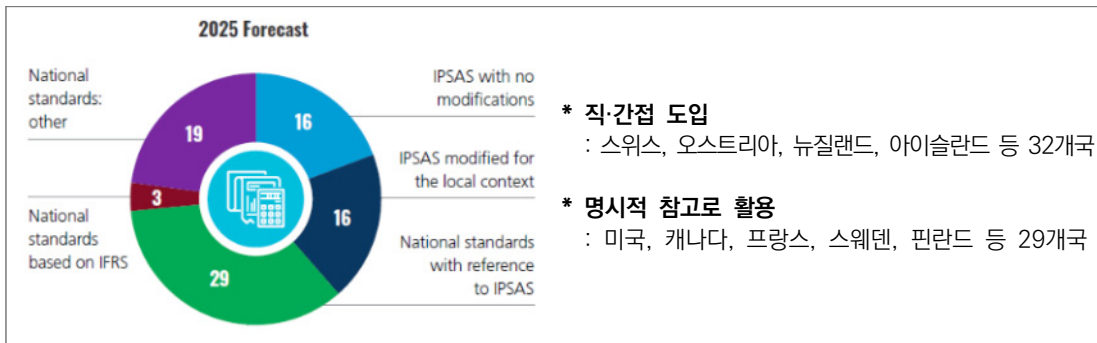
〈지역별·국가별 IPSASB 위원 현황(2025년 4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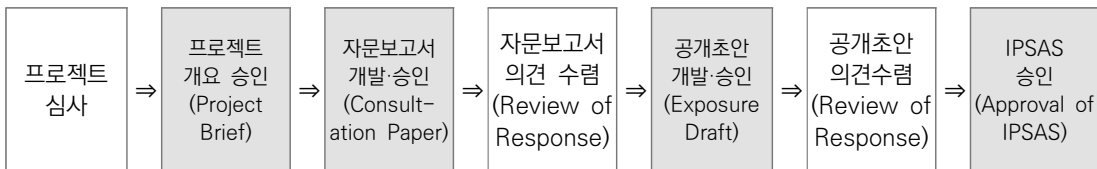
1)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2) Public Sector Committee

## 2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 IPSAS는 민간부문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비견되는 공공부문의 국제적 회계기준으로 개념체계와 49개의 개별 기준서로 구성
- IFAC은 2025년까지 발생주의 도입국가 중 73%(61개국)에서 IPSAS를 도입 또는 참고할 것으로 예상<sup>3)</sup>



- IPSASB는 IPSAS와 국제회계기준(IFRS), 정부재정통계지침(GFS) 간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정책 적용
- IPSAS 제·개정 시 자문보고서(CP) 및 공개초안(ED)을 공개하여 의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 IPSASB는 2025년 4월 현재 재무제표 표시, 리스, 지속가능성, 천연자원, 중요성 판단 기준 등 총 5개의 IPSAS 제·개정 프로젝트 진행 중

3) 자료: IFAC-CIPFA, *International Public Sector Financial Accountability Index 2021 Status Report, 2021*.

### 3 국가회계기준과 IPSAS의 관계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가의 재정활동을 발생주의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원칙으로, 2009년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회계투명성 확보 및 재정정보 품질 제고 목적으로 IPSAS 등 국제적 회계 기준을 참고하여 국가회계기준을 개선\*하여 왔음
  - \* 국민중심 국가결산 체계 개편을 위한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 전면 개편(2024년) 등
- IPSASB 프로젝트는 국가회계 개선 전략 및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가능하므로 국가회계재정 통계센터는 향후에도 IPSAS 제·개정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



2024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 02

## 2024 IPSASB 안건 분석 보고서 모음 (프로젝트별)

- ①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② 리스(Leases)
- ③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④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⑤ 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IPSASB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진행단계〉

(2024년 말 기준)

IPSASB 프로젝트	목표 및 주요 내용	진행단계			
		PB	CP	ED	IP
① 재무제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PSAS 개념체계 및 IAS 1 개정사항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현행 IPSAS 1의 개정</li> </ul>				
② 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인리스(concessionary leases) 등 공공부문 특유 이슈 반영을 위한 IPSAS 43, 리스의 개정</li> </ul>				
③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부문실체의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를 위한 기준서 개발</li> </ul>				
④ 천연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자원의 잠재적인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함</li> </ul>				
⑤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PSAS 기반 GPFS 작성 과정에서의 중요성 판단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개발</li> </ul>				

주: 1. 과제 제안, CP: 자문보고서, ED: 공개초안, IP: 기준서 발표





1

**재무제표 표시**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 배경 및 목적

- (배경) 개념체계 발표 및 IAS 1 개정 추진에 따른 현행 IPSAS 1의 개정 소요 발생
  - 현행 IPSAS 1, 재무제표 표시(2006년 최초 개정)와 개념체계(2014년 발표) 간의 정합성 등 검토 필요
  - IPSAS 1의 개발 토대였던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중 신규 기준서로 대체될 예정
- (목적)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신규 기준서 발표 및 관련 기준서 개정<sup>4)</sup>
- (추진 방법) 프로젝트 목적의 효과적·효율적 달성을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1단계) 신규 기준서 관련 자문보고서 발표 및 의견수렴
  - (2단계) 신규 및 관련 기준서 개정사항 반영된 공개초안 발표
  - (3단계) 공개초안 의견수렴 결과 반영한 최종안 발표

## ■ 진행 경과(2024년 말 기준)

- 프로젝트 개요 승인(2023. 9.) 후 IPSAS 1 대체 신규 기준서와 관련된 이슈 논의를 위한 자문보고서를 개발 중임

Project Brief (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 (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 (공개초안)	IPSAS (기준서 발표)
--------------------------	-------------------------------	--------------------------	-------------------

4) IPSAS 2, 현금흐름표, IPSAS 22, 일반정부부문에 관한 정보 공시, IPSAS 24, 재무제표상 예산정보의 표시 이상 3개 기준서

## ■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보고서

### 1 2024년 3월 정례회의

- (발표자) Anthony Heffernan
- (목적)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할 새로운 IPSAS 기준서를 개발하여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보고된 재무정보의 의사소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진행 경과
  - 연구 및 범위 설정 단계 완료(~2023년 9월)
    -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목표와 적용범위, 최종 산출물, 자문보고서 개발 절차 논의
    - IPSAS 22, 일반정부부문에 관한 정보 공시, IPSAS 24, 재무제표상 예산정보의 표시 관련 교육 세션 진행
  - 프로젝트 개요 승인(2023년 9월)
    - 다만, 프로젝트 범위를 IPSAS 1, 재무제표 표시의 적용범위로 국한하도록 결정
  - 자문보고서 개발 단계 착수
    - 재무제표의 목적
    -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선택적 접근 방식 허용에 대한 논의
- 정례회의 논의사항
  - 일반 표시 규정(general presentation requirements) 관련 쟁점 및 대안 논의
    - ①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정비
      - IPSASB 개념체계 제5장과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의 정의 문구 개정
      - '순재무상태(net financial position)'를 '순자산/자본(net assets/equity)'으로 대체

② 추가 비교정보(Additional Comparative Information)

- IFRS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세 번째 재무상태표(a thir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도입

\* IAS 1의 경우 2007년 개정에 따라 회계정책 변경효과의 소급 적용이나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 재무제표상 표시 항목의 재분류로 인해 비교기간의 개시 순자산/자본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비교기간의 개시일 현재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함

③ 상계(Offsetting)

- 현행 IPSAS 1과 동일하게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의 상계 금지 원칙 유지 제안

④ 공정한 표시(Fair Presentation), IPSAS 준수(Compliance with IPSASs)

- 현행 IPSAS 1의 공정한 표시 및 IPSAS 준수 관련 일반 규정의 유지 권고

⑤ 당기손익 외부에 표시하는 수익 및 비용의 표시

- 일부 수익·비용 항목을 순자산/자본변동표에 직접 표시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한 투명성 저해 우려 제기
- 당기손익 외부에 별도로 표시하는 IFRS의 기타포괄손익(OCI) 개념 도입 방안의 타당성 논의
- 정부재정통계(GFS)상 표시 방법과의 비교를 통한 국제적 정합성 제고 가능한 표시 방안 모색 유도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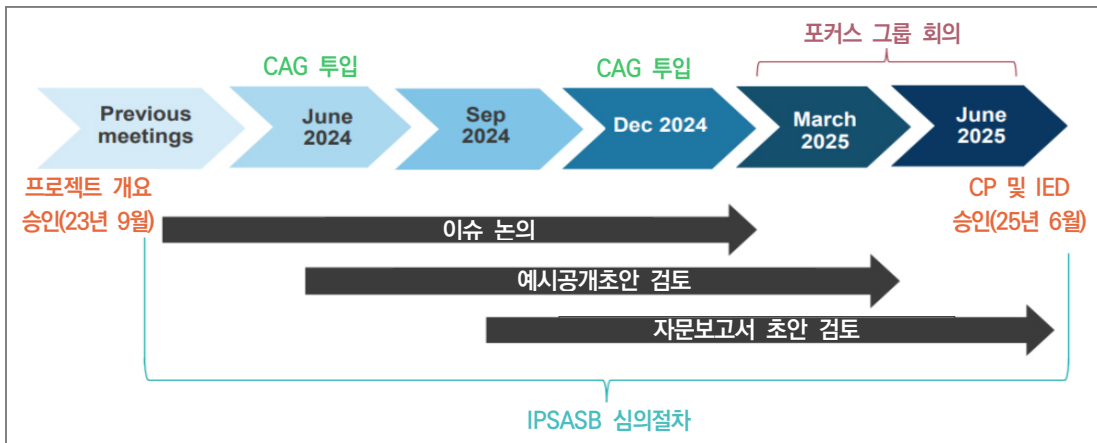
시사점

- 해당 사항 없음

2 2024년 6월 정례회의

- (발표자) Anthony Heffernan
- (목적)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할 새로운 IPSAS 기준서를 개발하여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보고된 재무정보의 의사소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진행과정〉



□ 진행 경과

- 지난 2023년 9월 IPSASB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프로젝트 개요 승인
- 프로젝트 개요 승인 이후 자문보고서 개발 시작
  - 프로젝트 목표, 범위, 정의, 접근방식 개발
  - 재무제표의 목적, 표시의 일반원칙, 재무제표 요소 검토

□ 정례회의 논의사항

- 재무상태표 표시에 대한 논의
  - 자산과 부채의 분류, 재무상태표 구조 및 소계, 시행지침
- 예시적 공개 초안 검토
  - 목적, 범위, 기타 정의,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안건 8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8.2.1	<p><b>자문보고서 및 예시공개초안의 개발</b></p>					
	<p><b>[목적]</b> IPSAB의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의 일부로서 자문보고서 및 그에 수반되는 예시공개초안(IED)을 개발에 관한 경과를 IPSASB에 보고하는 것이다.</p>					
	<p><b>[프로젝트 요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할 새로운 IPSAS를 개발함으로써 공공부문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의 의사소통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의 핵심은 책임과 의사결정 목적으로 일반목적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보고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li> <li>○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구조, 위치, 요구되는 최소 공시 및 현재 IPSAS 1에 제시된 전반적인 표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li> <li>○ 이 프로젝트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장려하고 대안적인 표시 접근방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개발되고 있다.</li> </ul>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50 802 605 931">1단계 - 자문보고서(CP) 및 예시공개초안(IED)</td> <td data-bbox="605 802 1294 931">프로젝트의 현재 단계는 IPSAS 1을 대체할 기존 표시 규정의 개선사항 관련 IPSAB의 예비 견해에 대한 피드백 단계이다. IED는 CP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IPSASB의 예비 견해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td> </tr> <tr> <td data-bbox="350 931 605 1060">2단계 - IPSAS 1을 대체할 공개초안(ED) 전문과 다른 IPSAS 기준서의 후속 개정사항</td> <td data-bbox="605 931 1294 1060">1단계로부터의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ED 전문 및 다른 IPSAS 기준서의 후속 개정서를 개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td> </tr> <tr> <td data-bbox="350 1060 605 1120">3단계 - IPSAS 최종 공표문</td> <td data-bbox="605 1060 1294 1120">2단계에서 받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종 IPSAS 및 다른 IPSAS 기준서의 후속 개정사항의 발표를 위한 버전이 개발될 것이다.</td> </tr> </table>	1단계 - 자문보고서(CP) 및 예시공개초안(IED)	프로젝트의 현재 단계는 IPSAS 1을 대체할 기존 표시 규정의 개선사항 관련 IPSAB의 예비 견해에 대한 피드백 단계이다. IED는 CP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IPSASB의 예비 견해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 - IPSAS 1을 대체할 공개초안(ED) 전문과 다른 IPSAS 기준서의 후속 개정사항	1단계로부터의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ED 전문 및 다른 IPSAS 기준서의 후속 개정서를 개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3단계 - IPSAS 최종 공표문
1단계 - 자문보고서(CP) 및 예시공개초안(IED)	프로젝트의 현재 단계는 IPSAS 1을 대체할 기존 표시 규정의 개선사항 관련 IPSAB의 예비 견해에 대한 피드백 단계이다. IED는 CP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IPSASB의 예비 견해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 - IPSAS 1을 대체할 공개초안(ED) 전문과 다른 IPSAS 기준서의 후속 개정사항	1단계로부터의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ED 전문 및 다른 IPSAS 기준서의 후속 개정서를 개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3단계 - IPSAS 최종 공표문	2단계에서 받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종 IPSAS 및 다른 IPSAS 기준서의 후속 개정사항의 발표를 위한 버전이 개발될 것이다.					
	<p><b>[자문보고서(CP) 및 예시공개초안(IED)의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CP와 IED를 개발하는 것이다. IPSASB는 이 프로젝트가 공공재정관리(PFM) 체계 내에서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중요성과 보고체계에 대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CP 내용을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단계를 통해 IPSASB는 최종 기준을 작성하기 전에 대안적인 표시 접근법과 개념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다.</li> <li>○ 스태프들은 태스크포스와 협의하여 CP 및 IED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프로세스를 공식화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핵심이슈 선정(IED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함)</li> <li>- 2A단계: IED 개발(1단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태스크포스 검토 및 IPSASB 승인을 위해 초안이 작성됨)</li> <li>- 2B단계: 자문보고서 초안 개발(IED 논의 후 작성)</li> </ul> </li> </ul>					
8.2.2	<p><b>재무상태표 표시 요건</b></p>					
	<p><b>[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상태표 표시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는 데 사용된 접근 방식을 전달한다.</li> </ul> <p><b>[배경]</b></p> <p>주요 재무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재무제표(primary financial statements)' 표시를 위한 IED(예시공개초안)의 요구사항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는 지난 분기에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표시 문제를 고려하는 작업을 시작했다.</li> <li>* '주요 재무제표(소위 주재무제표)'는 주석을 제외한 IPSAS 1에서 요구하는 전체 재무제표를 의미함</li> </ul>					

안건 항목	내용
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태프는 2024년 3분기와 4분기 동안 다른 주요 재무제표(예: 재무성과표 및 순자산/자본변동표)를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의 분과별 토의를 바탕으로, 재무성과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이슈를 확인하였다.</li> <li>○ 일단 IPSASB가 주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각 재무제표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면, 제안된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재무제표 구성요소 사이의 연결성과 일관성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종 분석이 완료된다.</li> <li>○ 이 프로젝트의 결과에는 주요 재무제표를 표시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나 옵션의 개발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CP 및 IED의 최종 IPSASB 승인을 얻기 전에 포커스 그룹 피드백을 구할 것이다.</li> </ul>
	<p><b>[재무제표의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2월, IPSASB는 공공부문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IPSASB 개념체계')에서 설명된 대로 공공부문에 대한 일반목적 재무보고서(GPFR)의 목적과 사용자를 기반으로 재무제표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고려했다.</li> <li>○ IPSASB는 재무제표의 목적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 및 회계책임 평가에 유용한 보고실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자본, 수익, 비용, 순자산/자본의 기타 변동 및 현금흐름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li> <li>○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동안 실체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공유된 경제적 특성을 기반으로 거래와 잔액을 광범위한 계층으로 그룹화하여 거래 및 기타 사건의 재정적 영향을 묘사한다.</li> </ul>
	<p><b>[재무상태표의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라고도 함)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전체 재무제표 세트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요 재무제표 중 하나이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시점(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에 실체가 보유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본으로 표시되는 실체의 자원과 의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문 발생회계의 초석이다).</li> <li>○ 재무상태표는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경영진이 회계실체의 자원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이행한 정도</li> <li>(b) 전기에 수행된 자금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부채 수준</li> <li>(c) 단기 동안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자원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의 가용성</li> <li>(d) 단기 및 장기의 재정적 의무와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li> <li>(e)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한 회계실체의 '순자산/자본'</li> </ul> </li> </ul>
	<p><b>[개선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프로젝트의 연구 및 범위 설정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재무상태표 표시와 관련하여 특별한 우려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 및 국내 기준 제정자들의 개발에 따라 여러 개선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다.</li> </ul>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태프 분석에 따르면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정보는 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본을 보고함으로써 다양한 국가 및 공공부문실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세서의 구성 방식, 자산과 부채의 분류, 중간합계 보고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li> <li>○ 기존 요구사항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스태프 분석은 주로 공공부문별 사용자 요구에 대한 대응과 다음 요소의 균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FRS와 적절한 연계를 유지</li> <li>(b) GFS와의 불필요한 차이를 줄임</li> <li>(c) 각 국가 공공부문 기준 제정자의 관련 작업 결과를 고려</li> </ul> </li> <li>○ IPSAS 1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IPSAS 개발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은 실체별·국가별 고려사항에 기반하여 개발된 다양한 접근법을 유연하게 허용하면서도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로 표준화해야 하는지이다.</li> </ul>

참고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관련 교육세션 내용 요약

- (발표자) Nick Barlow
- (목적)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내용 소개
- 정례회의 논의사항
  - (목적) 재무성과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IFRS 회계기준 도입
    -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더 나은 정보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 대응
    - 재무제표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 개선
    -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한 더 나은 기반을 투자자에게 제공
  - (주요 내용)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새로운 요구사항
    - '영업손익' 포함, 손익계산서에 새로운 중간합계 설치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에 대한 공시
    - 정보의 그룹화에 대한 지침 강화(통합 및 세분화)
  - (세부내용 1) 손익계산서상 범주 및 중간합계
    - (투자자의 우려)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내용과 구조가 다양하므로 재무성과 비교가 어려움
    - (IFRS 18) 일관된 손익계산서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세 가지 범주 제시(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두 가지 중간합계 제시(영업손익,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의 손익계산서 구조〉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범주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타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영업권 손상차손	
기타 영업비용	
<b>영업손익<sup>1)</sup></b>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손익	투자범주
기타 투자이익	
<b>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sup>2)</sup></b>	
차입금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재무범주
퇴직연금부채 이자비용	
법인세차감전손익	
법인세비용	
당기손익	

1) 영업손익: 기업의 영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

2)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 재무범주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 기업의 성과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

○ (세부내용 2)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 (정의) IFRS 회계 기준서에서 요구되지 않거나 특별히 면제되는 이익 및 비용의 중간합계로, 재무제표 외 공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전달하는 데 사용됨
- (투자자의 우려) 투자자는 MPMs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측정값이 계산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

- (공시) IFRS에서 정의한 중간합계로의 재조정, MPM이 보고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MPM이 계산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 MPM의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

**〈현재 사용되는 대체 성과 측정(MPMs) 또는 non-GAAP 측정의 예〉**

- 조정영업이익
- 조정당기손익
- 조정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잉여현금흐름
-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 (세부내용 3) 정보의 그룹핑 - 통합 및 세분화
  - (투자자의 우려) 일부 기업은 자세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 있음
  - (IFRS 18) 정보의 그룹핑을 위한 강화된 요구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에 맞게 항목을 통합 또는 세분화하는 지침을 마련
- (효과) 더 나은 결정을 위한 더 나은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비교가능성, 투명성 및 정보 유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지침에 미치는 영향 등) IAS 1 재무제표의 표시를 대체하며, 새로운 표시와 공시를 요구함. 다만 기업이 재무제표 항목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방법은 변경되지 않음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시사점**

- 민간 기업의 경우 IFRS 18의 확정 발표에 따라 재무성과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며, 특히 손익계산서의 작성 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임.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경우 현재 재정운영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구조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IFRS 18의 손익계산서상 범주 및 중간합계 등을 고려한 것은 아님. 따라서 앞으로 민간 기업에 IFRS 18이 도입되는 경과와 IPSAS에서 IFRS 18과 다른 공공 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2024년 9월 정례회의**

□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 경과

- (배경) IPSAS 개념체계 및 IAS 1 개정사항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현행 IPSAS 1의 개정 소요 발생
  - 현행 IPSAS 1, 재무제표 표시(2006년 최초 개정)와 개념체계(2014년 발표) 간 정합성 검토 필요성 제기
  - IPSAS 1의 개발 토대였던 IAS 1, 재무제표 표시가 2024년 중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로 개정 대체
- (목표)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신규 기준서 발표 및 관련 기준서<sup>5)</sup>의 단계별 개정
  - (1단계) 신규 기준서 관련 자문보고서 발표 및 의견수렴
  - (2단계) 신규 및 관련 기준서 개정사항 반영된 공개초안 발표
  - (3단계) 공개초안 의견수렴 결과 반영한 최종안 발표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및 경과(2024년 9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2.12월	B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추진 배경 논의</li> <li>• 연구활동 결과 보고</li> </ul>
2023. 6월	B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목표, 적용범위, 주요 이슈, CP 발행 여부 논의</li> </ul>
2023. 9월	BP	BP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 22 및 IPSAS 24 관련 교육세션 개최</li> <li>• 프로젝트 개요 승인</li> </ul>
2023.12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보고서(안) 개요 챕터 검토</li> <li>• 재무제표 표시 관련 선택지 허용 개념에 대한 논의</li> <li>• 재무성과표의 분류 및 중간합계 등에 대한 분과별 토의</li> </ul>
2024. 3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 요소별 정의, 상계 표시 일반원칙 등 이슈 검토</li> <li>• 수익 및 비용 항목의 재무성과표 외 표시에 관한 분과별 토의</li> </ul>
2024. 6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부채 분류 등 재정상태표 표시 관련 이슈 논의</li> <li>• 예시공개초안(IED)의 섹션별 검토</li> </ul>
2024. 9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상태표 작성 관련 예시공개초안(IED)의 검토</li> <li>• 자문보고서(안)의 재정상태표 작성 관련 챕터 검토</li> </ul>

5) IPSAS 2, 현금흐름표, IPSAS 22, 일반정부부문에 관한 정보 공시, IPSAS 24, 재무제표상 예산정보의 표시 이상 3개 기준서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4.12월	CP	이슈 논의	-
2025. 3월	CP	이슈 논의	-
2025. 6월	CP	이슈 논의	-
2025. 9월	ED	CP 승인	-

□ **정례회의 논의사항**(발표자: Anthony Heffernan)

-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및 예시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 개발 경과 보고
- 예시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 개발(안)의 챕터별 쟁점 검토
  -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 규정(공정한 표시와 IPSAS 준수, 비교정보 등)
  - 통합 및 세분화(IFRS 18 관련 신규 지침의 IED 반영 여부)
  - 재무상태표(유동/비유동 분류법의 일반 접근법 채택 여부 등)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시사점**

- 해당 사항 없음

<b>참고</b>	<b>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b>																																
<b>안건 9</b>	<b>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b>																																
<b>안건 항목</b>	<b>내용</b>																																
<b>9.2.1</b>	<p><b>자문보고서 및 예시공개초안의 개발</b></p> <p><b>[목적]</b> 자문보고서 및 그에 수반되는 예시공개초안(IED)의 개발에 관한 업데이트 내용을 IPSASB에 제공하는 것임</p> <p><b>[프로젝트 업데이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자문보고서와 예시공개초안을 개발하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자문보고서는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할 최종 기준서를 개발하기 전에 현행 표시 관련 규정의 개선안과 관련된 IPSASB의 예비 견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제공함</li> <li>(b) IED는 자문보고서에 제시된 IPSASB의 예비 견해를 반영할 경우 IPSAS 1을 대체할 발간물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여주는 비권위적 예시에 해당함</li> </ul> </li> <li>○ 2024년 6월에 논의된 바와 같이, Staff는 다음의 3단계 과정을 통해 공개초안의 각 섹션 및 그에 상응하는 자문보고서의 장을 개발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단계1: IED의 각 섹션과 관련된 주요 이슈 심의</li> <li>(b) 단계2A: IED의 섹션(안) 개발(단계1에 대한 IPSASB 지시사항 토대)</li> <li>(c) 단계2B: (단계1 및 단계2A에 대한 의견 토대) 상응하는 자문보고서의 장 개발</li> </ul> </li> <li>○ Staff는 위 단계법 접근법을 적용하여 매 회의마다 IPSASB가 검토할 IED의 다른 섹션을 제출할 계획임. 가능한 한 종전 회의에서의 관련 이슈 논의에 이어 단계2A와 단계2B를 동일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앞당길 예정임</li> <li>○ 이와 같이 할 경우 이번 회의에서 심의할 회의 안건에 자문보고서 초안 및 재정상태표와 관련이 있는 IED 섹션이 포함될 것임</li> <li>○ 부록A는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IED 및 CP의 각 섹션을 개발하는 계획을 개괄하면서 IPSASB가 검토 완료한 섹션들을 보여주고 있음</li> <li>○ 가장 최근까지 논의된 이슈가 반영된 자문보고서 및 IED 초안은 안건 9.3.1 및 안건 9.3.2에 제공되어 있음</li> </ul> <p>(부록A - IED 및 자문보고서 개발의 단계별 접근법 개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IED의 섹션</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계1: 이슈 논의</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계2A: IED(안) 검토</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계2B: CP(안) 검토</th> </tr> </thead> <tbody> <tr> <td>목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3.12. (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 6. (완)</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개시 챕터 리뷰 2023.12. (완)</td> </tr> <tr> <td>적용범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3.12. (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 6. (완)</td> </tr> <tr> <td>용어의 정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 3. (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 6. (완)</td> </tr> <tr> <td>재무제표의 목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3.12. (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 6. (완)</td> </tr> <tr> <td>재무제표에 대한 책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 6. (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 6. (완)</td> </tr> <tr> <td>재무제표의 구성요소</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5. 1분기</td> </tr> <tr> <td>전체 재무제표</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 4분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5. 1분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2장.</td> </tr> <tr> <td>주요 재무제표 및 주식의 역할</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 6. (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 6. (완)</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 표시 원칙</td> </tr> </tbody> </table>	IED의 섹션	단계1: 이슈 논의	단계2A: IED(안) 검토	단계2B: CP(안) 검토	목적	2023.12. (완)	2024. 6. (완)	개시 챕터 리뷰 2023.12. (완)	적용범위	2023.12. (완)	2024. 6. (완)	용어의 정의	2024. 3. (완)	2024. 6. (완)	재무제표의 목적	2023.12. (완)	2024. 6. (완)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2024. 6. (완)	2024. 6. (완)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2025. 1분기	전체 재무제표	2024. 4분기	2025. 1분기	제2장.	주요 재무제표 및 주식의 역할	2024. 6. (완)	2024. 6. (완)	일반 표시 원칙
IED의 섹션	단계1: 이슈 논의	단계2A: IED(안) 검토	단계2B: CP(안) 검토																														
목적	2023.12. (완)	2024. 6. (완)	개시 챕터 리뷰 2023.12. (완)																														
적용범위	2023.12. (완)	2024. 6. (완)																															
용어의 정의	2024. 3. (완)	2024. 6. (완)																															
재무제표의 목적	2023.12. (완)	2024. 6. (완)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2024. 6. (완)	2024. 6. (완)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2025. 1분기																														
전체 재무제표	2024. 4분기	2025. 1분기	제2장.																														
주요 재무제표 및 주식의 역할	2024. 6. (완)	2024. 6. (완)	일반 표시 원칙																														

안건 항목	내용				
9.2.1	재무제표의 식별	2024. 4분기	2025.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 규정				
	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	2024. 3. (완)	안건 9.2.4		
	계속실체	2024. 4분기	2025. 1분기		
	발생기준 회계	안건 9.2.4			
	보고기간				
	적시성				
	표시의 계속성				
	비교정보	2024. 3. (완)	안건 9.2.4		
	회계정책의 변경, 재작성 또는 재분류	안건 9.2.4			
	통합 및 세분화				
	통합 및 세분화의 원칙	2024. 6. (TF/완)	안건 9.2.5		
	상계	2024. 3. (완)			
	재무성과표				2025. 3분기 제3장. 재무성과의 표시
	수익 및 비용의 분류	2024. 4분기	2025. 1분기		
	재무성과표에 배열되어야 하는 정보				
	재무성과표에 배열되어야 하거나 주석에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				
	포괄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	2024. 4분기	2025. 1분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배열되어야 하는 정보				
	포괄손익계산서에 배열되거나 주석에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				
재무상태표			안건 9.2.2 제4장. 재무상태의 표시		
자산과 부채의 표시	2024. 6. (완)				
재무상태표에 배열되어야 하거나 주석에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	2024. 6. (완)	안건 9.2.6			
순자산	2024. 3분기				
순자산/자본변동표			2025. 1분기 제5장. 순자산변동 의 표시		
순자산/자본변동표에 배열되어야 하거나 주석에 공시해야 할 정보	2024. 4분기	2025. 1분기			
주석			2025. 2분기 제6장. 주석 및 기타 공시사항		
구조	주요 쟁점 없음	2025. 1분기			
회계정책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자본 관리					
경영진 정의 성과측정치의 관리	2025. 1분기				
기타 공시사항	주요 쟁점 없음				
9.2.2	<b>자문보고서(안)</b>				
	<b>[의결사항]</b>				
	안건 9.3.1에 제공되어 있는 자문보고서(안)의 제3장이 2024년 6월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이슈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안건 항목	내용														
9.2.2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 9.3.1은 최근까지 IPSASB가 심의한 사안이 통합된 자문보고서(안)을 보여주며, 자문보고서(안)에는 (표1)에 표시한 섹션들이 포함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표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a) 프로젝트의 개요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 개발 방법 개괄</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IPSASB는 작기 개시 섹션의 초안을 2023년 12월에 심의함</td> </tr> <tr> <td style="padding: 5px;">(b) 1장 - 새로운 표시 기준서의 개발 새로운 IPSAS의 개발 당위성 및 동인, IED의 개발에 대한 설명</td> <td style="padding: 5px;">시작 섹션은 초안과 달리 자문보고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압축됨</td> </tr> <tr> <td style="padding: 5px;">(c) 3장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본문의 자산 및 부채 표시에 관련된 주요 이슈 논의</td> <td style="padding: 5px;">당해 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IPSASB의 2024년 6월 심의 결과에 기초함</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번 회의에서는 IPSASB의 의결사항 및 지시사항을 Staff가 재무상태표에 관한 제3장에 적절하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 제3장은 주요 재무제표를 다루는 장 중에서 실질적으로 IPSASB가 논의한 첫 번째 장임</li> <li>○ 중요 개정사항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제3장(안)은 다음의 취지를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의 현행 규정에 대한 간략한 개요 제공 - 현행 규정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함</li> <li>(b) 위원회가 심의한 이슈에 대한 통찰력 부여 - 주요 사안 및 대안적 접근법에 대해 알려줌</li> <li>(c) 위원회의 예비견해에 대한 설명 제공 -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특정 이슈가 이 프로젝트의 단계2에서 추가로 논의되었어야 한다고 믿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도록 독려함</li> </ul> </li> <li>○ 제3장(안)은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표2)에 요약된 바와 같이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핵심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표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핵심 특징</th> <th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6월 IPSASB 의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산 및 부채의 분류</td> <td>IPSAS의 일반적 접근법과 같이 재무상태표 본문에서 자산·부채 분류 시 유동/비유동 접근법을 사용해야 함 그러나 자문보고서는 위원회가 고려한 다른 접근법도 반영하여야 함 유동성 순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안건 9.2.7 참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특정 표시항목의 배열</td> <td>자문보고서의 본문에 배열되어야 하는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의 목록은(목적적합하고 중요한 경우) IFRS 18과 일관성을 가져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조 및 중간합계의 표시</td> <td>IPSAS 1(및 IFRS 18)과 마찬가지로 다음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제안하지 않아야 함 (a) 재무상태표 내 표시와 관련하여 실체가 요구받는 구조(즉 순서 또는 양식)에 대한 규정 (b) 특정 중간합계의 정의 및 재무상태표 본문 표시 요구</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주요 재무제표 각각을 다룰 다른 장을 구성할 때에도 상기와 동일한 핵심적 특징을 사용하길 기대하면서도, 다른 장의 경우 IPSAS 1의 현행 규정을 보강하기 위한 제안사항과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li> </ul>	(a) 프로젝트의 개요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 개발 방법 개괄	IPSASB는 작기 개시 섹션의 초안을 2023년 12월에 심의함	(b) 1장 - 새로운 표시 기준서의 개발 새로운 IPSAS의 개발 당위성 및 동인, IED의 개발에 대한 설명	시작 섹션은 초안과 달리 자문보고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압축됨	(c) 3장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본문의 자산 및 부채 표시에 관련된 주요 이슈 논의	당해 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IPSASB의 2024년 6월 심의 결과에 기초함	핵심 특징	2024년 6월 IPSASB 의결사항	자산 및 부채의 분류	IPSAS의 일반적 접근법과 같이 재무상태표 본문에서 자산·부채 분류 시 유동/비유동 접근법을 사용해야 함 그러나 자문보고서는 위원회가 고려한 다른 접근법도 반영하여야 함 유동성 순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안건 9.2.7 참고)	특정 표시항목의 배열	자문보고서의 본문에 배열되어야 하는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의 목록은(목적적합하고 중요한 경우) IFRS 18과 일관성을 가져야 함	구조 및 중간합계의 표시	IPSAS 1(및 IFRS 18)과 마찬가지로 다음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제안하지 않아야 함 (a) 재무상태표 내 표시와 관련하여 실체가 요구받는 구조(즉 순서 또는 양식)에 대한 규정 (b) 특정 중간합계의 정의 및 재무상태표 본문 표시 요구
	(a) 프로젝트의 개요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 개발 방법 개괄	IPSASB는 작기 개시 섹션의 초안을 2023년 12월에 심의함													
	(b) 1장 - 새로운 표시 기준서의 개발 새로운 IPSAS의 개발 당위성 및 동인, IED의 개발에 대한 설명	시작 섹션은 초안과 달리 자문보고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압축됨													
	(c) 3장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본문의 자산 및 부채 표시에 관련된 주요 이슈 논의	당해 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IPSASB의 2024년 6월 심의 결과에 기초함													
	핵심 특징	2024년 6월 IPSASB 의결사항													
	자산 및 부채의 분류	IPSAS의 일반적 접근법과 같이 재무상태표 본문에서 자산·부채 분류 시 유동/비유동 접근법을 사용해야 함 그러나 자문보고서는 위원회가 고려한 다른 접근법도 반영하여야 함 유동성 순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안건 9.2.7 참고)													
	특정 표시항목의 배열	자문보고서의 본문에 배열되어야 하는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의 목록은(목적적합하고 중요한 경우) IFRS 18과 일관성을 가져야 함													
	구조 및 중간합계의 표시	IPSAS 1(및 IFRS 18)과 마찬가지로 다음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제안하지 않아야 함 (a) 재무상태표 내 표시와 관련하여 실체가 요구받는 구조(즉 순서 또는 양식)에 대한 규정 (b) 특정 중간합계의 정의 및 재무상태표 본문 표시 요구													

안건 항목	내용
<p>9.2.3</p>	<p><b>예시공개초안(안)의 개발</b></p> <p><b>[목적]</b>                      예시공개초안(IED)의 개발에 관한 업데이트를 내용을 IPSASB에 제공하는 것</p>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의 일환으로 IPSASB는 자문보고서와 함께 예시공개초안(IED)을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IED는 자문보고서에 실린 IPSASB의 예비견해를 반영할 경우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게 될 미래의 발간물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비권위적인 예시임</li> <li>○ IED는 IPSAS 개정안에 따른 일반적인 중요 표시 원칙 및 상세 규정이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보여줌. IED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IPSASB가 예상하고 있는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사의 규정과의 차이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또한 IED는 IPSAS 1의 현행 규정과 비교할 때 개정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li> <li>○ 2024년 6월에 IPSASB는 주로 IFRS 18을 토대로 하는 rules-of-the-road 접근법을 사용하여 IED(안)을 개발할 것이라는 취지를 재확인한 바 있음. 이 접근법은 IFRS로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하는 공공부문만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등한 지위의 IFRS의 규정, 구조, 문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로 한 IPSASB의 전략적 목표 및 프로젝트 개요와 일관된 것임</li> <li>○ 비록 IED가 IFRS 18을 토대로 사용하나 IED가 공공부문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한 수정은 여전히 필요함                      * 즉 공공부문의 광범위한 이용자의 회계책임 및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한 실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li> <li>○ IFRS 18 대비 수정사항의 식별 과정은 다음을 기초로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를 적용하는 데 여전히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IPSAS 1의 공공부문 특유 문단을 이월</li> <li>(b) IPSASB 개념체계와의 일관성 및 다른 IPSAS의 용어와의 내부 일관성 확보</li> <li>(c) 프로젝트 개요에서 식별한 공공부문 특유 이슈 적용</li> <li>(d) 정부재정통계(GFS)와의 불필요한 차이를 최대한 제거</li> </ul> </li> </ul> <p><b>[IED(안) 개발 과정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번 회의에서 Staff는 IED의 다음 섹션에 대한 IPSASB의 검토의견을 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재무제표에 관한 일반 규정 - 안건 9.2.4</li> <li>(b) 통합 및 세분화 원칙 - 안건 9.2.5</li> <li>(c) 재무상태표 - 안건 9.2.6</li> </ul> </li> <li>○ (a) 및 (b)의 일반 규정이 실질적인 수정 없이 IFRS 18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IPSAS 1의 현행 규정과도 일치함에도 이번 회의에서 다루는 이유는 (c)의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특정 규정을 심의할 때 필요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임</li> </ul> <p><b>[보충 자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보충자료는 IPSASB의 심의 대상인 다음의 IED(안) 섹션을 검토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안건 9.3.2 - 현재까지 완성된 IED 섹션. 여기에는 과거 IPSASB의 검토결과 및 피드백이 반영된 섹션들이 포함됨</li> <li>(b) 안건 9.3.3 - IFRS 18과의 유사성 비교표</li> <li>(c) 안건 9.3.4 - IPSAS 1과의 유사성 비교표</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9.2.4	<p><b>예시공개초안 - 재무제표에 관한 일반 규정</b></p> <p><b>[의결사항]</b>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을 다루는 IED 섹션이 적절하게 개발되었는지?                      * IPSASB는 의결 전에 안건 9.3.2에서 제공된 다음의 IED 섹션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a) 핵심 문단 - 문단38~문단68(보충자료 중 pp. 21~29)                      (b) 적용지침 - 문단AG14~AG27(보충자료 중 pp. 39~43)</p> <p><b>[권고사항]</b>                      ○ 당해 IED 섹션과 관련하여 Staff는 다음을 권고하고 있음                      (a) rules-of-the-road 접근법에 근거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일반 규정을 다루는 문단들을 IFRS 18,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와 일치시키는 것                      (b) IPS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중에서 계속하여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공공부문 관련 문단을 옮겨오는 것</p> <p><b>[배경]</b>                      ○ IPSAS 1은 주요 재무제표에 정보를 배열하는 것과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관한 일반 규정은 물론,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도 정하고 있음                      ○ 발생기준 회계 재무제표의 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반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됨                      (a) 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                      (b) 계속실체(향후 회의에서 논의 예정)                      (c) 발생기준 회계                      (d) 중요한 정보(향후 회의에서 논의 예정)                      (e) 보고빈도                      (f) 표시의 계속성                      (g) 상계                      (h) 비교정보                      (i) 회계정책의 변경, 재작성 또는 재분류                      ○ IPSAS 1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은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된 것이며, 국제 및 국가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 영리부문에 걸쳐 사용 중인 회계기준과 전반적으로 일치함                      ○ 이러한 일반 규정은 재무제표의 표시에 있어 적절한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며, 타 실체의 재무제표와의 비교 혹은 동일 실체의 보고기간별 비교를 용이하게 함                      ○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연구 및 범위 설정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작성 및 표시 관련 일반 규정과 관련된 특정 이슈는 식별되지 않았으므로, Staff는 현행 표시 규정의 중대한 변경을 모색하지 않고 있음                      ○ IPSASB가 현재 시점에서 IED의 당해 섹션(안)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이 주요 재무제표 및 주석의 표시에 관한 세부 규정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점과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임                      ○ IPSAS 1의 재무제표에 관한 일반 규정은 세 번째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면 현재 IASB가 발표한 IAS 1, 재무제표 표시에 맞추어져 있음</p>

안건 항목	내용
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SB의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도 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과 관련된 쟁점이나 우려가 식별된 바 없으므로, 기준서의 이 섹션은 IASB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음. IFRS 18의 발표로 인해 IAS 1에서 가져온 재무제표의 일반 규정을 다루는 현행 규정 및 지침은 수정되지 않았음</li> <li><b>[중전 이슈논의 결과]</b></li> <li>○ 2024년 3월에 IPSASB는 추가 고려가 필요한 사안을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재무제표 일반 규정과 관련된 다음의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li> <li>- <b>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 -</b></li> <li>○ IPSASB는 IPSAS의 준수 관련 공시사항에 관한 현행 규정이 여전히 적절한지 심의하였음. IPSAS 1의 현행 규정은 IFRS 18로 개정 없이 이전된 바 있는 IAS 1의 규정과 정합성을 가짐</li> <li>○ IPSASB는 IPSAS의 준수 관련 공시사항에 관한 현행 규정이 IED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수정 버전 IPSAS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 적절한 지침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것을 Staff에게 주문함. 복수의 위원들은 IPSAS의 준수 관련 공시사항이 IPSAS 33, 발생주의 IPSAS의 최초 채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문의함</li> <li>○ 당해 질문에 대해 Staff는 다음 사항을 주지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 1의 적용범위는 IPSAS를 준수하여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고실체에게 적용되는 것임. 만약 특정 국가가 실제로 하여금 수정 버전 IPSAS(예: 자국 회계기준 기반)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자국회계기준제정자는 당해 자국 기준의 준수에 대해 설명하는 적절한 공시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li> <li>(b) IPSAS 33은 완전 발생주의 IPSA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전환 중인 실체를 위한 지침에 해당함. 전환기간 동안 실체는 특정 경과규정 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IPSAS 33의 문단 33은 최초 채택자로 하여금 채택된 경과규정이 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를 주장하기 위한 최초 채택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li> </ul> </li> <li>○ Staff는 IPSAS의 경우 완전한 준수를 전제로 개발되므로 IED에서 수정 버전 IPSAS를 적용하는 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IPSAS 준수 관련 공시사항에 대해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다만 수정 버전 IPSAS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자국회계기준제정자가 적절한 공시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Staff 지침을 개발할 여지는 남아 있음</li> <li>- <b>비교 정보의 추가 -</b></li> <li>○ 과거에 IPSASB는 특정 상황에서의 '세 번째 재무상태표' 표시에 관한 규정을 IPSAS에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li> <li>○ 2007년에 IASB는 IAS 1의 개정을 통해 세 번째 재무상태표의 표시 규정을 도입한 바 있는데, 당해 규정은 IFRS 18에도 이전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해 개정사항은 IPSAS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li> <li>○ IAS 1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 기간의 개시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함</li> <li>(b) 이러한 소급 적용, 소급 재작성 또는 소급 재분류가 전기 기초 순자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p>9.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는 이러한 표시 규정을 공공부문에서도 적용하는 장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면서도, 이 규정이 영리부문 보고와의 일관성 유지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IED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IFRS와의 차이를 둘 만한 공공부문만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는 동의함. 위원회는 자문보고서를 통해 이 예비견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함</li> <li>- 상계 -</li> <li>○ IPSASB는 IPSAS 1에서 상계에 대해 다루는 일반 표시 규정이 IED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의한 바 있음. IPSAS 1의 현행 규정은 IFRS 18로 변경 없이 이전된 IAS 1의 규정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음</li> <li>○ 위원회는 현행 규정과 지침이 IED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음</li> <li>- 기타 쟁점 -</li> <li>○ 상기의 이슈 외에 Staff는 다음의 일반 표시 규정 원칙의 경우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계속실체 개념</li> <li>(b) 중요한 정보의 공시</li> </ul> </li> <li>○ 비록 구체적인 이슈를 제기한 이해관계자가 없었고 IFRS 18 발행으로 변경된 부분은 없었으나, 일부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개선된 지침 및 공시사항을 제안하고 있음.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이러한 원칙이 갖는 상당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Staff는 당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향후 회의에서 위원회와 논의하기 전에 T/F와 논의할 예정임</li> </ul>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계속실체 및 중요 정보 공시를 다루는 규정들에 대해 추가 분석한 결과 IFRS 18의 재무제표 일반 규정과 차이를 둘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음</li> <li>○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부문 관점에서 IPSAS 1의 현행 재무제표 일반 규정에 대한 중요한 변경은 불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B 개념체계의 원칙 및 개념과 일관성을 가짐</li> <li>(b) 동 프로젝트의 연구 및 범위 설정 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일반 규정과 관련된 공공부문 특유 이슈가 발견되지 않았음</li> </ul> </li> <li>○ IED에 포함될 재무제표 일반 규정의 개발안과 이에 대한 추가적인 Staff 의견은 안건 9.3.2에서 확인 가능함</li> </ul>
<p>9.2.5</p>	<p><b>예시공개초안 - 통합 및 세분화의 원칙</b></p> <p><b>[의결사항]</b></p> <p>통합 및 세분화 원칙을 다루는 IED 섹션이 적절하게 개발되었는지?</p> <p>* IPSASB는 의결 전에 안건 9.3.2에서 제공된 다음의 IED 섹션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핵심 문단 - 문단69~문단74(보충자료 중 pp. 21~29)</li> <li>(b) 적용지침 - 문단AG28~AG40(보충자료 중 pp. 44~48)</li> </ul> <hr/> <p><b>[권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rules-of-the-road 접근법에 따라 새로운 지침을 IED에 통합하되, 개정 범위는 공공부문의 맥락에 맞추기 위한 용어 변경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li> </ul>

안건 항목	내용
9.2.5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는 공유하는 특징에 따라 거래를 묶어 항목이라고 표현되는 잔액의 형태로 거래 및 기타 사건의 재무적 효과를 보여줌. 통합 원칙은 개별 거래 또는 항목을 더 큰 잔액에 합치는 것이며, 세분화는 통합된 잔액을 더 작은 것으로 나누는 것임. 실체는 재무제표 및 주석에 항목을 표시할 때 적절한 통합 및 세분화 수준을 스스로 판단하여 정해야 함</li> <li>○ IPSAS 1은 현재 통합 및 세분화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한정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통합은 실체의 주요 재무제표 본문에서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루어져야 함. 세분화는 주요 재무제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석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루어져야 함</li> <li>○ IPS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46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표시 항목은 해당 재무제표나 주석의 다른 항목에 통합함</li> <li>(b) 해당 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음</li> </ul> </li> <li>○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는 통합 및 세분화 원칙의 적용에 관한 보강된 지침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재무제표 본문에 배열하거나 주석에 공시할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었음</li> <li>○ IASB는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통합되거나 세부화된 정보를 항상 포함하지는 못한다는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보강된 지침을 개발하였음. 구체적으로 보면, IASB의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주요 재무제표 내 일부 표시 항목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li> <li>○ 새로운 IFRS 18 지침은 실체에게 다음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항목은 공유하는 성격을 바탕으로 분류되고 통합되며, 공유하지 않는 성격을 바탕으로 세분화되어야 함</li> <li>(b) 항목은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이 각각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되거나 세분화되어야 함</li> <li>(c) 항목의 통합 및 세분화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숨기지 않아야 함</li> </ul> </li> <li>○ IFRS 18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통합된 정보는 그로 인한 결과 정보가 중요한 경우 반드시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정보가 주요 재무제표에 배열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주석에 공시되어야 함</li> <li>○ 구체적으로 IFRS 18은 통합되는 항목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 항목으로 배열되는 항목의 경우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 외에 적어도 하나의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li> <li>○ 또한 IFRS 18은 그룹으로 묶이는 항목과 '기타'로 묘사되는 항목의 명명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FRS 18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항목을 '기타'라고 배열하거나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실체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해 정보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방법에 대해 재고해야 할 수도 있음)</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p>9.2.5</p>	<p>(b) 만약 실체가 '기타'보다 더 유용한 제목을 찾을 수 없다면 실체는 통합된 항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해야 하며(예: 기타운영비용), 합계액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갖는 항목으로만 구성된다면 실체는 그 금액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함(예; 중요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 및 가장 금액이 큰 항목의 성격과 금액에 대한 해설)</p>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IFRS 18의 통합 및 세분화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IED(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원칙적으로 당해 지침은 IPSAS의 현행 규정과 정합성을 가짐</li> <li>(b) 지침은 IPSASB 개념체계의 관련 개념에 부합함</li> <li>(c) IASB가 이 지침을 도입한 것은 현행 원칙을 더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을 돕기 위함인데, 이는 동 프로젝트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li> </ul> </li> <li>○ Staff는 IPSAS 발간물 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어 변경 이외에 IFRS 18 규정과 차이를 둘 만한 공공부문 특유의 이유를 찾거나 공공부문 특유 지침을 만들 만한 필요성을 찾지 못했음</li> <li>○ 통합 및 세분화에 관한 섹션에는 상계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IPSASB는 2024년 3월 회의에서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li> <li>○ 안건 9.3.2는 Staff의 추가 분석과 함께 통합 및 세분화를 다루는 IED의 규정 및 적용지침의 개발안을 제공하고 있음</li> </ul>
<p><b>예시공개초안 - 재무상태표의 표시</b></p>	
<p>9.2.6</p>	<p><b>[의결사항]</b></p> <p>재무상태표의 표시를 다루는 IED 섹션(안)이 위원회의 지난 의사결정 및 지시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지?</p> <p>* IPSASB는 의결 전에 안건 9.3.2에서 제공된 다음의 IED 섹션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핵심 문단 - 문단124~문단128(보충자료 중 pp. 31~35)</li> <li>(b) 적용지침 - 문단AG102~AG124(보충자료 중 pp. 48~55)</li> </ul> <p><b>[권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재무상태표 표시에 관한 규정을 IPSAS 1의 현행 규정과 정합성을 갖고 있는 IFRS 18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li> </ul>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상태표는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요 재무제표 중 하나이며,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실체의 보고기간 말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대표되는 실체의 자원과 의무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함</li> <li>○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연구 및 범위 설정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재무상태표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우려사항은 식별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공공부문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및 다음 요인들의 조화를 위해 현행 규정의 보강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FRS와의 적절한 정합성 유지</li> <li>(b) GFS와의 불필요한 차이 축소</li> <li>(c) 공공부문 자국 회계기준 제정자의 관련성 있는 작업결과 고려</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p>9.2.6</p>	<p>○ 다음 (표1)은 2024년 6월에 IPSASB가 심의한 주요 이슈와, IED의 관련 섹션과 자문보고서의 관련 장의 개발을 돕기 위해 제공된 지시사항을 요약한 것임</p> <p>(표1)</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348 479 1310 514">재무상태표</th> </tr> <tr> <th data-bbox="348 514 609 548">주요 쟁점</th> <th data-bbox="609 514 1310 548">2024년 6월 IPSASB 의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8 548 609 1124">재무상태표 본문에서 자산과 부채는 대략 어떠한 방법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td> <td data-bbox="609 548 1310 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는 자산 및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법이 IPSAS에서의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함(IPSAS 1 및 IFRS 18과 일치)</li> <li>• 이러한 판단은 다음을 근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현행 유동/비유동 분류법은 영리실체 및 공공부문실체 모두에게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li> <li>(b) 일관성 있는 표시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재무관리(PFM)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li> <li>(c) 실체의 경우 주석을 통해 자산 및 부채의 대체적인 분류 결과를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함</li> </ul> </li> <li>• 유동성 순서 표시 방법이 예외적인 기준으로 계속 허용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안건 9.2.7)</li> <li>• 자문보고서는 금융/비금융 접근법 등 IPSASB가 논의하였던 상이한 분류 방법 및 유동/비유동 분류법을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규정하는 예비건의해의 조성 과정에 대해 다룰 예정임</li> </ul> </td> </tr> </tbody> </table>	재무상태표		주요 쟁점	2024년 6월 IPSASB 의결사항	재무상태표 본문에서 자산과 부채는 대략 어떠한 방법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는 자산 및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법이 IPSAS에서의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함(IPSAS 1 및 IFRS 18과 일치)</li> <li>• 이러한 판단은 다음을 근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현행 유동/비유동 분류법은 영리실체 및 공공부문실체 모두에게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li> <li>(b) 일관성 있는 표시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재무관리(PFM)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li> <li>(c) 실체의 경우 주석을 통해 자산 및 부채의 대체적인 분류 결과를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함</li> </ul> </li> <li>• 유동성 순서 표시 방법이 예외적인 기준으로 계속 허용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안건 9.2.7)</li> <li>• 자문보고서는 금융/비금융 접근법 등 IPSASB가 논의하였던 상이한 분류 방법 및 유동/비유동 분류법을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규정하는 예비건의해의 조성 과정에 대해 다룰 예정임</li> </ul>
	재무상태표						
주요 쟁점	2024년 6월 IPSASB 의결사항						
재무상태표 본문에서 자산과 부채는 대략 어떠한 방법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는 자산 및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법이 IPSAS에서의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함(IPSAS 1 및 IFRS 18과 일치)</li> <li>• 이러한 판단은 다음을 근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현행 유동/비유동 분류법은 영리실체 및 공공부문실체 모두에게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li> <li>(b) 일관성 있는 표시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재무관리(PFM)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li> <li>(c) 실체의 경우 주석을 통해 자산 및 부채의 대체적인 분류 결과를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함</li> </ul> </li> <li>• 유동성 순서 표시 방법이 예외적인 기준으로 계속 허용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안건 9.2.7)</li> <li>• 자문보고서는 금융/비금융 접근법 등 IPSASB가 논의하였던 상이한 분류 방법 및 유동/비유동 분류법을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규정하는 예비건의해의 조성 과정에 대해 다룰 예정임</li> </ul>						
IPSASB가 특정 중간합계의 표시 등 재무상태표의 구조(순서 또는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는 IPSAS 1과 IFRS 18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에서 재무상태표가 표시되어야 할 구조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것</li> <li>(b) IPSAS에서 재무상태표 본문의 특정 중간합계의 표시를 정의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것</li> </ul> </li> <li>• 이러한 판단은 다음을 근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에서 재무상태표의 구체적인 구조를 규정하지는 않으나, 특정 표시 항목의 분류 및 배열에 관한 규정이 공공부문 사이에 일관성 있는 접근법 사용을 돕기 위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함</li> <li>(b) IPSAS에는 비권위적 자료로서 주요 재무제표의 작성 예시에 관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재무제표가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li> <li>(c) IPSAS는 추가적인 소제목 및 중간합계의 표시가 실체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경우, 이들의 유연한 표시를 허용함</li> <li>(d) IPSAS가 각기 다른 국가에서 실체의 재무상태의 다른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중인 특정 중간합계 항목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유용하거나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이는 이러한 지표가 각 국가의 판단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p>9.2.6</p>	<div style="background-color: #f2f2f2;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b>재무상태표</b></div> <p>재무상태표 본문에서 특정 표시 항목의 표시를 다루는 현행 규정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배열되어야 하는 특정 자산·부채 표시 항목의 목록이(IPSAS 1의 현행 규정과 일치하는) IFRS 18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함</li> <li>• 이러한 판단은 다음을 근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실무에서 현행 규정에 대한 우려가 발견되지 않음</li> <li>(b) 당해 목록이 배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표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체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경우에 추가적인 표시 항목이 표시되어야 함</li> <li>(c) IPSAS에서는 실체의 성격 및 거래를 바탕으로 표시 항목의 표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li> </ul> </li> </ul>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2024년 6월에 IPSASB가 내린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IED의 재무상태표 표시에 관한 섹션(안)을 개발하였으며, 당해 섹션의 요약 결과와 Staff의 고려사항의 개괄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li> </ul> <p><b>- 핵심 기준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6월에 IPSASB는 재무상태표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IFRS 18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예비견해를 확정했으며, 재무상태표와 관련하여 IASB는 중요 개정사항 없이 IAS 1의 규정을 IFRS 18로 이관한 바 있음</li> <li>○ IED(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규정은 주로 IFRS 18에 근거한 것으로, IPSAS의 현행 규정과 실질적으로 일치함. 이는 IPSAS 1이 실질적으로 IAS 1과 정합성을 갖기 때문임. IPSAS 1의 공공부문 특유의 문단은 여전히 유용하고 목적적합한 경우 IED로 이관되었음</li> </ul> <p><b>- 적용지침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ED(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적용지침(기준서의 권위 있는 부분을 구성)에는 상당한 양의 신규 지침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자산 및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법을 다루고 있음</li> <li>○ 적용지침(안)의 대부분은 현재 IPSAS 1의 문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IPSAS 1은 비교적 오래된 기준서이기 때문에 적용지침 섹션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음. Staff는 이러한 IPSAS 1 문단을 적용지침 섹션으로 이동시키는 것(IFRS 18에 대한 조치와 같음)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이러한 접근법은 적용지침이 핵심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IPSAS와 일관된 것임</li> </ul> <p><b>- IFRS 18과의 정합성 개괄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표2)는 IFRS 18의 문단이 IED(안)에 어느 정도로 포함되었는지를 보여줌</li> </ul>

안건 항목	내용		
9.2.6	(표2)		
	<b>재무상태표의 표시</b>		
	<b>핵심 기준</b>		
	<b>IFRS 18 문단</b>	<b>IED 문단</b>	<b>IFRS 18과의 정합성 정도</b>
	96 ~ 97	124 ~ 125	IFRS 18에 부합함
	98	-	당해 IFRS 18의 문단은 IPSAS에 적용되지 않는 이연법인세의 표시를 다룸
	100 ~ 104	126 ~ 131	IFRS 18에 부합함
	-	132	신규 IPSAS 문단은 IPSAS 47, 수익과 IPSAS 48, 이전비용에 따른 배열 규정을 언급하기 위한 것임
	-	133	신규 IPSAS 문단은 IED에 나열된 특정 표시 항목은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열된다는 점을 독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임
	105 ~ 106	134 ~ 135	IFRS 18에 부합함
	-	136 ~ 138	이관된 IPSAS 1의 규정임
	<b>적용지침(AG)</b>		
	B90 ~ B108	AG102 ~ AG121	IFRS 18에 부합함
	- IPSAS 1 대비 변경사항 개괄 -		
	○ 다음 (표3)은 상응하는 IPSAS 1 문단이 IED(안)에 어느 정도로 포함되었는지를 보여줌		
	(표3)		
	<b>재무상태표의 표시</b>		
	<b>IPSAS 1</b>	<b>IED 문단</b>	<b>IFRS 18과의 정합성 정도</b>
	<b>유동/비유동 구별</b>		
	70 ~ 71	124 ~ 125	IPS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72 ~ 75	AG102 ~ 105	IPSAS 1에서 이관되어 적용지침으로 이동(IFRS 18에 부합함)
	<b>유동자산</b>		
	76	126 ~ 127	IPS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77 ~ 79	AG106 ~ AG108	IPSAS 1에서 이관되어 적용지침으로 이동(IFRS 18에 부합함)
	<b>유동부채</b>		
	80	128 ~ 129	IPS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81 ~ 87C	AG109 ~ AG121	IPSAS 1에서 이관되어 적용지침으로 이동(IFRS 18에 부합함)
	<b>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b>		
88	130 ~ 131	IPS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	132	신규 IPSAS 문단은 IPSAS 47, 수익과 IPSAS 48, 이전비용에 따른 배열 규정을 언급하기 위한 것임	
-	133	신규 IPSAS 문단은 IED에 나열된 특정 표시 항목은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열된다는 점을 독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임	
89 ~ 90	134 ~ 135	IPS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91 ~ 92	AG 122	IPSAS 1에서 이관되어 적용지침으로 이동(IFRS 18에 부합함)	

안건 항목	내용		
9.2.6	<b>재무상태표 본문 또는 주석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b>		
	93	-	사용되지 않는 문단 - 상응하는 문단이 통합 및 세분화에 관한 새로운 지침에서 제공됨
	-	AG123	새로운 IFRS 18 적용지침 문단
	94	AG124	IPS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95	136	IPSAS 1에서 이관됨
	95A	-	당해 문단은 IPSAS 30, 금융상품: 공시로 이관됨(IFRS 18의 후속 개정사항에 부합함)
	96 ~ 97	137 ~ 138	IPSAS 1에서 이관됨
	98	161	IPSAS 1에서 이관되었으며, IFRS 18에 부합함
	<p>○ IED에 포함된 재무상태표의 표시에 관한 규정 및 적용지침의 개발안과 함께 Staff의 추가 분석결과는 안건 9.3.2에서 제공하고 있음</p>		
9.2.7	<b>재무상태표 - 유동성 배열법</b>		
	<b>[의결사항]</b>		
	유동성 배열법은 예외적인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 중 하나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b>[권고사항]</b>		
	○ Staff는 IPSAS 1 및 IFRS 18과 일치하도록 유동성 배열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표시를 예외사항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b>[배경]</b>		
	○ 2024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재무상태표의 본문에 자산 및 부채를 분류하는 규정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일관성 있는 표시 촉진을 위해 유동/비유동 분류법을 IPSAS의 일반 접근법으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 바 있음		
	○ 이러한 결정에 근거하여 IPSASB는 Staff에게 IPSAS에서 유동성 배열법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표시 방법으로 계속 규정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더 검토하도록 요구함		
	○ IPSAS 1의 문단 70은 재무상태표의 본문에서 자산 및 부채를 표시하는 현행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IAS 1과 정합성을 가지며 개정 없이 IFRS 18로 이관된 바 있음		
	<p>70.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충실하게 표현되면서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76~87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p>		
○ IPSAS 1과 IFRS 18은 모두 유동성 배열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이나 당해 예외사항을 적용하기에 적절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한 지침을 추가로 규정하지 않음			
○ IPSAS에서 유동성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또는 부채가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으로 언제 결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이는 자산의 예상 실현·소비 시점 또는 부채의 예상 결제 시점에 근거하는 유동/비유동 구별과는 다른 것임. 유동성 배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IPSAS 1과 IFRS 18은 모두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명확히 다루지 않음			

안건 항목	내용
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동성 배열법이 재무상태표 본문에 자산 및 부채 표시 항목을 그들의 상대적인 유동성 순서(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얼마나 빠른 시기에 결제가 요구되는지)에 따라 나열하는 것을 수반한다고 간주되고 있음. 이러한 표시 방법을 따르는 경우 재무상태표는 추가적인 분류 없이 대개 '자산' 및 '부채' 소제목만 포함하게 됨</li> <li>○ 유동성 배열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의 본문에 표시되는 자산 및 부채 표시 항목의 예상되는 만기에 관한 정보를 언급하는 것이 유용하며, 이는 IPSAS 1의 문단 71에 따른 주식 공시 방법으로 요구되는 것임</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71. 어느 표시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각 개별 항목이 보고일 후 12개월 이내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합산하여 표시되는 경우,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공공부문실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중앙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종종 유동성 배열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주로 그들의 자산이 PP&amp;E와 같은 유형자산이기보다 상이한 만기를 가진 금융자산이기 때문임. 이러한 실체의 경우에는 유동성 순서로 항목을 나열하는 것이 이들을 유동/비유동으로 임의로 간주하여 분리하는 것보다 그들의 자원이 만기에 맞게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얼마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음</li> <li>○ 잉글랜드은행(영국의 중앙은행)의 재무제표는 실무에서 적용되는 유동성 배열법의 사례를 제공함</li> </ul>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동성 배열법을 예외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시 방법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공공부문 내 특정 실체가 현재 사용 중이며, 실무에서 보고된 쟁점이 발견되지 않음</li> <li>(b) 규정을 유지할 때 IFRS 18과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음(IFRS와의 차이를 정당화할 만한 공공부문 특유의 근거가 식별되지 않았음)</li> <li>(c) 적용 가능하다면 유동/비유동 접근법보다 충실하게 표현되면서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함</li> <li>(d) 유동성 배열법을 적용하는 실체의 경우(IPSAS 1에서 요구하는) 자산 및 부채의 예상 만기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음</li> </ul> </li> <li>○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유동성 배열법이 오직 예외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IPSASB의 기대를 더 강조하기 위해 개발된 것임</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C X. IPSASB는 일관성 있는 표시 방법의 촉진을 위해 유동/비유동 분류를 IPSAS의 재무상태표 표시를 위한 일반 접근법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IPSASB는 또한 충실하게 표현되면서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간주되는 경우 유동성 배열법을 예외적인 기준으로 계속하여 허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상황은 실체의 활동과 실체의 자산 및 부채의 성격, 그리고 전문적인 판단의 적용에 근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동성 배열법은 금융기관과 같이 주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체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데 있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또한 IFRS 18의 문단 B92가 실제로 하여금 자신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유동/비유동 분류 및 유동성 배열법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혼합 접근법으로 묘사됨)을 허용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음. Staff는 혼합 표시 접근법이 공공부문에 걸쳐 일관성 있는 재무상태표 표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에 따라 관련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li> </ul>

안건 항목	내용	
9.2.7	<b>IFRS 18</b>	<b>수정후 IED(안) (안건 9.3.2 참조)</b>
	B92. 문단 124를 적용할 때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실체는 유동/비유동 분류법 및 유동성 순서에 따른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표시할 수 있다.	AG104. 문단 124를 적용할 때 유동/비유동 분류법을 사용하는 실체는 표시 항목들을 유동성 순서에 근거한 개별 분류에 따라 나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2024년 12월 정례회의**

□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 경과

- (배경) IPSAS 개념체계 및 IAS 1 개정사항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현행 IPSAS 1의 개정 소요 발생
  - 현행 IPSAS 1, 재무제표 표시(2006년 최초 개정)와 개념체계(2014년 발표) 간 정합성 검토 필요성 제기
  - IPSAS 1의 개발 토대였던 IAS 1, 재무제표 표시가 2024년 중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로 개정 대체
- (목표)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신규 기준서 발표 및 관련 기준서<sup>6)</sup>의 단계별 개정
  - (1단계) 신규 기준서 관련 자문보고서 발표 및 의견수렴
  - (2단계) 신규 및 관련 기준서 개정사항 반영된 공개초안 발표
  - (3단계) 공개초안 의견수렴 결과 반영한 최종안 발표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및 경과(2024년 9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2.12월	B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추진 배경 논의</li> <li>• 연구활동 결과 보고</li> </ul>
2023. 6월	B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목표, 적용범위, 주요 이슈, CP 발행 여부 논의</li> </ul>
2023. 9월	BP	BP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 22 및 IPSAS 24 관련 교육세션 개최</li> <li>• 프로젝트 개요 승인</li> </ul>
2023.12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안)의 개요 챕터 검토</li> <li>• 재무제표 표시 관련 선택지 허용 개념에 대한 논의</li> <li>• 재무성과표의 분류 및 중간합계, 경영자 정의 성과측정치 등에 대한 분과별 토의</li> </ul>
2024. 3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 요소별 정의, 상계 표시 일반원칙 등 이슈 검토</li> <li>• 수익·비용 항목의 재무성과표 외 별도표시에 관한 분과별 토의</li> </ul>
2024. 6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부채 분류 등 재무상태표 표시 관련 이슈 논의</li> <li>• 예시공개초안(IED)의 섹션별 검토</li> </ul>
2024. 9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상태표 작성 관련 IED 검토</li> <li>• 재정상태표 작성 관련 CP(안) 검토</li> </ul>

6) IPSAS 2, 현금흐름표, IPSAS 22, 일반정부부문에 관한 정보 공시, IPSAS 24, 재무제표상 예산정보의 표시 이상 3개 기준서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4.12월	CP	이슈 논의	• 재무성과표의 분류, 중간합계, 별도표시항목 관련 이슈 논의
2025. 3월	CP	이슈 논의	-
2025. 6월	CP	이슈 논의	-
2025. 9월	ED	CP 승인	-

□ 정례회의 논의사항(발표자: Anthony Heffernan)

-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및 예시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 개발 경과 보고
- 재무성과표(The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표시 관련 쟁점 검토
  - 수익·비용 항목의 범주 신설 및 분류(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 재무성과표에 표시할 2종의 중간합계 신설(영업손익, 재무손익차감전손익)
  - 당기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 항목의 유형 및 표시 방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시사점

- 해당 사항 없음

**참고**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프로젝트 개괄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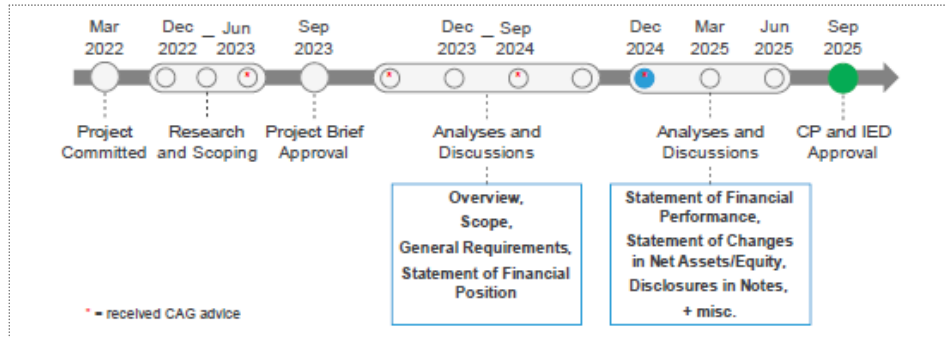
**[목적]**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개괄 제공

**[배경]**

-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는 2023년 9월 프로젝트 개요 승인 이후 2025년 9월까지 자문보고서 (Consultation Paper) 및 예시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을 개발하고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임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추진 경과 개요〉**



7.2.1

- IPSASB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결정한 개발 방침은 다음과 같음
  - (a) 2024년 4월에 발표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정합성을 유지할 것
  - (b) 공공부문 이슈를 고려하여 IFRS 18과의 차이가 적절하거나 필요한지 판단할 것
  - (c) IPSASB 개념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유용하거나 적절한 현행 IPSAS 1의 요소들도 유지할 것
  - (d) 재무제표 구조의 '필요성(비교가능성·일관성 측면)'과 '유연성(유용성·이해가능성 측면)' 사이의 균형을 잡을 것
- Staff는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단계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안함

주제	이슈 논의	CP 개발	IED 개발
<b>프로젝트 개괄 및 개발</b>			
목적 및 적용범위	완성	검토 완료	검토 완료
개발 접근법			
<b>재무제표의 목적 및 일반 원칙</b>			
재무제표의 목표 및 목적	완성	검토 완료	검토 완료
재무제표 이용자와 정보 수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완성	2025. 1분기	검토 완료

안건 항목	내용			
7.2.1	비교정보			
	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			
	상계			
	통합 및 세분화			
	중요성	2025. 2분기	2025. 2분기	2025. 2분기
	계속실체			
	기타 주제(업데이트 예정)	진행중	2025. 2분기	진행중
	<b>재무상태표</b>			
	자산 및 부채의 분류	완료	검토 완료	검토 완료
	합계 및 중간합계	완료	검토 완료	N/A
	표시 항목	완료	검토 완료	검토 완료
	<b>재무성과표</b>			
	수익 및 비용의 분류	진행 중 (안건 7.2.2, 7.2.3)	2025. 1분기	2025. 1분기
	합계 및 중간합계			
	표시 항목	2025. 1분기	2025. 2분기	2025. 2분기
	순이익(순손실) 외부 별도표시 항목	진행 중(안건 7.2.4)	2025. 1분기	2025. 1분기
	<b>순자산/자본변동표</b>			
	순자산의 분류			
	조정 양식	2025. 1분기	2025. 2분기	2025. 2분기
	표시 및 공시			
<b>주석 공시</b>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진행중	2025. 3분기	2025. 3분기	
구조				
회계정책	2025. 2분기	2025. 3분기	2025. 3분기	
불확실성 추정의 주요 원천				
기타 주제				
<b>예산공개초안의 기타 요소</b>				
기타 섹션(업데이트 예정)	2025. 3분기	2025. 3분기	2025. 3분기	
<b>재무성과표 - 범주(categories)</b>				
<b>[의결사항]</b>				
IFRS 18에 맞추어 재무성과표상 수익·비용 항목을 범주별로 분류 및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공공부문 특화 지침으로 보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b>[Staff 권고사항]</b>				
Staff는 IPSASB가 자문보고서를 통해 다음을 제안할 것을 권고함				
(a) 이용자가 재무성과 정보를 더 잘 이해·분석·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재무성과표상 수익·비용 항목을 <b>범주별로 분류 및 표시하도록</b> 규정할 것				
(b) <b>IFRS 18 및 그 범주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되</b> , 공공부문실체가 그 목적과 의도, 각 범주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b>추가 지침을</b> 제공할 것				
<b>[배경]</b>				
○ 재무성과표는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정보의 가장 중요한 원천임				
○ 2000년에 처음 발표된 IPSAS 1은 IAS 1에 대응되는 기준서로, 최소한의 표시 및 공시 규정만을 두어 공공부문실체에게 추가 정보의 표시 및 공시에 관한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함				
* 타 기준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일 기간의 모든 수익 및 비용을 재무성과표에 표시하도록 요구				
7.2.2				

안건 항목	내용								
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IAS 1을 대체하는 IFRS 18의 발표 이후, IPSASB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무제표 작성 목표 및 역할이 동일하다는 점과 그동안 IFRS 18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확인함</li> </ul>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S 1은 재무성과 정보의 표시에 대해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공하였던 것에 비해, IFRS 18은 수익 및 비용 항목을 5개의 특정 범주로 분류하고 2개의 새롭게 정의한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li> <li>○ 이러한 개정사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조치이면서 주로 민간부문의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수요에 영향을 받은 것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b>개선의 잠재력:</b> IAS 1의 구체적 규정 부족으로 인한 각기 다른 보고서 구조 및 내용은 이용자가 재무성과 정보를 이해·분석·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li> <li>(b) <b>IFRS 18 규정의 장점:</b> 한정된 범주 및 신규 중간합계 도입을 통해 공식적인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보고서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상 정보의 이해·분석·비교를 용이하게 함</li> </ul> </li> </ul>								
	<p><b>[분석 접근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IFRS 18과의 정합성 유지 여부를 IPSASB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의 질문과 그에 대한 의견을 구성하여 제공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 text-align: center;">질문</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Staff 의견</th> </tr> </thead> <tbody> <tr> <td>[질문A] 유사한 개선의 잠재력이 공공부문에도 있는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존재함</td> </tr> <tr> <td>[질문B] 범주화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유용함</td> </tr> <tr> <td>[질문C] IFRS 18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범주를 정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적절한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부문 지침을 제공하여 보완한다면 적절함</td> </tr> </tbody> </table>	질문	Staff 의견	[질문A] 유사한 개선의 잠재력이 공공부문에도 있는가?	존재함	[질문B] 범주화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	유용함	[질문C] IFRS 18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범주를 정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적절한가?	공공부문 지침을 제공하여 보완한다면 적절함
	질문	Staff 의견							
	[질문A] 유사한 개선의 잠재력이 공공부문에도 있는가?	존재함							
	[질문B] 범주화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	유용함							
	[질문C] IFRS 18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범주를 정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적절한가?	공공부문 지침을 제공하여 보완한다면 적절함							
	<p><b>[질문A] 유사한 개선 잠재력이 공공부문에도 있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무제표 정보 수요의 성격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개별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의도와 과제를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과거 IPSASB는 재무제표의 목표 및 역할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구조화된 양식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공식화한 바 있음</li> <li>(b) 재무성과표와 손익계산서는 공히 분석 및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정보의 주요 원천임</li> <li>(c) IAS 1과 유사하게 IPSAS 1도 구체적 규정 부족으로 인한 각기 다른 보고서 구조 및 내용은 이용자가 재무성과 정보를 이해·분석·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였음</li> </ul> </li> <li>○ IASB의 경우 수익·비용 항목을 특정 범주화하여 표시하는 보다 구조화된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서 개선 잠재력을 확인했던 것처럼 공공부문에도 동일한 개선 잠재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li> </ul>								
	<p><b>[질문B] 범주화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적으로 볼 때 정보를 범주화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다른 주요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조화된 양식 도입의 효익은 공공부문에도 동일할 것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재무성과의 이해 및 분석 개선: 재무성과 및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괄 제공</li> <li>(b) 객관적 비교 강화: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유사 실체와의 재무성과 비교 시 다양성 감소 및 비교가능성 증대</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7.2.2	<p><b>[질문C] IFRS 18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범주를 정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적절한가?</b></p> <p>○ IFRS 18은 수익·비용 항목을 다음과 같은 5개의 특정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범주</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련 규정 요약</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투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③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다만,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제외</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li> <li>② 현금 및 현금성자산</li> <li>③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li> </ul> </div> <p>예) 이자수익(비용),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감가상각비, 손상차손(환입), 공정가치 손익</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과</li> <li>②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채, 대출금, 어음, 담보대출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채무상품</li> <li>2) 재화·용역에 대한 채무를 제거할 때 공급자 금융약정에 따른 부채</li> <li>3)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 등</li> </ul> </li> <li>②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금으로 결제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채무</li> <li>2) 계약부채, 리스부채, 사후처리 또는 자산 복구관련 총당부채, 소송총당금 등</li> </ul> </li> </ul> </div> <p>예) ①: 이자비용, 공정가치 손익, 부채 제거 관련 수익·비용                      ②: 매입채무/유익적 금융요소 있는 계약부채/리스부채의 이자비용, 순확정금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 등</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업</td> <td>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법인세</td> <td>IAS 12, 법인세에 따른 법인세비용, IAS 21 환율변동효과 적용에 따른 관련 외환차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단영업</td> <td>IFRS 5, 매각목적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중단영업 관련 수익 및 비용</td> </tr> </tbody> </table>	범주	관련 규정 요약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③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다만,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제외</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li> <li>② 현금 및 현금성자산</li> <li>③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li> </ul> </div> <p>예) 이자수익(비용),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감가상각비, 손상차손(환입), 공정가치 손익</p>	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과</li> <li>②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채, 대출금, 어음, 담보대출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채무상품</li> <li>2) 재화·용역에 대한 채무를 제거할 때 공급자 금융약정에 따른 부채</li> <li>3)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 등</li> </ul> </li> <li>②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금으로 결제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채무</li> <li>2) 계약부채, 리스부채, 사후처리 또는 자산 복구관련 총당부채, 소송총당금 등</li> </ul> </li> </ul> </div> <p>예) ①: 이자비용, 공정가치 손익, 부채 제거 관련 수익·비용                      ②: 매입채무/유익적 금융요소 있는 계약부채/리스부채의 이자비용, 순확정금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 등</p>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	법인세	IAS 12, 법인세에 따른 법인세비용, IAS 21 환율변동효과 적용에 따른 관련 외환차이	중단영업	IFRS 5, 매각목적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중단영업 관련 수익 및 비용
	범주	관련 규정 요약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③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다만,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제외</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li> <li>② 현금 및 현금성자산</li> <li>③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li> </ul> </div> <p>예) 이자수익(비용),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감가상각비, 손상차손(환입), 공정가치 손익</p>											
	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과</li> <li>②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채, 대출금, 어음, 담보대출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채무상품</li> <li>2) 재화·용역에 대한 채무를 제거할 때 공급자 금융약정에 따른 부채</li> <li>3)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 등</li> </ul> </li> <li>②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금으로 결제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채무</li> <li>2) 계약부채, 리스부채, 사후처리 또는 자산 복구관련 총당부채, 소송총당금 등</li> </ul> </li> </ul> </div> <p>예) ①: 이자비용, 공정가치 손익, 부채 제거 관련 수익·비용                      ②: 매입채무/유익적 금융요소 있는 계약부채/리스부채의 이자비용, 순확정금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 등</p>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											
	법인세	IAS 12, 법인세에 따른 법인세비용, IAS 21 환율변동효과 적용에 따른 관련 외환차이											
	중단영업	IFRS 5, 매각목적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중단영업 관련 수익 및 비용											
	○ Staff는 IASB가 거래를 5개의 범주로 분류한 근거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근거가 공공부문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a)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분류되는 거래의 유형이 서로 동일할 것으로 보임 : 거래별로 적용 가능한 IPSAS 기준서는 IFRS 기준서와 정합성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손익이 범주별로 분류되는 방법은 서로 일치할 것임												
(b) 이러한 범주로 표시되는 정보가 공공부문에서도 유용함 : 공공부문의 재무제표 이용자도 핵심 공공서비스의 전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영업), 중장기에 걸친 서비스 전달 유지에 필요한 자원 투자 과정(투자),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과정(재무)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함													
(c)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도 범주의 이름(용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 : '영업', '투자', '재무'라는 용어를 현금흐름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공유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는 다른 범주 명칭 사용을 제안한 바 있음													
(d) 범주의 이름대로 제목(명칭)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실체의 판단에 따라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함 : 재무성과 정보를 범주별로 분류하는 것은 실체가 자신의 수익·비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정보의 특징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함													

안건 항목	내용										
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제정 관점에서 IPSASB는 ①안) IFRS 18의 범주 용어를 사용하되 공공부문실체의 수익·비용 항목의 분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것과 ②안) 공공부문만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 중에서 선택 가능함</li> <li>○ Staff는 다음을 근거로 ①안이 공공부문실체의 수익·비용 항목의 분류 판단 및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성과에 대한 이해·분석·비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재무성과 정보를 5개 범주로 분류하는 IFRS 18의 규정과 차이를 둘 만한 실질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였는데 1안이 IFRS 18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는 방안임</li> <li>(b) IFRS와 정합성을 갖고 있는 다른 IPSAS 기준서처럼 공공부문 특유 지침을 반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항목을 유용한 방법으로 분류하도록 지원 가능함</li> </ul> </li> </ul>										
<b>재무성과표 - 합계 및 중간합계(Totals and Subtotals)</b>											
7.2.3	<p><b>[의결사항]</b> IFRS 18에 맞추어 재무성과표상 합계 및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되, 공공부문을 위한 일부 수정 및 특정 중간합계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p> <p><b>[Staff 권고사항]</b> Staff는 IPSASB가 자문보고서를 통해 다음을 제안할 것을 권고함 (a) '당기손익'은 IFRS 18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기에 유용한 지표이므로, IPSAS 1의 규정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을 <b>합계로서 표시하도록</b> 규정할 것 (b) IFRS 18과의 정합성 유지 및 공공부문을 위한 일부 수정사항을 고려하여 <b>새로 정의된 중간합계로서 '영업손익' 및 '재무손익차감전손익'을 표시하도록</b> 규정할 것 (c)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b>실체가 중간합계를 추가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 것</b></p> <p><b>[배경]</b> ○ 현행 IPSAS 1은 재무성과표에 '당기손익'을 합계로서 표시하는 것만을 요구할 뿐, 기타 중간합계의 표시를 요구하지 않음 ○ IPSASB는 범주화 및 신규 중간합계 요구 관련 탐사 논의가 있었던 2023년 12월의 분과별 토의 이후로 재무성과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음 ○ 본 안건은 안건 7.2.2의 접근방식을 기초로 합계 및 중간합계의 표시에 관한 논의의 진행을 위한 것임</p> <p><b>[분석]</b> ○ IFRS 18의 손익계산서 구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 효과는 특정된 범주 및 신규 중간합계를 통해 일관성 있는 손익계산서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과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의 전반적인 효익을 증폭시킨다는 것임</p> <p><b>[분석접근법]</b> ○ Staff는 안건 7.2.2의 접근법과 동일하게, IFRS 18과의 정합성 유지 여부를 IPSASB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의 질문과 그에 대한 의견을 구성하여 제공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질문</th> <th style="text-align: center;">Staff 의견</th> </tr> </thead> <tbody> <tr> <td>[질문A] 유사한 개선의 잠재력이 공공부문에게도 있는가?</td> <td>존재함</td> </tr> <tr> <td>[질문B] 합계 및 중간합계를 사용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td> <td>유용함</td> </tr> <tr> <td>[질문C] IAS 1과 IFRS 18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합계의 경우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td> <td>적절함</td> </tr> <tr> <td>[질문D] IFRS 18에서 새로 정의하여 요구하는 중간합계의 경우 공공부문에 도 적절한가?</td> <td>공공부문 용어로 보완한다면 적절함</td> </tr> </tbody> </table>	질문	Staff 의견	[질문A] 유사한 개선의 잠재력이 공공부문에게도 있는가?	존재함	[질문B] 합계 및 중간합계를 사용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	유용함	[질문C] IAS 1과 IFRS 18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합계의 경우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함	[질문D] IFRS 18에서 새로 정의하여 요구하는 중간합계의 경우 공공부문에 도 적절한가?	공공부문 용어로 보완한다면 적절함
질문	Staff 의견										
[질문A] 유사한 개선의 잠재력이 공공부문에게도 있는가?	존재함										
[질문B] 합계 및 중간합계를 사용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	유용함										
[질문C] IAS 1과 IFRS 18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합계의 경우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함										
[질문D] IFRS 18에서 새로 정의하여 요구하는 중간합계의 경우 공공부문에 도 적절한가?	공공부문 용어로 보완한다면 적절함										

안건 항목	내용												
7.2.3	<p><b>[질문A] 유사한 개선 잠재력이 공공부문에도 있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무제표 정보 수요의 성격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개별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의도와 과제를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과거 IPSASB는 재무제표의 목표 및 역할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구조화된 양식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공식화한 바 있음</li> <li>(b) 재무성과표와 손익계산서는 공히 분석 및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정보의 주요 원천임</li> <li>(c) 합계 및 중간합계와 관련, IPSAS 1와 IAS 1은 최소한의 규정만 두고 있고, 결과적으로 각기 다르게 정의된 중간합계의 사용은 두 부문 모두에서 이용자의 재무성과 정보에 대한 이해·분석·비교에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왔음</li> </ul> </li> <li>○ IASB의 경우 새로 정의된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에서 개선 잠재력을 확인했던 것처럼 공공부문에도 동일한 개선 잠재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li> </ul>												
	<p><b>[질문B] 합계 및 중간합계를 사용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적으로 볼 때 구조화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재무제표 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한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데, 합계와 중간합계는 재무성과표의 일관성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li> <li>○ 새로 정의된 중간합계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재무성과의 이해 및 분석 개선: 재무성과 및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괄 제공</li> <li>(b) 일관적이고 객관적 비교 강화: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유사 실체와의 재무성과 비교 시 다양성 감소 및 비교가능성 증대</li> </ul> </li> </ul>												
	<p><b>[질문C] IAS 1과 IFRS 18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합계의 경우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 1과 IAS 1은 모두 '당기손익'을 재무성과표(손익계산서)에 합계로서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IFRS 18도 여전히 '당기손익' 합계 표시를 요구</li> <li>○ '당기손익' 합계는 근본적인 지표로서 실체의 전반적인 재무성과를 명확히 보여줄 뿐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여전히 유용하므로, 당해 규정이 IPSAS에서도 유지되어야 IFRS 18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음</li> </ul>												
	<p><b>[질문D] IFRS 18에서 새로 정의하여 요구하는 중간합계의 경우 공공부문에도 적절한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18은 비교 가능한 재무성과 측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정의된 중간합계로서 '영업손익' 및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며,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목적 및 이용자의 효익(근거)</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업손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가능한 재무성과의 측정치 및 현금흐름 예측의 출발점으로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을 지원하는 지표</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된 신규 중간합계</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무관하게 비교 가능한 재무성과의 측정치로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을 지원하는 지표</li> <li>• 자금조달 효과와 무관한 재무성과 이해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손익,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된 신규 중간합계</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당기손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성과의 개괄을 제공하는 지표</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익계산서상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합계</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목적 및 이용자의 효익(근거)	비고	영업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가능한 재무성과의 측정치 및 현금흐름 예측의 출발점으로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을 지원하는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된 신규 중간합계</li> </ul>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무관하게 비교 가능한 재무성과의 측정치로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을 지원하는 지표</li> <li>• 자금조달 효과와 무관한 재무성과 이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손익,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된 신규 중간합계</li> </ul>	당기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성과의 개괄을 제공하는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익계산서상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합계</li> </ul>
구분	목적 및 이용자의 효익(근거)	비고											
영업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가능한 재무성과의 측정치 및 현금흐름 예측의 출발점으로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을 지원하는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된 신규 중간합계</li> </ul>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무관하게 비교 가능한 재무성과의 측정치로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을 지원하는 지표</li> <li>• 자금조달 효과와 무관한 재무성과 이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손익,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된 신규 중간합계</li> </ul>											
당기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성과의 개괄을 제공하는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익계산서상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합계</li> </ul>											

안건 항목	내용
7.2.3	<p>○ Staff는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여 상기 2종의 중간합계를 도입하면 더 유용하고 적절할 것으로 판단</p> <p>(a) <b>영업손익</b>(operating surplus or deficit): IFRS 18의 영업손익(operating profit or loss)에 공공부문의 용어체계를 반영하여 채택한 것으로, 현재 수준의 수익(예: 조세, 부담금, 기타 원천 등)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그러한 수익이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품질을 유지하고 미래의 서비스 전달 활동 및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중간합계</p> <p>(b) <b>재무손익차감전손익</b>(surplus or deficit before financing): IFRS 18의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profit or loss before financing and income taxes)에 공공부문의 용어체계 및 자금조달대가 반영 전 성과 전달의 중요성, 공공부문 내 법인세의 제한적인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채택한 중간합계</p> <p>○ Staff는 재무정보 수요는 국가 간 혹은 국가 내에서도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체의 판단에 따라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권고</p> <p>(a) 해당 중간합계가 IPSAS에 따라 인식·측정한 금액으로 구성될 것</p> <p>(b) 해당 중간합계가 재무성과표 구조와 호환되어야 함</p> <p>(c) 해당 중간합계가 기간간 일관성을 가질 것</p> <p>(d) 해당 중간합계가 IPSAS에서 요구하는 합계 및 중간합계보다 두드러지지 않게 배열될 것</p> <p><b>[향후 계획]</b></p> <p>○ Staff는 이번 회의에서의 IPSASB 결정에 근거하여 자문보고서(CP)의 제4장 및 예시공개초안(IE)의 관련 섹션의 초안 작성을 개시할 예정임</p>
7.2.4	<p><b>당기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 항목의 투명성 강화</b></p> <p><b>[의결사항]</b></p> <p>○ 없음</p> <p>* '당기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의 표시 방법'에 관한 분과별 회의를 위한 제공자료</p> <p><b>[배경]</b></p> <p>○ 2024년 3월 회의에서 IPSASB는 순이익(순손실)의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 항목의 표시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 바 있음</p> <p>(a) 만약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표시 관련 IPSAS 규정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도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함</p> <p>(b) 개념적 관점에서 볼 때 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접근법(IFRS-aligned approach)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GFS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접근법은 채택하지 않아야 함</p> <p><b>[분과별 회의 주제]</b></p> <p>○ 2024년 12월 정례회의의 분과별 회의 참석자는 다음 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임</p> <p>(a) <b>현행 IPSAS의 개정 필요성</b>: 재무제표상에서 순이익(순손실)의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 항목에 대한 전달 방법 및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p> <p>(b) <b>전달 방법 및 투명성 개선 방안</b>: 만약 그렇다면, 그 위치와 용어 측면에서 IPSASB에 권고할 사항은 무엇인지?</p> <p><b>[주제A] 현행 IPSAS의 개정 필요성</b></p> <p>○ 현행 IPSAS 1은 수익·비용 항목을 다음 중 하나의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함</p> <p>(a) <b>재무성과표</b> - 당기손익에 표시(당기손익은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정보의 주요 원천으로 인식)</p>

안건 항목	내용								
7.2.4	<p>(b) <b>순자산/자본변동표</b> - 당기손익 외부의 <b>순자산으로 직접 표시</b>(← 이러한 항목의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관심이 크지 않음)</p> <p>○ IPSASB가 당기손익(재무성과표) 또는 당기손익 외부의 순자산(순자산/자본변동표)에 직접 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개발하지는 않았으나, 분과별 회의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분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을 인지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무성과표</th> <th style="text-align: center;">순자산/자본변동표</th> </tr> </thead> <tbody> <tr> <td>• 보고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 관련 항목</td> <td>• 보고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과 관련 없는 항목</td> </tr> <tr> <td>• 실현된 차손익 포함</td> <td>• 미실현 차손익 포함</td> </tr> <tr> <td>• 보고실체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 거래와 관련된 항목</td> <td>• 보고실체가 어느 정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래와 관련된 항목</td> </tr> </tbody> </table> <p>○ 당기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항목은 주로 특정 자산·부채를 현행가치로 재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상기의 수익·비용 항목의 분류 결과는 일반적으로 2000년 이후의 IASB의 분류 결과와 일치함</p> <p>○ 전반적으로 특정 수익·비용을 실현 및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은 실체의 순자산 변동의 성격과 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두 수익·비용 그룹이 서로 다른 재무제표에 표시되고 있음</p> <p>○ 재무성과표의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IPSAS 1의 개정 필요성은 안건 7.2.2 및 안건 7.2.3에 이미 분석되어 있음 (즉 재무성과표 내 범주화 및 일부 중간합계 신설 필요)</p> <p>○ Staff는 다음을 근거로 순자산/자본변동표에 직접 표시하는 당기손익 외부의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개정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함</p> <p>(a) 분과별 회의 참석자들이 보고기간 내 보고실체의 '모든' 수익·비용 항목에 대해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함에 따라, IPSASB가 현재 순자산/자본변동표 표시를 요구하는 규정이 회계책임 목적상 필요한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함</p> <p>(b) 순자산/자본변동표에 직접 표시하는 수익·비용 항목은 일반적으로 미실현 또는 비통제된 순자산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재무제표 이용자가 실체의 순자산 변동내역 및 서비스 전달 목표의 달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p> <p>(c) 다만 순자산/자본변동표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는 재무제표라는 점, 당기손익 표시 방법에 비해 수익·비용 항목을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표시방법은 현행 IPSAS하에서 투명성 및 전달 방법의 명료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p> <p>(d) 이용자가 실체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정보 수요를 갖고 있다는 점과 현행 IPSAS 1의 표시 규정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명성 및 전달 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p> <p><b>[주제B] 전달 방법 및 투명성 개선 방안</b></p> <p>○ 분과별 회의 참석자들이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다음과 관련된 사항이 IPSASB의 기준 제정 의사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p> <p>(a) <b>위치:</b> 이러한 재무정보의 성격과 의미,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접근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위치에 표시되어야 함</p>	재무성과표	순자산/자본변동표	• 보고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 관련 항목	• 보고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과 관련 없는 항목	• 실현된 차손익 포함	• 미실현 차손익 포함	• 보고실체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 거래와 관련된 항목	• 보고실체가 어느 정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래와 관련된 항목
	재무성과표	순자산/자본변동표							
	• 보고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 관련 항목	• 보고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과 관련 없는 항목							
	• 실현된 차손익 포함	• 미실현 차손익 포함							
	• 보고실체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 거래와 관련된 항목	• 보고실체가 어느 정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래와 관련된 항목							

안건 항목	내용												
7.2.4	<p>(b) 용어: 공공부문의 다수 이용자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당해 재무정보의 성격과 의미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p> <p>○ (위치) 당기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항목의 위치와 관련하여 Staff는 다음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대안</th> <th style="width: 33%;">장점</th> <th style="width: 33%;">단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① 재무성과표 내 별도 섹션에 표시</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의 위치에 전체 수익-비용을 표시하므로, 이용자가 재무성과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일치</li> <li>• 재무정보의 가시성을 높이며, 순자산 변동내역 및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에 관한 종합적인 개괄 제공</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성과표의 길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음</li> <li>• 당기손익 내·외부 표시에 따른 수익 및 비용 항목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혼동 유발 가능</li> </ul>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② 신규의 별도 재무제표에 표시</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정보의 가시성을 높이며, 순자산 변동내역 및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에 관한 종합적인 개괄 제공</li> <li>• 수익-비용 항목의 실현 및 통제 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쉬움</li> <li>• 각 재무제표의 길이 및 정보량 관리 측면에서 유리</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수익-비용 항목이 두 가지 재무제표에 걸쳐 표시됨</li> <li>• 새로운 재무제표는 이용자의 충분한 관심을 얻지 못할 수 있음</li> <li>• 당기손익 내·외부 표시에 따른 수익 및 비용 항목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혼동 유발 가능</li> </ul>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③ 순자산/자본 변동표 내 별도 섹션에 표시</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관행과 일치하므로 이용자에게 친숙함</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 및 비용 항목의 투명성 및 이해도 제고 목표 달성 불가능</li> <li>• 현재 관행에 따른 가시성 이슈를 다루지 않음</li> </ul> </td> </tr> </tbody> </table>	대안	장점	단점	<p>① 재무성과표 내 별도 섹션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의 위치에 전체 수익-비용을 표시하므로, 이용자가 재무성과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일치</li> <li>• 재무정보의 가시성을 높이며, 순자산 변동내역 및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에 관한 종합적인 개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성과표의 길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음</li> <li>• 당기손익 내·외부 표시에 따른 수익 및 비용 항목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혼동 유발 가능</li> </ul>	<p>② 신규의 별도 재무제표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정보의 가시성을 높이며, 순자산 변동내역 및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에 관한 종합적인 개괄 제공</li> <li>• 수익-비용 항목의 실현 및 통제 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쉬움</li> <li>• 각 재무제표의 길이 및 정보량 관리 측면에서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수익-비용 항목이 두 가지 재무제표에 걸쳐 표시됨</li> <li>• 새로운 재무제표는 이용자의 충분한 관심을 얻지 못할 수 있음</li> <li>• 당기손익 내·외부 표시에 따른 수익 및 비용 항목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혼동 유발 가능</li> </ul>	<p>③ 순자산/자본 변동표 내 별도 섹션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관행과 일치하므로 이용자에게 친숙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 및 비용 항목의 투명성 및 이해도 제고 목표 달성 불가능</li> <li>• 현재 관행에 따른 가시성 이슈를 다루지 않음</li> </ul>
	대안	장점	단점										
	<p>① 재무성과표 내 별도 섹션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의 위치에 전체 수익-비용을 표시하므로, 이용자가 재무성과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일치</li> <li>• 재무정보의 가시성을 높이며, 순자산 변동내역 및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에 관한 종합적인 개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성과표의 길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음</li> <li>• 당기손익 내·외부 표시에 따른 수익 및 비용 항목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혼동 유발 가능</li> </ul>										
<p>② 신규의 별도 재무제표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정보의 가시성을 높이며, 순자산 변동내역 및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에 관한 종합적인 개괄 제공</li> <li>• 수익-비용 항목의 실현 및 통제 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쉬움</li> <li>• 각 재무제표의 길이 및 정보량 관리 측면에서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수익-비용 항목이 두 가지 재무제표에 걸쳐 표시됨</li> <li>• 새로운 재무제표는 이용자의 충분한 관심을 얻지 못할 수 있음</li> <li>• 당기손익 내·외부 표시에 따른 수익 및 비용 항목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혼동 유발 가능</li> </ul>											
<p>③ 순자산/자본 변동표 내 별도 섹션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관행과 일치하므로 이용자에게 친숙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 및 비용 항목의 투명성 및 이해도 제고 목표 달성 불가능</li> <li>• 현재 관행에 따른 가시성 이슈를 다루지 않음</li> </ul>											
<p>○ 위치 관련 대안들의 단점 중 일부는 당기손익 표시 수익-비용 항목과 순자산/자본변동표 직접 표시 수익-비용 항목이 갖고 있는 성격 및 의미상 차이점을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용어를 개발하여 사용하면 해소 가능함</p>													
<p>○ IAS 1(2007)은 모든 수익-비용 항목을 소유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 변동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체에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함</p> <p>(a) 단일 재무성과표: 상기 대안 ①과 유사하게, 재무성과표 내 하나의 섹션에는 당기손익 포함 수익-비용 항목을, 다른 섹션에는 당기손익 외부의 수익-비용 항목을 표시</p> <p>(b) 두 개의 재무성과표: 상기 대안 ②와 유사하게, 하나의 재무성과표에는 당기손익 포함 수익-비용 항목을, 다른 재무성과표에는 당기손익 외부의 수익-비용 항목을 표시</p>													

안건 항목	내용
	<p>〈IFRS 18의 수익·비용 표시 선택방법 개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b>Single statement</b></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2px;">Statement of Profit and Loss and Comprehensive Income</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ncome</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margin-bottom: 2px;">Expenses</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margin-bottom: 2px;">Profit or loss for the period</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B050; color: white; padding: 2px; margin-bottom: 2px;">Other comprehensive income</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67E22; color: white; padding: 2px;">Total comprehensive income</div>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b>Two statements</b></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2px;">Statement of Profit or Loss</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ncome</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margin-bottom: 2px;">Expenses</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margin-bottom: 2px;">Profit or loss for the period</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2px;">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margin-bottom: 2px;">Profit or loss for the period</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B050; color: white; padding: 2px; margin-bottom: 2px;">Other comprehensive income</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67E22; color: white; padding: 2px;">Total comprehensive income</div> </div> </div> </div>
<p>7.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S 1의 이러한 선택 표시 규정은 IASB가 단일 재무성과표 표시 방법을 선호하였음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 IFRS 18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바 있음</li> <li>○ Staff는 위치 관련 대안의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대안 ③과 달리, 대안 ① 및 대안 ②는 모두 재무정보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현행 IPSAS 1과 비교하여 투명성 및 전달 방법의 명료성을 개선할 수 있음</li> <li>(b) 대안 ①과 대안 ②의 적용 효익은 실체별·국가별 요인 및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li>(c) 대안 ①과 대안 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IPSASB의 다음 두 가지 전략적 의사결정사항에 부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재무제표 구조의 '필요성(비교가능성·일관성 측면)'과 '유연성(유용성·이해가능성 측면)' 사이의 균형을 잡을 것</li> <li>(ii) 차이를 둘 만한 공공부문 근거가 없다면 IFRS 18과 정합성을 유지할 것</li> </ul> </li> </ul> </li> <li>○ <b>(용어)</b> IPSASB는 당기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항목의 성격과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를 식별할 필요가 있음</li> <li>○ 적절하고 이해가능한 용어를 식별하여 관련 수익·비용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분석한 표시 위치에 대한 고려사항과 연계될 때 실체의 순자산 변동내역 및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li> <li>○ IPSAS 1의 당기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의 구성 항목은 IFRS 18에서 그러한 수익·비용 항목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인 "기타포괄손익(OCI)"의 구성과 일치하는데, Staff는 기타포괄손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일부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들은 "기타포괄손익" 용어가 혼동을 유발한다고 지적함</li> <li>(b) IFRS 18에서 "기타포괄손익"을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IASB는 해당 항목의 특징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다면 실제들이 다른 용어나 제목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용어와 관련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과거 IFRS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에서 자문단(CAG)은 동일한 의미의 용어라면 IPSAS와 IFRS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당기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의 구성 항목이 민간부문의 “기타포괄손익”과 동일하다면 IPSASB 역시 “기타포괄손익” 용어를 사용해야 함</li> <li>(b) 당기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항목을 지칭할 수 있는 완벽한 용어가 없을 수 있음. 다만, IASB의 사례처럼 기준 제정 목적으로 IPSASB가 선택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li> <li>(c) IASB의 사례처럼, IPSASB는 용어 선택 결과와 무관하게 당해 용어와 관련된 목적과 의도를 밝히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실체의 선택에 따라 당해 항목의 특징을 충실히 표현 가능한 다른 용어 또는 제목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li> </ul> </li> </ul>





2

리스(Leases)



## 2 리스(Leases)

■ **배경 및 목적**

- (배경) IFRS 16과의 정합성 제고 및 할인리스 관련 지침 미비
  - 2016년 1월에 발표된 IFRS 16, 리스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IPSAS 13, 리스의 개정 소요 발생
  - 할인리스(concessionary leases) 등 공공부문 특유 이슈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 미비
- (목적) IPSAS 13를 대체할 신규 리스 기준서 개발
- (추진방법) 프로젝트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단계별 접근법 채택
  - (1단계) IFRS 16 기반으로 신규 리스 기준서 발표 및 공공부문 특유 이슈 수집<sup>7)</sup>
  - (2단계) 공공부문 특유 이슈 반영을 위한 리스 기준서 개정

■ **주요 논의사항**

- 공공부문 특유 이슈와 관련된 회계처리 방법 논의
  - 할인리스 거래 및 무상사용권자산 거래에서의 사용권자산 측정 원칙 결정
  - 판매후리스 거래에 내재된 할인액의 회계처리 논의

■ **진행 경과(2024년 말 기준)**

-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사용권자산 발표(2023. 5.)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임

Project Brief (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 (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 (공개초안)	IPSAS (기준서 발표)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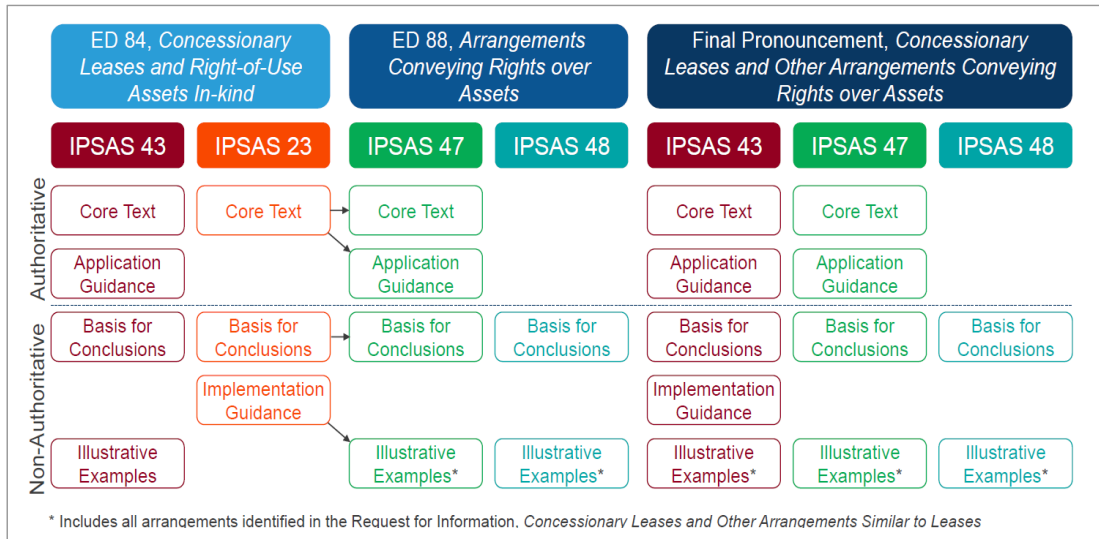
7) IPSASB는 1단계를 거쳐 IFRS 16의 회계처리 모형을 도입한 IPSAS 43, 리스를 2022년 1월에 발표하였으며, 2단계를 통해 IPSAS 43의 개정을 요구하는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사용권자산을 2023년 1월에 발표하였음

■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보고서

1 2024년 3월 정례회의

- (발표자) João Fonseca
- (목적) 기타 리스유사약정(Other Arrangements Similar to Leases)과 관련된 회계처리 지침의 명확화
- 진행 경과

〈리스 프로젝트 추진 경과(2024년 3월 기준)〉



- (2020년 12월) 정보요청서(RFI), 할인리스 및 기타 리스유사약정 승인
- (2022년 12월)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사용권자산 승인
- (2023년 6월) ED 84에 대한 의견 및 프로젝트 방향에 대한 개괄적 검토
- (2023년 9월) 이슈 논의
- (2023년 12월)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의 최종안 개발

□ 정례회의 논의사항

- ED 88의 최종안 검토 및 발행 승인
  - (제목 및 구조) ED 88, Arrangements Conveying Rights over Assets(Amendments to IPSAS 47 and IPSAS 48)는 리스 정의에 해당하는 거래(예: 무상임대)와 리스는 아니지만 자산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기타 약정(예: 사회주택 무상제공, 공유재산 등)을 모두 포괄
  - (주요 제안사항) ED 84, Concessionary Leases and Right-of-Use Assets In-kind (Amendments to IPSAS 43 and IPSAS 23)와 통합하여 다음 세 가지 주요 개정사항 반영 예정
    - IPSAS 43, 리스 개정: 할인리스 및 무상사용권자산에 관한 추가 지침
    - IPSAS 47, 수익 개정: 무상리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인식 관련 지침
    - IPSAS 48, 이전비용 개정: 무상리스 등에서 발생하는 이전비용 인식 관련 지침

□ 정례회의 논의결과

- ED 88의 발행 승인 의결
- 2개월의 공개초안 의견수렴 기간 부여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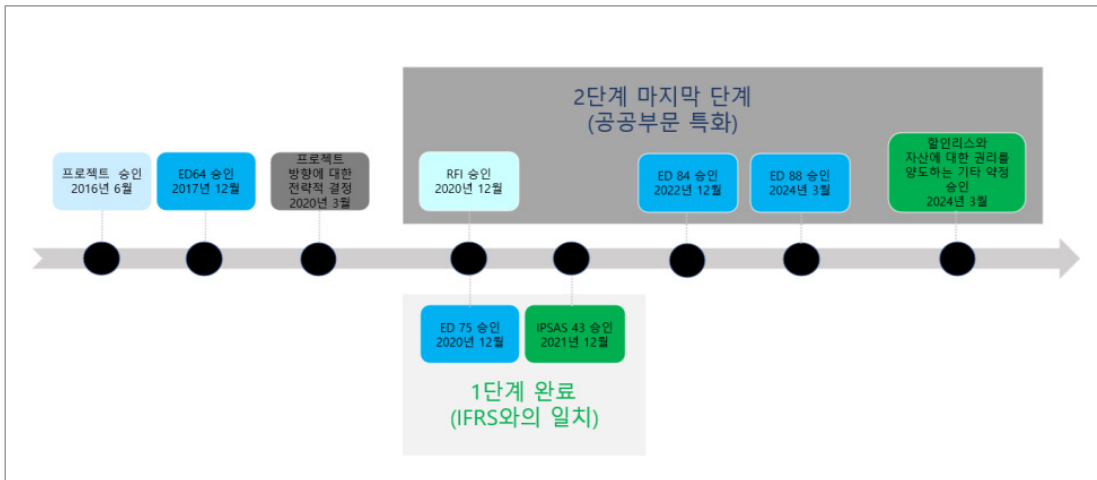
□ 시사점

- 해당 사항 없음

2 2024년 6월 정례회의

- (발표자) João Fonseca
- (목적) 리스유사약정과 관련된 리스 관련 회계처리 이슈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추가 지침 개발

〈리스 프로젝트 추진 경과(2024년 6월 기준)〉



- 진행 경과
  - (2020년 12월) 정보요청서(RFI), 할인리스 및 기타 리스유사약정을 승인
  - (2022년 12월)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사용권자산 승인
  - (2023년 6월) ED 84에 대한 의견 및 프로젝트 방향에 대한 개괄적 검토
  - (2023년 9월) 이슈 논의
  - (2023년 12월) 최종 발표문 작성
  - (2024년 3월)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의 검토 및 승인
  - (2024년 6월)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 관련 응답자 의견에 관한 개괄적 검토, 할인리스 및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기타 약정(IPSAS 43, IPSAS 47 및 IPSAS 48 개정) 최종 발표문의 검토 및 승인

□ 정례회의 논의사항

-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 관련 응답자 의견에 대한 개괄적 검토
  - IPSASB는 2024년 3월 28일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을 발행함
  - IPSAS 47 ‘수익’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사용권자산(IPSAS 43<sup>8)</sup> 및 IPSAS 23<sup>9)</sup> 개정)에서 강력하게 지지되는 원칙과 일치함
  - 추가적으로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은 공공부문에서 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기타 유사 약정과 관련하여 IPSAS 47 ‘수익’과 IPSAS 48 ‘이전 비용’에 수반되는 적용사례를 제안함
  -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에 대한 28개의 응답 중 대다수의 응답자가 ED 88을 지지하였으며, 소수의 응답자만이 ED 88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음

응답	응답자					
	SMC 1 <sup>1)</sup>		SMC 2 <sup>2)</sup>		SMC 3 <sup>3)</sup>	
	IPSAS 47 강제 문헌		IPSAS 47 비강제 문헌		IPSAS 48 비강제 문헌	
	#	%	#	%	#	%
동의	16	57	16	57	19	68
부분적으로 동의함	8	29	8	29	6	21
동의하지 않음	4	14	4	14	3	11
Total	28	100	28	100	28	100

- 1) 의견 1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IPSASB는 할인리스의 할인과 관련된 IPSAS 23, ‘비교환 거래 수익(세금 및 이전)’에 대한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사용권자산의 제안을 IPSAS 47 ‘수익’에 적용하기로 결정
- 2) 의견 2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IPSASB는 IPSAS 47 ‘수익’에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에 대해 비강제 문헌(적용사례)을 제안하기로 결정
- 3) 의견 3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IPSASB는 IPSAS 48 ‘이전 비용’에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에 대해 비강제 문헌(적용사례)을 제안하기로 결정

8) IPSAS 43 ‘리스’

9) IPSAS 23 ‘비교환 거래 수익(세금 및 이전)’

-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소수의 응답자의 사유와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ED 88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과 동일한 개념적 불일치 이유</li> <li>• IPSAS 23 '비교환 거래 수익(세금 및 이전)'과 IPSAS 47 '수익'은 수익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원칙을 가지고 있음</li> <li>• IPSAS 46 '측정' 및 IPSAS 47 '수익'과 명백한 불일치</li> <li>• 시장 조건 또는 인센티브에 따라 리스료를 결정하는 데 지침 부족</li> <li>• 응답자의 관할권에서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타당성 부족</li> <li>•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에 제안된 예시는 IPSAS 48 '이전 비용' 및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li> </ul>
ED 88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 의견</li> <li>• 특정 관할권에 해당</li> <li>• IPSASB의 규정과 불일치</li> <li>• ED 84 및 ED 88에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li> </ul>

- 최종 발표문의 제목 결정: 할인리스 및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기타 약정(IPSAS 43,<sup>10)</sup> IPSAS 47<sup>11)</sup> 및 IPSAS 48<sup>12)</sup> 개정)
  - 리스(할인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약정을 리스의 정의는 충족하지 않지만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다른 유형의 약정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함
  - 정보요청서(RFI)에 명시된 모든 계약, 할인리스 및 리스와 유사한 기타 약정 포괄
  -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사용권자산 및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의 제목을 병합
- '할인리스 및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기타 약정(IPSAS 43, IPSAS 47 및 IPSAS 48 개정)' 최종 발표문의 검토 및 승인
  - Staff는 ED 88에 관한 응답자의 의견을 정성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응답자의 의견을 수용한 후 ED 84 및 ED 88에서 제안된 원칙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판단과 응답자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최종 발표문을 승인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함(시행일 2027년 1월 1일)
  - 결론도출근거는 2024년 7월 점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10) IPSAS 43 '리스'  
 11) IPSAS 47 '수익'  
 12) IPSAS 48 '이전비용'

□ 시사점

- IPSASB는 IFRS<sup>13)</sup>의 리스 기준서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IPSAS의 리스 기준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임. 반면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경우 아직 IFRS의 리스 기준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리스와 관련된 회계처리, 특히 운용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됨. 국가회계기준이 IFRS와 IPSAS의 개정 사항을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국가회계기준상 리스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13) IFRS: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3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 배경 및 목적

- (배경) 공공부문 특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 요구
  - 세계은행은 국제적인 공공부문 특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IPSASB에서 진행할 것을 주문
  - 자문보고서\* 의견수렴 및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 논의 결과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개발에 대한 지지 획득
    - \* Consultative Paper on Advancing Public Sector Sustainability Reporting(2022. 5.)
    - \*\* Public Sector Standard-Setters Forum(2022. 9.)
  
- (목적) 공공부문 실체의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기준서 개발
  -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실체의 일관성 있고 비교가능한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를 위한 기준서 개발 추진
  - ISSB의 IFRS S2를 토대로 하되, 공공부문 특성으로 인한 차이<sup>14)</sup>를 추가 반영하기 위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다중 이해관계자 중심 지속가능성 보고 모형 (multi-stakeholders model)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개발 예정

### ■ 진행 경과(2024년 말 기준)

- 2024년 9월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가 공개 자문을 위해 승인되었으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20일간의 자문 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외부 의견수렴 진행 예정

Project Brief (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 (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 (공개초안)	IPSAS (기준서 발표)
--------------------------	-------------------------------	--------------------------	-------------------

14) 자문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이해관계자들은 공공부문의 경우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IFRS S2에 비해 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정보가 요구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 ■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보고서

### 1 2024년 3월 정례회의<sup>15)</sup>

#### □ 프로젝트 목적 및 추진 경과

- (배경) 투명성 제고 및 회계책임 이행을 강화하며,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개발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음
  - 세계은행은 IPSASB가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에 대한 글로벌 자문을 주도할 것을 촉구
  - IPSASB는 자문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 기후 관련 공시 및 천연자원 관련 공시에 관한 지침을 우선적인 연구 대상 및 적용범위 설정 대상으로 선정
  - 2023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요(Project Brief) 승인 후, 2023년 9월 회의에서 기후 관련 공시기준서의 개발 계획 발표 후 이를 승인함. 2023년 12월 회의에서 공개초안의 목적, 적용범위 및 개념적 기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
- (목표)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부문 보고실체가 적용할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여 공시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투명성, 회계책임 이행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및 경과(2024년 3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2. 3월	CP	CP 승인	•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보고서 초안 승인
2022. 5월 ~ 2022. 9월	CP	이슈 논의	• 의견 수렴
2022.10월	CP	이슈 논의	• 응답에 대한 예비검토(Preliminary Review)
2022.12월	CP	이슈 논의	• 자문보고서 의견수렴 응답 검토 • 이슈 논의

15) 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기후 관련 공시) 관련 회의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3. 6월	CP	PB 승인	•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 개요 승인
2023. 9월	ED	이슈 논의	• 프로젝트 계획 및 로드맵 검토
2023.12월	ED	이슈 논의	• 공개초안 섹션 검토: 목적, 적용범위 및 개념적 기반
2024. 3월	ED	이슈 논의	• 공개초안 논의: 거버넌스, 전략, 영향 및 위험 관리
2024. 6월	ED	이슈 논의	• 공개초안 검토: 수치 및 목표, 일반 요구사항 및 경과규정
2024. 하반기	ED	승인	• 공개초안 승인

□ 정례회의 논의사항

- 공공부문은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 활동을 통해 다른 공공부문 실체, 민간부문 실체 또는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법령 및 정책을 설정할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자체 운영과 관련된 보고에 있어서는 IFRS S2 및 GRI 기후변화 기준에서 제시하는 원칙이 주요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부합하며, 공공부문의 용어 및 적용 지침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음
  - 정책 활동은 공공부문 고유의 특성이므로, 보고 작성자가 주요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부합하도록 비교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보고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공부문의 원칙 및 적용 지침이 필요
-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IFRS S2 및 GRI의 민간부문 지침을 참고할 수 있으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특화된 원칙 및 적용지침이 추가적으로 필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시사점

- 해당 사항 없음

<b>참고</b>	<b>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 세부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b>
<b>안건 10</b>	<b>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b>
<b>안건 항목</b>	<b>내용</b>
10.2.1	<p><b>프로젝트 관리 절차 및 2024년 1분기 개발 현황</b></p> <p><b>[목적]</b>          이 문서는 IPSASB 지속가능성 보고기준™(IPSASB SRS™) 중 기후 관련 공시기준 공개초안(ED)에 대한 활동 및 논의사항을 2023년 12월 이사회 회의 이후를 기준으로 개관한 것임. 본 문서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됨</p>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2월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이사회는 프로젝트 목적, 적용범위 및 개념적 기반에 관한 핵심 원칙들을 관련 지침에 따라 논의하고 합의하였음</li> <li>(b) 이사회는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IPSASB SRS ED X의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여기에는 목적, 적용범위 및 개념적 기반에 관한 초안 부분이 포함되었음</li> <li>(c) IPSASB 위원, technical advisor 및 observer는 분과별 토의에 참여하였으며, 공개초안의 해당 영역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거버넌스, 전략 및 위험관리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li> </ul> </li> </ul> <p><b>[2024년 1분기 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2월 이사회 회의 이후, Staff는 이사회 및 분과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고 논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2024년 1월 31일 지속가능성 자문단회의</li> <li>(b) 2024년 2월 13일 기후 주제 작업반(TWG) 회의</li> </ul> </li> <li>○ 위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범위 및 적용 대상을 고려하여, 기후와 관련된 영향의 정의를 기후에 특화된 방식으로 정교화하는 문제 - 안건 10.2.2 참조</li> <li>(b)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공부문의 정책 설정 및 규제 역할을 고려하여, 민간부문 지침을 어떻게 공공부문에 맞게 접근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 안건 10.2.3 참조</li> <li>(c) 공공부문에 특화된 조정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거버넌스 - 안건 10.2.4 참조</li> <li>(ii) 전략 - 안건 10.2.5 참조</li> <li>(iii) 영향 및 위험관리 - 안건 10.2.6 참조</li> </ul> </li> </ul> </li> <li>○ 2023년 12월 이사회 회의와 분과별 토의, SRG의 자문, CTWG의 피드백 및 권고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안건의 제안과 공개초안의 신규 단락 작성에 반영되었음</li> <li>○ 해당 회의에서 제기된 피드백과 질문에 대응하여, Staff는 향후 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초안의 원칙 및 요구사항에 방향성과 접근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의 적용을 검토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안건 10.2.2 참조</li> <li>○ 2024년 2분기 활동 준비의 하나로, Staff는 2024년 2월 20일 뉴욕시 IFAC 사무소에서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대표들과 함께 공공부문 기후 관련 지표에 관한 하이브리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2024년 2월 1일부터 15일 사이 UNDP, ISSB, GRI와의 개별 논의를 통해 지표 워크숍을 준비하였음</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10.2.1	<p>(b) SDG 13 목표, 「파리협정」 조항, IFRS S2 지표, GRI 기후변화 공개초안 및 기타 GRI 원칙 및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화이트보딩과 매핑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을 파악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민간부문 지표가 공공부문 목표에 적절하고 부합하는 영역</li> <li>(ii) 공공부문에 특화된 추가 지침 및 접근방식이 필요한 영역</li> </ul> <p>(c) UNDP, ISSB, GRI와 함께한 지표 워크숍에서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본 프로젝트에 대한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접근법 적용에 관한 Staff의 초기 의견</li> <li>(ii) 「파리협정」의 강화된 투명성 체계(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및 기존·개발 중인 기후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UNDP의 발표</li> <li>(iii)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지표와 목표 간의 정합성 및 일관성의 가능성</li> </ul> <p>○ 2024년 3월 회의에서 논의될 사안들은 공개초안 전체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예정임. 이에 따라 Staff는 2024년 2분기 체크인 회의에서 3월 회의의 IPSASB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초안의 각 단락을 항목별로 검토할 것을 제안함</p>
10.2.2	<p><b>프로젝트 목적 및 접근법</b></p> <p><b>[질문]</b>          이사회는 IPSASB SRS ED X, 기후 관련 공시기준과 관하여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ToC)을 적용하려는 Staff가 제안한 접근법에 동의하는가?</p> <p><b>[제안]</b></p> <p>○ Staff는 다음 (a)에 명시된 장기 목적을 기준으로 기준서의 기획 및 작성 방향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 이에 대한 적용 방식은 (b)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장기 목표: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및 공시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투명성, 회계책임 이행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임</li> <li>(b)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ToC) 적용이 기준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목적: 기존의 초안에서 제시된 목적을 '목적' 단락에서는 삭제하고, 변화이론 관점과 함께 결론 근거(Basis for Conclusions)에 포함해 기준서의 장기 목적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공하도록 조정함</li> <li>(ii) 실체의 상황 이해: 중요한 정보(예: 실체의 자체적 상황) 식별의 첫 단계로서, 최신 국제 약속(국가 계획 및 목표 포함) 과 그에 대한 실체의 기여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 지침을 제공함</li> <li>(iii) 거버넌스, 전략, 영향 및 위험관리: 실체의 전략, 거버넌스, 영향 및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국가 계획과 목표를 포함한 최신 국제 약속에 대한 실체의 기여 역할을 반영하도록 함. 구체적인 작성 제안은 안건 10.2.4-10.2.6 참조</li> </ul> </li> </ul> <p><b>[배경]</b></p> <p>○ 2023년 12월 이사회 회의에서 IPSASB는 기준서 초안의 목적에 합의하였음. 당시 이사회는 다수 국가가 기후 위기 또는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파리협정」에 서명 또는 비준하였으며, 「파리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국가별 전환 및 적응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이에 따라 공공부문 실체의 기후 관련 공시 목적 중 하나는, 국제적 약속 이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실행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p> <p>○ Staff는 안건 10.2.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목적에 대해 지속가능성 자문단(SRG) 및 기후 주제 작업반(CTWG)과 논의하였으며, 해당 목적의 개발 방향에 대한 지지와 자문을 받았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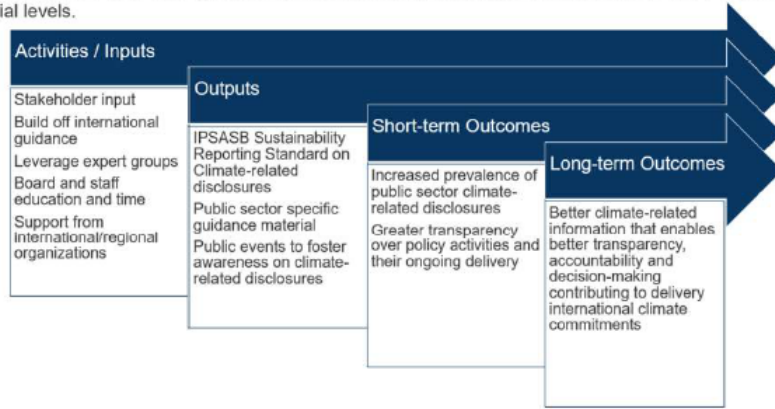
안건 항목	내용
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RS 공개초안의 목적에 대해 이사회와의 명확한 합의 및 확인을 위해, Staff는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ToC) 접근법을 적용하여 본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의 투입물, 산출물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li> <li>○ 다음 문서는 변화이론(ToC), 제안된 장기 목적 및 이에 따른 공개초안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개요 형태로 제시함</li> </ul>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2월 이사회 논의를 바탕으로, Staff는 IPSASB SRS X,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가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시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투명성, 회계책임 이행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장기 목적에 기여할 것이라 제안함</li> </ul> <p><i>변화이론(Theory of Change)</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이론(ToC)의 기본 전제는 프로젝트 개요와 일치하며,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공공부문의 활동은 모든 관할권에서 경제의 핵심 구성요소임(OECD 회원국 기준 GDP의 40% 이상). 따라서 「파리협정」 목표 및 해당 국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있어 역할 수행이 필수적임</li> <li>(b) 공공부문은 정책 수립 및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관할권의 NDC 달성에 있어 다른 경제 부문의 행동을 유도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음</li> <li>(c) 실제 및 프로젝트 수준의 정보가 확보되면, 관할권 전체 수준의 정보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됨</li> <li>(d) 공공부문 보고 프레임워크는 공공부문 자체의 운영 활동 및 그 정책/규제의 기후 관련 영향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고, 실제 및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li> <li>(e) 공공부문 보고 프레임워크는 투자자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며, 이는 국제가 전 세계 채권 시장(약 100조달러)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구성요소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가치사슬이 중첩됨에 기인함(예: 공공부문 배출량이 민간부문 Scope 3 공시에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 공시도 국제 민간부문 지침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li> <li>(f) 공공부문 보고는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최신 국제 협약 이행을 지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NDC 및 국가 전환·적응 계획이 포함됨</li> </ul> </li> <li>○ 문단 7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투입물과 산출물이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투입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IPSASB 이사회 및 Staff의 시간과 논의</li> <li>(ii) 지속가능성 자문단(SRG) 및 기후 주제 작업반(CTWG)의 전문 자문</li> <li>(iii) 기타 국제 기후 관련 기준</li> <li>(iv) 국제 및 지역 기구의 지원</li> </ul> </li> <li>(b)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IPSASB SRS X 기후 관련 공시기준</li> <li>(ii) 국제 공공부문 특화 지침 및 기타 적용 자료의 통합</li> <li>(iii) 공공부문 정보 수요에 대한 논의와 기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공개 행사</li> </ul> </li> </ul> </li> <li>○ 단기적으로 이러한 활동과 산출물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및 IPSASB SRS X, 기후 관련 공시기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li> <li>(b) 공공부문 실제의 자체 운영활동 및 (해당되는 경우) 정책활동에 대한 기후 관련 공시의 일관성을 촉진함</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실체가 본 기준을 적용하여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함에 따라, 보고서 이용자(서비스 수혜자 및 자원 제공자)와 그 혜택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서비스 수혜자: IPSASB SRS는 정책, 규제, 프로그램 이행계획, 전략 및 예산·지출계획 등에 기후위험과 영향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이를 통해 유권자 결정, 거주지 선택, 공공서비스 의존 여부 등의 판단에 필요한 투명성과 회계 책임을 확보할 수 있음</li> <li>(b) 공공부문 실체 및 시민단체 조직: IPSASB SRS는 정책입안자, 국가기준제정자, 규제기관, 개발실무자에게 기후위험과 기회, 정책활동의 시장 및 시민에 대한 영향에 관한 포괄적이고 국제적으로 일관되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 이 정보는 정부 및 공공부문 실체의 현재 및 예상 재정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과 연계된 재무정보로 뒷받침되며, 자원 배분, 정책활동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감축·적응 투자 수요 파악 등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함</li> <li>(c) 자본시장 투자자: IPSASB SRS는 투자자가 공공부문 실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후 관련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 투자 결정을 보다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정보에 기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본 정보는 적절한 경우 민간 자본시장 참여자를 위한 국제지침과 정합성을 유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자본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음</li> <li>(d) 개발 파트너 및 기부기관: IPSASB SRS는 공공재정관리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 세계 관할권의 자본조달(자본비용 절감), 접근성,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li> </ul> </li> <li>○ 개발 중인 공개초안의 목적 및 취지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PSASB Staff 및 CTWG에 참여 중인 IPSASB 위원들은 변화이론(ToC)을 기반으로 한 사고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음</li> </ul>

10.2.2

**IPSASB SRS Climate-related Disclosures Theory of Change**

Objective: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and promote consistency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in the public sector, so enabling better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decision-making, thereby supporting the achievement of the Paris Agreement goal to limit the global temperature increase to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 실무진은 공공부문실체의 보고를 국제적 약속, 특히 국가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개념에 대해 SRG 및 CTWG와 논의하였음. SRG는 이러한 접근방식과 목적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SDGs와 「파리협정」의 역사성과 광범위한 수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약속과의 정합성 유지는 국제적 기후공시 기준 및 공공부문 기후보고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였음

안건 항목	내용
10.2.2	<p><b>추가적인 시사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된 장기목적은 초안 기준의 원칙 및 공시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접근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함. 2023년 12월 검토된 공개초안의 문단 2에 포함된 목표는 이 장기목적과 일치하였으나, 실무진은 해당 목적을 결론 근거(Basis for Conclusions)로 옮겨,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포함하여 보다 명확하고 충실히 설명할 것을 제안함</li> <li>○ 2023년 12월 논의한 바와 같이, 개별 실체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 공시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첫 단계임. 이에 따라 실체는 국제적 약속에 따른 의무사항과 이와 연계된 지역적, 국가적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목표 및 계획을 이해해야 함. 이는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정책 활동의 영향(해당되는 경우)을 파악하여 중요한 공시사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줌</li> <li>○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실체는 자체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및 목표가 국제적 약속 및/또는 국가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혹은 기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관련 공시를 제공해야 함. 해당 목적을 거버넌스, 전략, 영향 및 위험관리 항목에 통합하기 위해 제안된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안건 10.2.4-10.2.6참조</li> </ul> <p><b>[의사결정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는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지?</li> </ul>
10.2.3	<p><b>공공부문 정책 활동</b></p> <p><b>[질문]</b></p> <p>이사회는 IPSASB SRS ED X, 기후 관련 공시 기준 초안에서 제시된 공공부문 특화 조정사항에 대한 Staff의 제안에 동의하는가?</p> <p><b>[제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진은 다음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공공부문 이용자의 공공부문 실체의 자체 운영과 관련된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부문 지침이 적절함. 따라서 공개초안은 민간부문 지침과 정합성을 유지하되, 공공부문 용어로 수정하고 추가적인 적용 지침을 제공할 것</li> <li>(b) 공공부문에 특화된 지침이 필요한 공공부문의 주요 차이점은 공공부문 실체의 정책 활동에 관련되어 있음</li> </ul> </li> <li>○ Staff는 정책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공부문 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다음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정책은 입법, 규제, 지침, 기준, 절차,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금, 지출, 세금 등 재정 조치 및 공공 소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정책 개입을 포괄함</li> <li>(ii) 기후 관련 영향은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해 실체의 정책 활동이 경제, 환경, 사람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의미함</li> </ul> </li> <li>(b) 조직의 상황 이해: 중요 정보 식별의 첫 단계로, 실체는 자체 운영뿐 아니라 정책 활동(해당하는 경우)을 이해해야 함</li> <li>(c) 지배구조, 전략, 영향 및 위험관리: 실체의 정책 활동(해당하는 경우)을 지배구조, 전략, 영향 및 위험관리 항목에 포함할 것. 세부 작성 방안은 안건 10.2.4-10.2.6 참조</li> </ul> </li> </ul>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2월 이사회 회의에서 기후 관련 프로젝트 안건 및 분과별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규제 및 정책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부문 실체에 대한 추가 지침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음. 이러한 공공부문 조직의 규제자 및/또는 정책 수립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2022년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을 위한 자문보고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에서도 반복되었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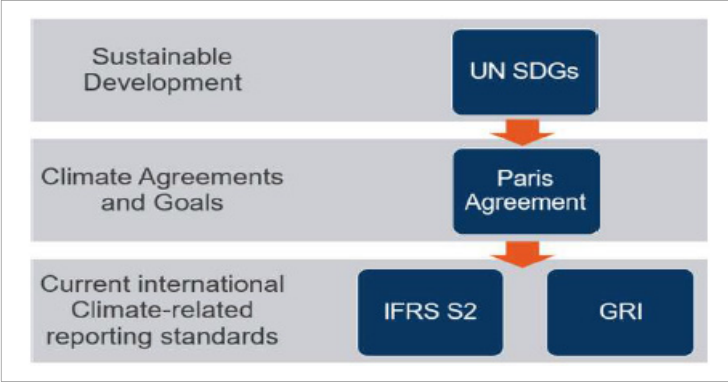
안건 항목	내용
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2023년 12월 회의에서는 규제 및/또는 정책 수립과 관련된 정책 활동에 대한 별도의 분과별 토의가 진행되었음. 이 토의에서 도출된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정책 개입은 기후 관련 공시의 모든 요소에 걸쳐 관련성이 있음</li> <li>(b) 각 관할권의 구조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함에 따라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예: 정책 수립자, 정책 실행자, 정책 감독자, 예산과의 연계 등)을 구분하기 위한 원칙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li> <li>○ Staff는 상기 분과별 토의에서 도출된 의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제안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안건 10.2.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SRG, CTWG, UNDP, GRI 및 ISSB에 제시하였음. 해당 접근 방식에 대해 강한 지지를 받았으며, 초기 구상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았음. 본 문서는 2024년 1분기 동안 진행된 Staff의 다양한 작업 및 논의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li> </ul> <p><b>[분석]</b></p> <p><i>공공부문 실체의 자체 운영 vs. 정책 활동</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2월 IPSASB의 의견을 바탕으로 Staff는 공공부문 고유의 이슈로서 별도의 공공부문 원칙이 요구되는 사항은 일부 실체가 자체 서비스 제공 운영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실체, 민간실체 또는 개인의 활동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규제나 법령을 통해 설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임을 제안함. 실체의 자체 운영에 대한 보고 시 Staff는 거버넌스, 전략 수립,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평가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음</li> <li>○ 공공부문 실체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지만, 자원 제공자(투자자 포함) 및 서비스 수혜자 등 이용자들은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자원의 효과적·효율적 배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과 동일한 정보를 필요로 함</li> <li>○ 따라서 Staff는 IFRS S2 및 GRI 기후변화 기준에서 제시하는 원칙이 공공부문 실체의 자체 운영과 관련된 정보 요구에 부합하며, 공공부문 용어 및 적용 지침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함</li> <li>○ 그러나 정책 활동은 공공부문 고유의 특성이므로, 보고 작성자가 이용자의 기후 관련 정보 요구에 부합하도록 비교 가능하고 일관된 보고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공부문 원칙 및 적용 지침이 필요함</li> <li>○ 본 공개초안에서는 공공부문 실체가 수행하거나 의무화한 다양한 개입(예: 법령 제정, 규제, 프로그램, 세금, 보조금, 인센티브 등)을 통칭하여 “정책 활동”이라고 지칭할 것을 제안함</li> <li>○ SRG 구성원들은 이 접근방식과 정책 활동에 대한 공공부문 특화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하였음. SRG 및 CTWG 구성원들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실무적 적용을 위한 문안 단순화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Staff는 이를 공개초안에 반영하였음</li> </ul> <p><i>실체의 자체 상황 이해</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출발점으로서, 실체는 중요 정보를 판단하기에 앞서 자체 운영과 정책 활동(해당되는 경우)을 포함한 실체의 상황을 이해하여야 함. 대부분의 공공부문 실체는 정책 활동 역할을 수행하는 실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운영에 대해서만 보고할 것으로 예상됨</li> </ul>

안건 항목	내용												
10.2.3	<p><i>기후 관련 영향</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2023년 12월 회의에서 IPSASB의 지시에 따라, 정의가 기후에 특화되도록 기후 관련 영향의 정의를 재검토하였음. 2023년 12월에 제시된 정의는 GRI의 '영향' 정의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GRI는 기후에 특화된 영향 정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용자 개념도 IPSASB 개념체계보다 더 넓게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Staff는 기후에 특화된 공공부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영향' 개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를 추가 검토하였음</li> <li>○ 다음은 GRI의 '영향' 관련 지침과 기후변화 맥락에서 공공부문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임:</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40%;">GRI 1 지침</th> <th style="width: 45%;">공공부문 기후 변화 관련성</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환경에 대한 영향</td> <td>조직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대기, 토지, 수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조직은 에너지, 토지, 수자원 및 기타 천연자원의 사용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td> <td>공공부문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GHG)를 제외하면, 환경에 대한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영향은 토지 이용,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관행과 관련된 규제나 보조금 제도, 재생 에너지 사용 또는 차량 배출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정책 활동에 의해 발생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제에 대한 영향</td> <td>조직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지역, 국가 및 세계 수준의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조직은 경쟁 관행, 조달 관행, 정부에 대한 세금 및 납부 등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td> <td>공공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기후 관련 규제나 기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기타 재정 조치와 같은 정책 활동이 다른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람에 대한 영향</td> <td>조직의 사람에 대한 영향은 개인 및 공동체, 취약계층 또는 사회와 같은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여기에는 조직이 사람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됨. 조직은 고용 관행(예: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공급망(예: 공급업체 노동자의 근로 조건), 제품 및 서비스(예: 안전성 또는 접근성)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td> <td>기후변화 맥락에서, 기후 관련 정책 활동은 사람에 대한 기후 관련 영향의 주요 원인임.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정책이나 전기차 사용 장려 인센티브로 인해 광산 지역 공동체의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이에 해당함</td> </tr> </tbody> </table>		GRI 1 지침	공공부문 기후 변화 관련성	환경에 대한 영향	조직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대기, 토지, 수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조직은 에너지, 토지, 수자원 및 기타 천연자원의 사용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공부문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GHG)를 제외하면, 환경에 대한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영향은 토지 이용,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관행과 관련된 규제나 보조금 제도, 재생 에너지 사용 또는 차량 배출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정책 활동에 의해 발생함	경제에 대한 영향	조직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지역, 국가 및 세계 수준의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조직은 경쟁 관행, 조달 관행, 정부에 대한 세금 및 납부 등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공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기후 관련 규제나 기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기타 재정 조치와 같은 정책 활동이 다른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사람에 대한 영향	조직의 사람에 대한 영향은 개인 및 공동체, 취약계층 또는 사회와 같은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여기에는 조직이 사람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됨. 조직은 고용 관행(예: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공급망(예: 공급업체 노동자의 근로 조건), 제품 및 서비스(예: 안전성 또는 접근성)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후변화 맥락에서, 기후 관련 정책 활동은 사람에 대한 기후 관련 영향의 주요 원인임.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정책이나 전기차 사용 장려 인센티브로 인해 광산 지역 공동체의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이에 해당함
		GRI 1 지침	공공부문 기후 변화 관련성										
	환경에 대한 영향	조직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대기, 토지, 수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조직은 에너지, 토지, 수자원 및 기타 천연자원의 사용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공부문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GHG)를 제외하면, 환경에 대한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영향은 토지 이용,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관행과 관련된 규제나 보조금 제도, 재생 에너지 사용 또는 차량 배출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정책 활동에 의해 발생함										
경제에 대한 영향	조직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지역, 국가 및 세계 수준의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조직은 경쟁 관행, 조달 관행, 정부에 대한 세금 및 납부 등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공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기후 관련 규제나 기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기타 재정 조치와 같은 정책 활동이 다른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사람에 대한 영향	조직의 사람에 대한 영향은 개인 및 공동체, 취약계층 또는 사회와 같은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여기에는 조직이 사람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됨. 조직은 고용 관행(예: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공급망(예: 공급업체 노동자의 근로 조건), 제품 및 서비스(예: 안전성 또는 접근성)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후변화 맥락에서, 기후 관련 정책 활동은 사람에 대한 기후 관련 영향의 주요 원인임.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정책이나 전기차 사용 장려 인센티브로 인해 광산 지역 공동체의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이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Staff는 직접적인 기후 관련 영향에 대한 개념과 공시 요구사항은 공공부문의 정책 활동 및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실제로 한정할 것을 제안함. 이는 기후 관련 공시의 이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가 해당 실체의 기후 관련 정책이 경제, 환경 및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거버넌스, 전략적 결정(예: 상충관계에 대한 판단 포함), 영향 관리 등에 있는 정보 요구에 부합함</li> <li>○ 따라서 기후 관련 지표 워크숍 논의, 위 문단 24~30의 제안 접근방식, 그리고 문단 32의 분석을 바탕으로, Staff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자체 운영: 기후 관련 영향은 해당 실체의 자체 운영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임. 즉 실체가 자체 운영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 기후 관련 영향은 온실가스(GHG) 배출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 및 위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로 한정됨. 이는 IFRS S2의 공시 요구사항과 일치함</li> <li>(b) 정책 활동: 기후 관련 영향은 기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활동이 경제, 환경 및 사람들에게 실제로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임</li> </ul> </li> </ul>													
<p><b>[의사결정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가 제안에 동의하는지?</li> </ul>													

안건 항목	내용
10.2.4	<p><b>거버넌스</b></p> <p><b>[질문]</b>                      이사회는 IPSASB SRS ED X, 기후 관련 공시의 거버넌스 항목에 대해 Staff가 제안한 공공부문 조정사항, 추가 원칙 및 적용 지침에 동의하는가?</p> <p><b>[제안]</b>                      ○ Staff는 문단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부문 조정사항, 추가 원칙 및 적용 지침을 제안함</p> <p><b>[배경]</b>                      ○ 2023년 12월 IPSASB 회의에서 이사회, technical advisor, observer는 분과별 토의 형식으로 다음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a)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체계와 기구는 민간부문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b)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체계와 기구는 민간부문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어떤 조정사항이 필요한가?</p> <p>○ 구성원들은 분과별 토의의 결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거버넌스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관점을 제시하였음:                      (a)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적은 동일함                      (b) 일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실체의 지배구조는 유사하므로, S2의 거버넌스 관련 단락은 적용 가능함                      (c) 일부 공공부문실체는 민간부문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므로 별도의 원칙이나 추가적인 적용 지침이 요구됨(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상급 정부의 감독을 받는 지역정부, 부처의 규제를 받는 기타 실체 등)                      (d) 정부의 정책 설정 역할도 거버넌스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함. 예를 들어 고위급 정부 기관(예: 중앙은행 규제기관)은 국가 내 모든 은행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므로 공시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e) 거버넌스는 실체의 기본적인 목적 및 국제적 약속(예: 국가 목표 포함)에 관한 기여도에 대한 감독도 포함해야 함                      (f) 정부 변화는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p> <p>○ Staff는 상기 제안을 검토하여 SRG 및 CTWG에 제안서를 제시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안건 10.2.1에서 논의하였음. 본 문서는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한 제안된 접근방식 및 개념을 설명함</p> <p><b>[분석]</b>                      ○ 2023년 12월 IPSASB 회의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IFRS S2 및 GRI의 민간부문 지침을 참고할 수 있음이 언급되었음. 그러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칙 및 적용 지침이 요구됨</p> <p>○ 분과별 토의에서 제시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Staff는 IFRS S2의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요구사항 및 적용 지침을 제안함:                      (a) 실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i) 지배구조 체계가 실체의 목적과 국제적 약속(국가 목표 및 계획 포함) 달성에 기여를 어떻게 감독하는지                      (ii) 지배구조 체계가 정책 활동 전반(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정책 이행 및 효과가 어떻게 모니터링되는지 포함)을 어떻게 감독하는지                      (b) 공공부문 보고 작성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적용 지침을 제공함:                      (i) 정책 프로그램의 감독 및 관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거나, 특정 정부 수준이 상위 정부나 부처의 감독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지배구조 체계에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적용지침</p>

안건 항목	내용
10.2.4	<p><b>[의사결정 필요]</b>                      ○ IPSASB가 제안에 동의하는지?</p>
	<p><b>전략</b></p>
	<p><b>[질문]</b>                      이사회는 IPSASB SRS ED X, 기후 관련 공시의 전략 항목에 대해 Staff가 제안한 공공부문 조정사항, 추가 원칙 및 적용 지침에 동의하는가?</p>
	<p><b>[제안]</b>                      ○ Staff는 문단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략에 대한 공공부문 조정사항, 추가 원칙 및 적용 지침을 제안함</p>
10.2.5	<p><b>[배경]</b>                      ○ 2023년 12월 IPSASB 회의에서 이사회, technical advisor, observer는 분과별 토의 형식으로 다음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a) 공공부문의 전략과 민간부문의 전략은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b) 공공부문의 전략은 민간부문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어떤 조정사항이 필요한가?                      (c) 공공부문이 규제자 및 정책 설정자로서 가지는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어야 하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p> <p>○ 구성원들은 분과별 토의의 결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전략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관점을 제시하였음:                      (a) 전략은 실체의 역할과 그 역할이 국제적 약속(예: 국가 전환계획 등 국가 목표 포함)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해야 함                      (b) 공공부문실체의 전략 수단은 폭넓게 구성될 수 있으며, 내부 활동뿐 아니라 규제 수단도 포함될 수 있음                      (c) 공공부문의 위험은 민간과 다를 수 있으며, 실체의 전략은 이러한 위험을 반영해야 함(예: 최종 보증자로서의 위험 등)                      (d) 공공부문실체는 기존에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p> <p>○ Staff는 상기 제안을 검토하여 SRG 및 CTWG에 제안서를 제시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안건 10.2.1에서 논의하였음. 본 문서는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한 제안된 접근방식 및 개념을 설명함</p> <p><b>[분석]</b>  <b>전략</b>                      ○ 2023년 12월 IPSASB 회의의 분과별 토의에서 공공부문 실체의 전략이 지향해야 할 초점과 목적은 해당 실체의 자체 활동뿐만 아니라(해당되는 경우) 정책 활동이 국제적 약속, 특히 국가 목표 및 계획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반영해야 함이 언급되었음</p> <p>○ 민간부문과의 주요 차이점으로 인해 IFRS S2의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원칙 및 적용 지침이 요구됨:                      (a) 실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함:                      (i) 실체의 자체 운영 전략 및 관련 정책 활동이 국제적 약속, 국가 목표 및 계획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여부와 그 방식                      (ii) 실체의 전략이 공공부문 고유의 위험(예: 정책 조정 및 이행 위험 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p>

안건 항목	내용
10.2.5	<p>(iii) 실체의 정책 활동 전략이 어떻게 수립 및 모니터링되고 있는지, 이것이 실체의 자체 운영 전략과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효과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배분 계획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p> <p>(b) 공공부문 보고 작성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용 지침을 제공해야 함:</p> <p>(i) 공공부문실체가 자신의 운영모델 및 가치사슬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함</p> <p>(ii) 정책 활동과 관련된 전략 및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설명함</p> <p>(iii) 실체가 고위 정부 등 타 실체에서 수행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함(기후 회복탄력성 평가 시 이를 참조 가능)</p> <p><b>[의사결정 필요]</b></p> <p>○ IPSASB가 제안에 동의하는지?</p>
10.2.6	<p><b>위험관리</b></p> <p><b>[질문]</b></p> <p>이사회는 IPSASB SRS ED X, 기후 관련 공시의 위험관리 항목에 대해 Staff가 제안한 공공부문 조정사항, 추가 원칙 및 적용 지침에 동의하는가?</p> <hr/> <p><b>[제안]</b></p> <p>○ Staff는 문단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험관리에 대한 공공부문 조정사항, 추가 원칙 및 적용 지침을 제안함</p> <p><b>[배경]</b></p> <p>○ 2023년 12월 IPSASB 회의에서 이사회, technical advisor, observer는 분과별 토의 형식으로 다음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p> <p>(a) 공공부문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민간부문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p> <p>(b) 공공부문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민간부문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어떤 조정사항이 필요한가?</p> <p>○ 구성원들은 다시 모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위험관리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주요 메시지와 통찰을 공유하였음.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음:</p> <p>(a)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은 동일함</p> <p>(b) 공공부문실체가 직면하는 위험은 민간부문과 다르며, 위험 완화 전략 또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름</p> <p>(c) 위험에는 회계책임, 정책 설정 역할, 그리고 정부가 사회·관할권·경제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위험 범주도 포함됨(예: 영향 관리)</p> <p>(d) 외부 환경 조건(예: 국제적 약속)을 고려하고, 이러한 약속 이행과 관련된 위험, 타 실체의 비이행 또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위험, 그리고 정책 효과 측정을 포함한 완화 조치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함</p> <p>○ Staff는 상기 제안을 반영하여 SRG 및 CTWG에 제안서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의제문서 10.2.10에서 논의하였음. 본 문서는 다양한 그룹 및 논의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한 제안된 접근방식과 개념을 설명함</p> <p><b>[분석]</b></p> <p>○ 2023년 12월 IPSASB 회의의 분과별 토의 결과,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방법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대체로 동일하나, 실체가 직면하는 위험과 이에 대한 완화 전략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언급되었음. 따라서 IFRS S2의 내용 외에도 공공부문에 특화된 추가 원칙 및 적용지침이 요구됨:</p>

안건 항목	내용
10.2.6	<p>(a) 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필요함:                      (i) 실체의 정책 활동과, 그 활동이 사람,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접근방식                      (b) 작성자를 위한 적용 지침을 제공해야 함:                      (i) 국제적 약속(국가 목표 및 계획 포함) 미이행 위험, 정책 불이행 또는 정부 변화로 인한 통제 불가능한 위험 등 공공부문 특유의 위험관리 고려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                      (ii) 정책 활동과 관련된 영향 및 위험관리 방식이 다른 공공부문실체의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체의 자체 운영에 대한 위험관리와 통합되어 있는지 또는 별도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침</p> <p><b>[의사결정 필요]</b>                      ○ IPSASB는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지?</p>
<b>지표 및 경과규정에 대한 분과별 토의</b>	
<p><b>[목적]</b>                      ○ 본 문서는 3월 회의 중 분과별 토의에 대비하여 IPSASB 위원들이 고려할 배경과 질문을 제공함                      ○ 분과별 토의의 목적은 공공부문에 특화된 사안에 대해 IPSASB 위원들이 예비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Staff가 2024년 2분기 중 IPSASB ED SRS X, 기후 관련 공시 개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임</p>	
<p><b>[배경]</b>                      ○ 지표 및 경과규정은 Staff가 2분기 중 개발하여 이사회에 논의 및 검토를 위해 제시할 다음 섹션들 중 일부임                      ○ 이들 섹션을 개발하기에 앞서, 이사회 위원들은 공공부문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과 통찰을 공유할 기회를 가지며, 이는 향후 초안 작성에 반영되어 2024년 6월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시될 예정임</p>	
10.2.7	<p><b>지표 및 목표</b>                      ○ 자문보고서(CP)에 대한 의견 중 일부는 IPSASB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글로벌 목표와 공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음. 2023년 12월 IPSASB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공시의 목적이 SDGs 및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적 약속,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발표한 국가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Staff는 지속가능성 자문단(SRG)과 기후 주제 작업반(CTWG)에 다음과 같은 지표 및 목표 지침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하였음</p>
 <pre>                     graph TD                         SD[Sustainable Development] --&gt; UN[UN SDGs]                         UN --&gt; CA[Climate Agreements and Goals]                         CA --&gt; IFRS[IFRS S2]                         CA --&gt; GRI[GRI]                     </pre>	

안건 항목	내용
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도표는 UN SDGs와 「파리협정」에 의해 설정된 국제적 목표 및 지표를 바탕으로 지표 및 목표 개발의 지침 원칙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를 설명함. Staff는 IPSA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지표 지침이 실체의 자체 운영에 대해 민간부문 지침과 일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 부문의 정책 활동에도 민간부문 지침과 일치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또한, 민간부문 지침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지표 및 목표 지침의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함</li> <li>○ SRG 위원들은 지표와 목표를 글로벌 목표 및 국제 협약과 연계하는 앞에서의 광범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지지하였으며, 이는 이미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받고 있고, 통계 데이터 수집 요건(데이터 수집, 제출 등)도 갖추고 있음</li> <li>○ CTWG 위원들은 일부 민간부문 지표(예: 기후 관련 보상 정책, 탄소 가격제)의 공공부문 관련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정책 활동과 관련된 지표(예: 규제자의 범위 설정, 정책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 보고 범위 결정 등)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였음</li> <li>○ Staff는 UNDP, ISSB, GRI의 대표자들과 함께 안건 10.2.1에 요약된 공공부문 기후 관련 지표 워크숍에서 다양한 프레임워크 간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였음</li> <li>○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Staff는 2024년 2분기 중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 및 추가 연구·검토가 필요한 영역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실체의 자체 운영에 관하여, 공공부문의 지표 요구사항을 IFRS S2의 지표(IFRS S2 문단 29(a)-(e))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함. 이는 안건 10.3.2에서 제안된 접근 방식에 따름</li> <li>(b) 실체의 자체 운영에 대한 공공부문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내부 탄소 가격제(IFRS S2.29(f)) - 공공부문에 필요한 조정사항이 있는지 검토</li> <li>(ii) 보상(IFRS S2.29(g)) -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관련성을 검토</li> <li>(iii) 산업 기반 지표(IFRS S2.32) - 실체가 잠재적으로 비교가능한 SASB 산업 지침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SASB 산업 범주(예: 교육, 보건 분야)와 OECD 정부기능분류(COFOG) 내 일부와의 잠재적인 관련성에 대해 예시 또는 설명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li> </ul> </li> <li>(c) 정책 활동에 관한 지표에 대해 안건 10.2.3에서 제안된 접근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원칙 및 적용 지침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다음 기준의 사용을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GHG 프로토콜 정책 및 행동 기준 - 특정 정책과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배출 변화의 추정치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li> <li>(b) GHG 프로토콜 감축 기준 - 국가 또는 하위 국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전체적 진척도를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해 사용</li> </ul> </li> <li>(ii) 민간부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파리협정」의 기타 조항에 대한 다음의 추가 지침을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정책 활동 - 흡수원과 저장소의 관리, 시장 및 비시장 접근 방식 관련 정책(「파리협정」 제5조 및 제6조)</li> <li>(b) 국제기구 - GRI CC-3 공정 전환(Just Transition) 지침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손실 및 피해, 자원, 기술, 역량 구축 지원 촉진 관련 지침을 검토(「파리협정」 제8-11조)</li> </ul> </li> </ul> </li> </ul> </li> </ul> <p><i>경과규정</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RG 위원들과 2022년 5월 자문보고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에 대한 응답자들은 공공부문이 역량, 기술,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러한 어려움은 경과규정을 포함한 비례성(proportionality) 조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li> <li>○ 일부는 공공부문의 전환과 관련하여 IPSASB가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음:</li> </ul>

안건 항목	내용
10.2.7	<p>(a)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식화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책임 아래 각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가진 역량과 책임이 상이함을 인정하는 개념임</p> <p>(b) 공공부문은 법률을 통해 공시 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민간부문처럼 규제기관이 정한 채택 시점에 따라야 하는 것과 달리, 기준 완전 채택 이전에 준비 기간과 ‘시험 적용 기간(dry run)’을 더 길게 가질 수 있음</p> <p>○ 민간부문 중에서도 중소기업 등은 역량, 기술,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비례성 어려움(proportionality challenge)에 직면함. 이에 ISSB는 다음과 같은 비례성 규정 및 경과 규정을 마련함:</p> <p>(a) 비례성 메커니즘(IFRS S2 문단 BC14-BC15 참조):</p> <p>(i) 리스크 및 기회 식별, 가치사슬 범위 결정,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산업 간 공통 지표 산정 시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한 정보” 개념을 적용함</p> <p>(ii) 예상 재무영향 및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관련된 전략 공시에 있어 실제의 기술, 역량, 자원 등을 고려함</p> <p>(b) 최초 회계연도에 다음 사항을 허용하는 경과규정(IFRS S2 문단 C3-C5 참조):</p> <p>(i) 비교정보 미공시 허용</p> <p>(ii) IFRS S2 최초 적용 직전 보고 기간에 사용한 방법이 다른 경우,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 (2004)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사용 허용</p> <p>(iii)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미공시 허용</p> <p>○ 분임별 토의를 위한 공공부문 전환 지침 제공에 대한 세 가지 잠재적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음:</p> <p>(a) 민간부문과 일치하는 경과규정 - IFRS S2와 동일하게, 최초 회계연도에는 비교정보 및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p> <p>(b) 확장된 민간부문 경과규정 - 비교정보 및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유예 기간을 최초 회계연도에서 최대 3개의 회계연도로 연장함</p> <p>(c) 공공부문 특화 경과규정 - 대안적 접근 방식을 고려함. 영국 재무부(HM Treasury)의 TCFD 지침 점진적 도입 사례처럼 보고를 단계적으로 시행함. 예를 들어 최초 회계연도에는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 공시를 요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전략, 그다음 회계연도에는 지표 및 목표를 보고하도록 함</p> <p>○ 일부 국가들의 IPSAS 도입 사례에서처럼(문단 12(b) 참조), 보고 실체는 IPSASB SRS의 공식 채택 전에 ‘시험 적용 기간(dry run)’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시험 적용 기간은 앞서 제시된 세 가지 전환 시나리오 모두에 선행될 수 있음</p> <p><b>분과별 토의 준비</b></p> <p>○ 분임조 내 다른 위원 및 technical advisor와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전체 회의(plenary) 전에 다음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a) IFRS S2 관련 부분:</p> <p>(i) 지표 및 목표(문단 29-37 및 B19-71)</p> <p>(ii) 비례성(문단 BC14-BC15) 및 경과규정(문단 C3-C5)</p> <p>(b) GRI 기후변화 기준, GSSB의 기후 변화 기준 초안 중 CC-1 및 CC-2 공시항목</p> <p>(c) 「파리협정」</p> <p><b>[분과별 토의]</b></p> <p>○ 2024년 3월 회의에서 IPSASB 위원, technical advisor, observer는 지표 및 목표, 경과규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분과별로 배정될 예정임. 각 분과에서 도출된 의견은 전체 세션에서 공유되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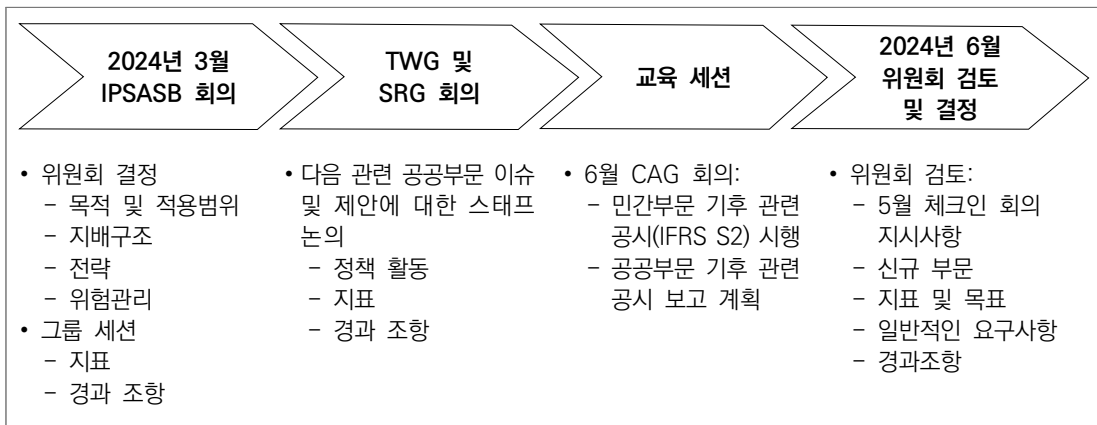
안건 항목	내용
10.2.7	<p>이는 Staff가 SRG와의 자문 자료를 마련하고 CTWG와의 제안서 개발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될 것임. 이를 통해 2024년 2분기에 개발될 기준 초안의 다음 섹션에 이사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임</p> <p>○ 분과별 토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추가 사항은 2024년 3월 IPSASB 회의에서 직접 안내될 예정임</p> <p><b>[질문]</b></p> <p>○ 이전 분과별 토의와 마찬가지로 분과별 토의는 유연하게 진행되나, 전체회의에서 공유할 주요 피드백은 다음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요청됨:</p> <p><i>지표 및 목표</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자체의 운영에 대해 IFRS S2 지표를 적용하는 제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가?</li> <li>- 정책 활동과 관련된 공공부문 차이를 고려한 추가 검토 필요 영역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가?</li> <li>- Staff가 추가로 탐색해야 할 공공부문의 특수성에는 무엇이 있는가?</li> </ul> <p><i>경과규정</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 민간부문과 동일한 경과규정, (ii) 확장된 민간부문 경과규정, (iii) 공공부문 특화 경과규정 중 어떤 접근법을 선호하는가?</li> <li>- 선호하는 접근법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 (iii) 공공부문 특화 경과규정 접근법을 선호할 경우,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경과규정 예시에 대한 설명을 제공</li> <li>- Staff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비례성 요소(proportionality considerations)는 무엇이 있는가?</li> <li>- '시험 적용 기간(dry run)' 방식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ul> <p><b>[보충 자료(참고용)]</b></p> <p>○ 분과별 토의를 위한 준비 및 건설적인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 및 technical advisor는 다음의 추가 자료를 검토할 것을 권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DG 13 목표 및 지표</li> <li>(b) SASB 기준 및 산업 분류</li> <li>(c) 온실가스(GHG) 배출량 산정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GHG 프로토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IFRS S2에서 요구되며 GRI 305의 GHG 공시요구사항과 일치)</li> <li>(b) GHG 프로토콜 정책 및 행동 기준</li> <li>(c) GHG 프로토콜 감축 기준</li> </ul> </li> <li>(ii) IPCC 지침 – 「파리협정」 관련 보고에 요구됨</li> </ul> </li> </ul>

**2 2024년 6월 정례회의<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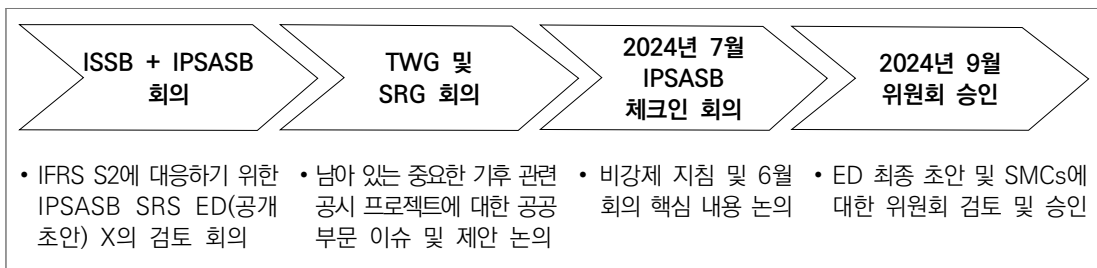
□ (발표자) Celine Chan

□ (목적)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보고실체가 적용할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 개발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 일정〉**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 다음 단계〉**



□ 진행 경과

- 2023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요(Project Brief) 승인 후, 2023년 9월 회의에서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의 개발 계획 발표 후 이를 승인함. 2023년 12월 회의에서 공개초안의 목적, 적용범위 및 개념적 기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3월 회의에서 공개초안의 거버넌스, 전략, 영향 및 위험 관리 측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16) 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기후 관련 공시) 관련 회의

□ 정례회의 논의사항

○ (공개초안 검토) 보고대상에 대한 범위

- 정책 활동 보고의 범위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설계된 정책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함
- 쟁점사항

① 내부 vs 외부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모두 내부 정책활동이 존재, 외부 정책 활동은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관련됨
-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게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정책 활동만을 공시하도록 지정할 필요

② 모든 정책 활동 vs 기후 관련 정책 활동

③ 정책 만드는 사람 vs 시행하는 사람

-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긍정적, 부정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 결정 필요

○ 5월 체크인 회의의 후속 논의

- (목표 및 범위) '서비스 제공'이 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목표 문단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
- (정의) RPG 3의 '산출물(output)'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함. 여기에는 정책 활동을 포함 시키도록 수정
- (지배구조) 지배구조 및 전략 문단의 목표를 비재무 보고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 (전략) 자체 운영 및 정책 활동에 대한 임계값과 정책 설정 기관이 더 높은 임계값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재고려  
⇒ 기후 관련 정책 활동과 관련된 공시에 있어서 낮은 임계값에 대한 참조를 제거하기 위해 제25항 업데이트 완료

○ 기후 관련 정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 (분석) 온실가스 배출

① 가치사슬이나 관할권과 같은 범위 내의 재고자산

②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감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변화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회계책임 제공

- (방법론) 온실가스 프로토콜\* 정책 및 조치 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지침 원칙

\*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프로토콜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관한 파트너십으로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 기준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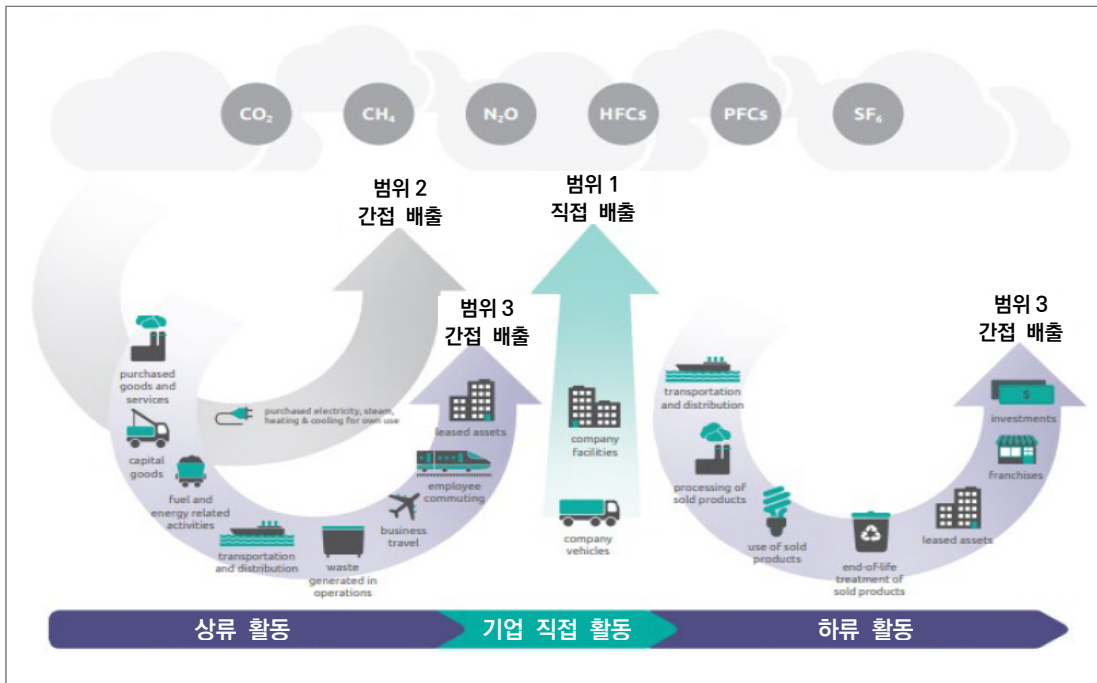
GHG 프로토콜은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를 위해 3개의 범위(scope)를 설정함

- 범위 1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기업의 소유 혹은 통제하에 있는 보일러, 자동차 등의 연소로 인한 배출과 설비시설, 화학적 생산활동으로 인한 배출 등을 포함

- 범위 2는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사업자가 소비하는 구입 전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산정

- 범위 3은 기타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사업자 활동의 결과이지만 사업자가 직접 소유 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함

〈GHG 프로토콜의 범위 및 탄소 배출량의 관계〉



〈범위(scope) 3 온실가스 회계처리 보고기준에서 정의하는 scope 3 15개 카테고리 분류〉

상류(카테고리 1~8)	하류(카테고리 9~15)
1. 상품 및 서비스	9. 하류 운송 및 유통
2. 자본재	10. 판매된 상품의 가공 과정
3. scope 1 또는 2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11. 판매된 상품의 이용
4. 상류 운송 및 유통	12. 판매 상품의 폐기(처리)
5. 사업장 발생 폐기물	13. 하류 임대자산
6. 비즈니스 출장	14. 프랜차이즈 공급사
7. 임직원 출퇴근	15. 투자
8. 상류 임대자산	

- 공시 의무

- ① 기후 관련 정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예상 변화
- ②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설명

**3 2024년 12월 정례회의(17)**

□ 프로젝트 목적 및 추진 경과

- (배경) 투명성 제고 및 회계책임 이행을 강화하며,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개발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음
  - 세계은행은 IPSASB가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에 대한 글로벌 자문을 주도할 것을 촉구
  - IPSASB는 자문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 기후 관련 공시, 및 천연자원 관련 공시에 관한 지침을 우선적인 연구 대상 및 적용범위 설정 대상으로 선정
- (목표) IPSASB의 기존 권장실무지침(RPG), 개념적 프레임워크 및 민간부문의 IFRS S1 등을 고려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기준에 대한 공식 지침을 개발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경과(2024년 12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2. 3월	CP	이슈 논의	• 자문보고서-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추진 발간
2022. 5월 ~ 2022. 9월	CP	이슈 논의	• 의견수렴
2022.10월	CP	이슈 논의	• 응답에 대한 예비검토(Preliminary Review)
2022.12월	CP	이슈 논의	• 자문보고서 의견수렴 응답 검토 • 이슈 논의
2024.12월	CP	이슈 논의	• 잠재적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 평가 관련 이슈 논의

17) Sustainability: Research and Scoping(연구 및 범위 설정) 관련 회의

정례회의 논의사항(발표자: Celine Chan)

-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과 관련된 사항(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된 일반 공시, 기후 관련 공시 및 천연자원 관련 공시 포함)을 다음의 카테고리별로 분석 및 평가
  - 확산성(Prevalence), 결과(Consequences), 긴급성(Urgency), 실행가능성(Feasibility)
-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추진에 관한 IPSASB의 중요한 임무와 역할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시사점

- 해당 사항 없음

<b>참고</b>	<b>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b>
<b>안건 10</b>	<b>지속가능성(Sustainability)</b>
<b>안건 항목</b>	<b>내용</b>
10.2.1	<p><b>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향후 계획</b></p> <p><b>[목적]</b> 2023년에 수행된 지속가능성 보고의 연구 및 범위 설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잠재적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IPSASB의 업무 계획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p> <p><b>[배경]</b> <b>자문보고서-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월, 세계은행은 “주권 기후 및 자연 보고: 위험 및 기회 공시 프레임워크 제안”을 발표하며, IPSASB가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에 관한 글로벌 자문을 주도할 것을 촉구함. 2022년 5월, IPSASB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을 위한 자문보고서를 발표함</li> <li>○ 2022년 12월, 자문보고서 의견수렴 응답에서 확인된 강력한 지지에 기반하여 IPSASB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확정함. 공공부문에 특화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의 일환으로, IPSASB는 추가 연구 및 범위 설정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에 대한 지침</li> <li>(b)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지침(문단 4-5 참조)</li> <li>(c) 천연자원 - 비재무 공시(천연자원 재무 보고 프로젝트 개발과 병행)</li> </ul> </li> </ul> <p><b>연구 및 범위 설정-지속가능성 보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3월 이사회 회의에서, IPSASB는 자문보고서 의견수렴 응답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및 범위 설정을 논의하고, 잠재적인 초기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의 범위 설정은 다음 기준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자문보고서 의견수렴 응답 - 주제에 대한 공공의 전 세계적 관심과 자본 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강조</li> <li>(b)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 - 개념적 관점을 제공하고 IPSASB가 기준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개념들과의 연결 고리를 제공</li> <li>(c) ISSB 글로벌 기준 - IFRS와의 공통점, 주요 원칙들, 그리고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의 국제의 중요성 및 자본 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li> <li>(d) GRI 기준 - 조직의 경제, 환경,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향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제공</li> </ul> </li> <li>○ 연구와 적용범위 설정을 거쳐, 2023년 6월에 IPSASB는 공공부문에 특화된 기후 관련 공시 기준 개발 촉진을 결정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 초안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가 승인됨</li> </ul> <p><b>지속가능성 연구 및 범위 설정 프로젝트의 다음 우선순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는 2022년 12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에서의 역할을 확정하고, 세 가지 연구 및 범위 설정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삼기로 결정한 이후 유의적인 진전을 이루었음(상기 문단 3 참조). 지속가능성 분야에서의 최근 개발에 더하여, IPSASB는 IPSASB SRS ED 1 개발을 통해 귀중한 통찰을 얻음</li> </ul>

안건 항목	내용
<p>10.2.1</p>	<p>○ 따라서 이 시점에서 Staff는 초기 우선순위로 설정된 연구 및 범위 설정 프로젝트를 반영하면서, 최근의 개발 사항과 다른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인 기회를 고려할 것을 제안함. Staff는 IPSASB SRS 1의 최종 발표까지 많은 작업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이 논의의 목적은 IPSASB의 향후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IPSASB SRS X, 기후 관련 공시의 최종 발표 이후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프로젝트에 대한 향후 결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p> <p>○ IPSASB가 아직 연구 및 범위 설정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의 프로젝트(일반 공시 및 자연 관련)는 IPSASB Sustainability Reference Group(SRG)과 논의하여 우선순위 설정, 예상되는 어려움 및 프로젝트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을 구함</p> <p>○ SRG 회의에서 ISSB와 GRI의 외부 발표자는 각각 IFRS S1과 GRI 101: Biodiversity 2024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으며, ISSB는 현재 진행 중인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BEES) 연구 프로젝트의 현황에 대해서도 개요를 제공함(ISSB 프로젝트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건 항목 10.2.5의 문단 4-5 참조)</p> <p>○ SRG에서 나온 일부 의견과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문제의 중요성</li> <li>(b) 자연과 관련된 공공부문 역할의 중요성(자연과 관련된 보고의 복잡성과 자연과 관련된 보고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개발을 인지)</li> <li>(c) 향후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 유용성 및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사용자 피드백 및 방향성의 필요성</li> </ul> <p><b>[분석]</b></p> <p>○ IPSASB가 2023년에 적용한 연구 및 범위 설정 가정(상기 문단 4 참조)은 위원회가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중요한 기반과 참조사항을 제공함. 특히,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IPSASB가 향후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 관점을 제공함(안건 항목 10.2.2 분석 및 논의 참조)</p> <p>○ 또한, IPSASB Strategy and Work Program 2024-2028에 따라, Staff는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잠재적 프로젝트를 평가하였으며,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확산성: 해당 문제가 공공부문 기관들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지 여부</li> <li>(b) 결과: 해당 문제가 GPFS(일반목적 재무제표) 및 GPRF(일반목적 재무보고서)가 회계책임과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을 저해하는지 여부</li> <li>(c) 긴급성: 최근 해당 문제의 중요성 증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li> <li>(d) 실행 가능성: 해당 문제에 대해 기술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현재의 자원 제약 속에서 다른 프로젝트의 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li> </ul> <p>○ 다음의 안건 문서는 2022년 12월에 추가 연구 및 범위 설정을 위해 우선순위가 매겨진 세 가지 잠재적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RPG 1 및/또는 RPG 3를 기반으로 한 공시 지침 개발(안건 10.2.3 참조): Staff는 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며, IPSASB의 기존 비의무적 지침인 RPG 1 및 RPG 3를 기반으로 한 공공부문에서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및/또는 서비스 성과 보고에 대한 명확한 공시 지침의 시급한 필요성 해결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함</li> <li>(b)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안건 10.2.4 참조): IFRS S1 민간부문 지침을 참고하여, Staff는 IFRS S1이 공공부문의 광범위한 역할과 책임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보고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li> </ul>

안건 항목	내용
10.2.1	<p>위한 기반을 제공하므로, 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다고 제안함. 그러나 Staff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위험과 기회에 관한 보다 넓은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복잡성 및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적용범위 설정 시 신중한 고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p> <p>(c) 자연 관련 공시(안건 10.2.5 참조): 국제적인 자연 관련 프레임워크와 새로 도입되는 민간 부문 지침을 바탕으로, Staff는 자연이 확산되고 긴급한 문제임과 동시에, 자연의 보호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나, 합리적인 시간 내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의 어려움을 언급함. 민간부문 지침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문단 4 참조), 공공부문의 필요에 부합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복잡할 가능성이 높음. ISSB의 자연 관련 보고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다양한 지침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임. 이는 GPFR(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보고 및 통계적 보고 프레임워크 모두에 해당함</p> <p><b>[의사결정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항목이며, 의사결정 필요사항 없음</li> </ul>
10.2.2	<p><b>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 및 지속가능성 보고에서의 IPSASB의 역할</b></p> <p><b>[목적]</b></p> <p>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에서의 IPSASB의 소관과 역할을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의 연구 및 범위 설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p>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의 전략적 목적은 발생주의 IPSAS와 국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채택과 이행을 증가시켜 전 세계적으로 공공재무관리(PFM)와 지속가능성 개발을 강화하는 것임</li> <li>○ IPSASB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PSASB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GPFRs) 내에서 보고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함. 이는 IPSASB의 업무범위와 국제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IPSASB의 목적은 전 세계 공공부문 실체들이 GPFRs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회계 및 기타 출판물을 개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임”</li> <li>○ IPSASB는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GPFS(일반목적 재무제표)와 GPFR(일반목적 재무보고서) 모두에서 보고를 위한 공공부문 기준을 개발함. 다음 그림은 GPFRs 외의 더 넓은 보고 영역과 관련된 임무를 설명함:</li> </ul>  <p>The diagram illustrates the reporting framework. At the top, a green bracket labeled 'IPSASB CF - Materiality' spans across a dark blue box. Inside this box, '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is written at the top, with 'IPSAS' below it and a double-headed arrow. Below that,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s' is written, with 'IPSASB SRS' below it and a double-headed arrow. At the bottom of the dark blue box is 'RPG' with a double-headed arrow. Below the dark blue box is a grey box labeled 'Other Reporting'.</p>

안건 항목	내용
10.2.2	<p><b>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목적 및 이용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IPSASB CF) 문단 2.1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공공부문 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은 GPFRs 이용자에게 회계책임을 다하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기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li> <li>○ 문단 2.4에서는 GPFRs의 주요 이용자들이 '서비스 수혜자와 자원 제공자'인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이어서 문단 2.8에서는 공공부문 실체가 회계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와 기타 공공부문 실체는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자원을 사용하여 보고기간 동안 및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해 회계책임이 있음. 회계책임 의무를 이행하려면, 공공부문 실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자원의 관리와 그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운영을 규제하는 법률, 규정 또는 기타 권한을 준수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공공부문 실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세 수익 또는 기타 비교환 거래수익으로 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서비스 수혜자가 장기적으로 그 서비스 제공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b>회계책임 의무를 이행하려면 보고 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 성과와 향후 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b></li> <li>○ 문단 2.29-2.30에 명시된 바와 같이, IPSASB CF는 GPFSs보다 더 넓은 범위의 GPFRs로 확장되며, 재무제표는 여전히 재무 보고의 핵심에 위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 보고의 범위는 GPFRs에서 보고될 수 있는 거래, 기타 사건 및 활동의 경계를 설정함.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범위보다 더 포괄적인 재무 보고 범위를 반영하며, GPFRs 내에서 재무제표를 향상시키고 보완하며 추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li> <li>-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범위보다 더 포괄적인 재무 보고 범위를 반영하지만, 재무제표에 제시된 정보는 여전히 재무 보고의 핵심으로 제시됨</li> </ul> </li> <li>○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의 정보 요구 사항과 범위를 고려할 때, 주요 이용자는 GPFRs를 넘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위해 다른 출처의 정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음. 이는 IPSASB CF 문단 2.31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GPFRs는 정부나 기타 공공부문 실체의 회계책임 의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b>그러나 GPFRs가 회계책임 및 의사결정 목적을 위해 이용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음.</b> 정부와 독립 기관은 기존 서비스 제공 이니셔티브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중기 및 장기적으로 경제적 조건과 지역 사회의 인구 변화가 예산과 서비스 제공 요구에 미칠 영향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함. 따라서 주요 이용자는 GPFRs에 보고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 정부 예산 및 전망치, 현재 및 예상되는 경제적 조건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한 다른 출처의 정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li> </ul> <p><b>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PFR와 IPSASB CF는 재무제표가 포함하는 범위보다 더 포괄적인 재무보고의 범위를 반영하지만,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정보는 여전히 재무보고의 핵심에 해당함(IPSASB CF 문단 2.30). IPSASB CF의 문단 2.14-2.28까지는 GPFR이 제공하는 정보 유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li> <li>(b) 재무 결과와 현금 흐름이 승인된 예산에 부합하고 자원의 조달 및 사용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 또는 기타 권한을 준수하는 정도에 대한 정보</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10.2.2	<p>(c) 서비스 제공 활동, 성과 및/또는 결과에 대한 재무 및 비재무 정보                      (d) 예상되는 미래 서비스 제공 활동과 목표, 그것들이 미래의 자원 요구사항 및 자금 조달 원천에 미칠 영향과 같은 예상 재무 및 비재무 정보                      (e) 재무제표를 보강하고, 보완하며, 설명하는 기타 설명 정보로, 보고 기간 동안의 재무 및 서비스 제공 성과를 뒷받침하는 기초적인 요소와 가정 또는 미래 전망치에 관한 정보</p> <p>○ 따라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에서의 IPSASB의 소관과 역할은 전반적 보고 체계에서 중요함. 이유는 다음과 같음:                      (a) 향후 지속 가능성 관련 프로젝트의 분석 및 적용범위 설정 지침을 제시함. 예를 들어,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가 GPFR에 포함되어 재무제표를 보강하고, 보완하는 정도 등                      (b)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에서 IPSASB SRS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기준이 권장실무지침 (RPGs)과 같은 기존의 IPSAS 발표들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설명함</p> <p><b>[의사결정 필요]</b>                      ○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항목이며, 의사결정 필요사항 없음</p>
10.2.3	<p><b>권장실무지침(RPG) 1 및/또는 3에 기반한 공식 지침의 개발</b></p> <p><b>[목적]</b>                      기존의 IPSASB 지속가능성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와 적용범위 설정을 위한 분석과 고려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IPSASB의 지속가능성 작업 프로그램 내에서 향후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이사회 논의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p> <p><b>[배경]</b>                      ○ 2013년, IPSASB는 RPG 1: 실체의 재정 장기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정부 프로그램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고 공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이후 2015년, IPSASB는 RPG 3: 서비스 성과 정보 보고를 발표하였고, 이는 이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둔 원칙 기반 접근법을 도입하여 서비스 성과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을 제시함</p> <p>○ RPG 1과 RPG 3가 개발될 당시, IPSASB는 실체들이 RPG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하되, 재무제표가 IPSAS를 준수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RPG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함. 이는 당시 다음의 요소 등을 고려한 실무적인 결정이었음:                      (a) RPG 지침이 IPSAS 기준의 일부로서 공식 지침으로 결정될 경우, IPSAS 준수 재무제표의 감사 가능성                      (b)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실무가 아직 발전 중이었으며, IPSASB는 경직된 기준을 도입하기보다는 혁신과 유연성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                      (c) 서비스 성과 보고 또한 공식 지침을 지원할 만큼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음</p> <p>○ RPG 지침이 처음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개발과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IPSASB의 지속가능성 작업 프로그램 내에서 향후 잠재적인 프로젝트로서 연구 및 범위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개발에는 다음이 포함됨:                      (a)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IPSASB CF)의 승인                      2014년 10월, IPSASB는 IPSASB CF를 승인했으며, 이는 IPSAS 기준, IPSASB SRS 기준 및 RPG 지침 개발의 기초가 되는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수행함. 이 프레임워크는 기준 설정의 일관성을 크게 개선하고 공공부문 재무보고 체계를 재편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b) RPG 1과 RPG 3에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추가 비공식 지침 발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IPSASB는 RPG 1과 RPG 3가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정보 보고에 적용 가능한지를 고려함. 그 결과, 2023년 IPSASB는</p>

안건 항목	내용
10.2.3	<p>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정보 보고-RPG 1과 RPG 3에 대한 수정 사항: 추가 비공식 지침을 발표하여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정보 보고를 촉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함</p> <p>(c) IPSASB SRS를 별도의 기준 세트로 만들기로 결정: 2023년 6월, 이사회는 IPSASB SRS를 공식 기준으로 발행하되, 현재 IPSAS 기준 세트와 별도로 해야 한다고 결정함. 별도의 기준 세트를 개발함으로써 RPG 1과/또는 RPG 3를 IPSAS 기준과는 별도로 공식 지침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p> <p>(d)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ISSA) 5000, 지속가능성 인증 계약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발표: 2024년 11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지속가능성 인증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종합 국제 기준인 ISSA 5000을 승인함. 이 기준은 IAASB의 기존 기준, 특히 IAASB의 국제인증계약기준 3000(개정판)을 기반으로 하며, 조직이 보고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정보(기후 관련 위험, 배출 데이터, 사회적 및 거버넌스 지표 등)를 다루도록 설계됨</p> <p>○ 이러한 최근 개발들은 RPG 지침의 초기 개발 이후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며,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및 서비스 성과 보고에 대한 공식 지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보고 체계의 적합성을 시사함</p> <p>○ 또한, RPG 지침이 실체의 서비스 성과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IPSASB의 역할(Agenda 10.2.2 참조)과 일치하며, 일반목적 재무보고서(GPFRs) 내에서 보고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하는 IPSASB의 목표와 부합함</p> <p><b>[분석]</b> <i>확산성</i></p> <p>○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제공은 모든 공공부문 실체에 적용되며,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기후 변화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실체에 대한 다양한 성과 지표 공개와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p> <p><i>결과</i></p> <p>○ RPG 1과 RPG 3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하는 데 있어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만, 공식 요구 사항이 없으면 많은 실체들이 효과적인 보고를 위한 긴급성이 결여되어 RPG 1과 RPG 3의 채택과 실행이 제한적임</p> <p>○ 공식 지침은 다음을 통해 상기 격차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임: 공공부문 실체들이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계책임과 의사 결정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성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p> <p>○ IPSASB CF도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단 2.8에서는 “회계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고 기간 동안 기관의 서비스 제공 성과와 향후 기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p> <p><i>긴급성</i></p> <p>○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해결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투자하기 위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해당 투자는 자원과 자금을 요구하며, 자본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포함함</p> <p>○ 서비스 성과와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는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쟁하는 우선순위와 자원 제한에 따른 상충을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 또한, 이는 공공부문</p>

안건 항목	내용
10.2.3	<p>실체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여 공공실체가 자본 시장을 통해 중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p> <p><b>실행가능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자원 제약을 고려하여 개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기존 IPSASB 문헌: RPG 1과 RPG 3는 이러한 잠재적 기준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임. RPG 1과 RPG 3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경우, Staff는 IPSASB가 두 개의 별도 기준 설정 프로젝트를 통해 RPG 1과 RPG 3에 대한 공식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함. 이는 우선순위와 자원에 따라 IPSASB 지속가능성 작업 프로그램에 함께 추가되거나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li> <li>(b) IPSASB CF 개발: RPG 지침 개발 이후 IPSASB CF의 승인은 GPFRs 보고를 위한 표준 개발 시 따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RPG 지침을 공식 기준으로 개발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음</li> <li>(c) 변화하는 맥락과 국제적 성과: RPG 1과 RPG 3 발표 이후 상당한 국제적 성과가 이루어졌음. 일부 관할권에서는 실체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성과에 대한 보고가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발전하였으며, 일부는 RPG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함.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2017년에 PBE FRS 48, 서비스 성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RPG 3에서 제시된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공식 기준이 실행 가능함을 보여주었음. 따라서 RPG 지침을 바탕으로 공식 기준을 개발할 경우, IPSASB는 관할권별 보고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음</li> </ul> </li> </ul> <p><b>[의사결정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항목이며, 의사결정 필요사항 없음</li> </ul>
10.2.4	<p><b>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사항</b></p> <p><b>[목적]</b></p> <p>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에 관한 잠재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및 범위 설정에 대한 분석과 고려 사항을 제공하는 것임. 이를 통해 IPSASB의 지속가능성 작업 프로그램 내에서 향후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이사회 논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p>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동함에 따라,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보고서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더 나은 투명성, 회계책임 이행 및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음</li> <li>○ CP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필요성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식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2030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젠다의 목표가 점점 더 임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증가</li> <li>(b)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재무 흐름을 글로벌 지속가능성 목표와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전시키는 것은 공공부문이 자본 시장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필요한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요한 재정적 원천이 될 가능성이 큼</li> <li>(c) 공공부문 기관의 차별화된 역할과 책임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부문 특화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부재</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는 IPSASB가 ISSB 기준을 토대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첫 번째 주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으며, 이 제안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음</li> <li>○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이사회는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를 연구 및 범위 설정의 우선 사항 중 하나로 포함하기로 결정함. 이 결정은 연구 및 범위 설정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며, 적용범위 설정 가정 프레임워크(Agenda 10.2.1 문단 4)를 고려하고, CP 응답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며,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적절한 경우 관련 민간 부문 지침을 참고하여 진행될 것임</li> </ul> <p><b>[분석]</b></p> <p><b>확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성은 공공부문 활동의 모든 측면에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는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더 넓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기인함. 따라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는 공공부문 활동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서 정책 설계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를 포괄함</li> </ul> <p><b>결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은 공공부문 실체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계책임 이행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은 충분히 공시되고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통합되어, 공공부문이 지속가능성의 모든 영역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주요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li> </ul> <p><b>긴급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성은 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연관되지만,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필러인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은 2012년 UN 문서인 <i>The Future We Want</i>에서 설명되었으며, 이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기초를 형성함.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의존적이며, 공공부문 운영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가치 창출에 필수적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li> <li>○ CP에 대한 응답과 IPSASB의 2024-2028 전략 및 작업 프로그램(2024년 6월 Agenda 11.2.5), 그리고 SRG 회원들은 정부가 긴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 공시의 필요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함</li> <li>○ 특정 기준이 없는 경우,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기준은 다른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음</li> </ul> <p><b>실행가능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S2를 바탕으로 IPSASB SRS ED 1을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이사회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의 실행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기존 민간부문 지침: CP 응답을 바탕으로 IPSASB는 IFRS S1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을 공공부문 특화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표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결정함. IFRS S1은 공공부문에 맞춰져 있지 않으며, 공공부문의 고유한 정책 및 규제 역할을 다루지 않지만, 기존 지침은 공공부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10.2.4	<p>(b) IPSASB SRS ED 1 접근법: IFRS S1의 일부를 통합한 IPSASB SRS ED 1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 의견 수렴을 감안할 때, 이사회는 민간부문 재무 보고 지침을 공공부문에 적용시키는 이사회 합의된 접근법이 지속가능성 보고에도 유효한지, 그리고 일반 기준의 필요성이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p> <p>(c) 적용범위 설정의 어려움: 공공부문의 핵심 기능과 사회, 경제 및 환경과 관련된 더 넓은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그 복잡한 주제의 복잡성, 범위, 그리고 다른 기준 지침 세트와의 상호 운용성 문제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p> <p>(d) 실행가능성: 많은 관할권이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많은 공공부문 실체들이 동시에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을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p> <p>(e) IPSASB의 소관: IPSASB의 소관에는 GPFSs와 GPFRs에서 공공부문 보고를 위한 기준 개발이 포함됨(Agenda 10.2.2 참조). 그러나 IPSASB는 더 넓은 보고 체계와 이미 제공된 지침을 고려하여 소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 후, GPFRs 내에 포함되어야 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범위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GPFSs를 향상시키고 보완하며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p> <p><b>[의사결정 필요]</b>                      ○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항목이며, 의사결정 필요사항 없음</p>
10.2.5	<p><b>자연 관련 공시</b></p> <p><b>[목적]</b>                      자연과 관련된 비재무적 공시를 위한 잠재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와 적용범위 설정을 위한 분석 및 고려 사항을 제공하는 것임. 이를 통해 IPSASB의 지속가능성 작업 프로그램 내에서 향후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이사회 논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p> <p><b>[배경]</b>                      ○ 2022년 12월, IPSASB는 천연자원 비재무적 공시를 천연자원 재무 보고 프로젝트 개발과 병행하여 연구 및 범위 설정을 위한 우선 프로젝트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2024년 10월에 공개된 IPSASB ED 92, 유형의 천연자원은 공공부문에서의 유형 천연자원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새로운 재무 보고 지침을 제안함. 이 표준의 시행을 통해 제공되는 공시는 이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p> <p>○ 기후 관련 보고에 이어, 자연은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에서 주요한 초점 중 하나가 되었음. 자연과 관련된 공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와 기준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되었음:</p> <p>(a) UN 환경경제통합회계(SEEA) 2012 중앙 프레임워크: 경제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국제적인 통계 기준</p> <p>(b) 천연자본 프로토콜: 2021년 1월에 발표된 이 프레임워크는 조직들이 천연자본에 대한 영향과 의존도를 파악, 측정 및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p> <p>(c)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2022년 12월에 채택된 이 프레임워크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수준의 국제적인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196개국이 참여하였음</p> <p>(d) 자연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NFD) 권고안: 2023년 9월에 발표된 이 프레임워크는 실체들이 자연과 관련된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해 GBF와 일치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500여 개 조직이 자발적인 참여를 약속함</p>

안건 항목	내용
10.2.5	<p>(e) GRI 101: 생물다양성 202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주제 기준으로, 'GRI 304: 생물다양성 2016'을 기반으로 TNFD 및 자연 관련 보고의 다른 개발 사항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되었음. 2024년 1월에 발표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p> <p>○ 또한 ISSB는 2024년 4월에 시작된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BEES)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ISSB Staff가 SRG에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BEES 프로젝트는 현재 1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투자자의 요구와 기존 프레임워크에 중점을 두고 기초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 단계의 목표는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있음. 2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영향을 분석하고, IFRS S1이 이용자들의 공통된 정보 요구를 충족하는지 평가할 예정임</p> <p>○ 2단계가 완료되면, ISSB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한 경우 어떤 분야에 집중할지 결정할 것임. 이는 기준 설정을 시작하고, 의견수렴 문서를 개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음. 이러한 단계들의 일정은 연구 결과와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결정될 것임</p> <p><b>[분석]</b>  <b>확산성</b></p> <p>○ 세계경제포럼(WEF) 「2023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는 향후 10년 동안 가장 심각한 5개의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예상됨. 이 보고서는 또한 기후 변화 완화, 식량 불안정성, 생물다양성 파괴의 상호연결성을 설명함</p> <p>○ 자연과 관련된 공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모멘텀을 얻고 있음. 공공부문 실체들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많은 정부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개적인 약속을 하고 있음. SRG 회원들은 공공부문이 자연 관련 문제, 특히 생물다양성 손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성공 요소임을 강조함.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생물다양성 지표에 대한 주요 데이터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함</p> <p><b>결과</b></p> <p>○ 공공부문은 자연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연 관련 공시는 자연 정보의 가용성을 높여 투명성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주요 이용자들이 자연 관련 주제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p> <p><b>긴급성</b></p> <p>○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 자연은 공공부문 실체에 중요한 자산이며, 기준 설정자는 이러한 국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함. 자연 관련 공시를 현재 시점에서 다루지 않으면, 글로벌 지속가능성 노력과 일치시킬 기회를 놓치고, 자연 파괴로 인한 리스크가 공공부문 기관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p> <p>○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공부문을 위한 국제적인 자연 관련 공시기준은 존재하지 않음</p> <p><b>실행가능성</b></p> <p>○ Staff는 이사회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의 실행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함:</p> <p>(a) 기존 민간 부문 지침: IUCN, WWF, The Nature Conservancy와 같은 조직들이 이미 상당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관련 민간부문 지침은 최근에 개발되었으며(예: TNFD 프레임워크와</p>

안건 항목	내용
10.2.5	<p>GRI 표준은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발표됨) 아직 발전 중임(예: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BEES)에 관한 ISSB의 연구 프로젝트). 이는 민간부문 자연 관련 공시의 요구사항과 체계가 더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p> <p>(b) IPSASB와의 연결: 현재 진행 중인 IPSASB ED 92, 유형의 천연자원 공개 의견수렴과 이 주제에서 예상되는 관련성을 고려할 때, IPSASB는 자연 관련 공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분야에서 얻은 응답과 통찰력, 그리고 연결된 정보의 범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p> <p>(c) 적용범위 설정의 어려움: 자연의 범위는 넓고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자연, 사회, 경제 간에 여러 가지 상호 연결된 요소가 있음. IPSASB는 공공부문 주요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는 자연 관련 공시 표준의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고, UN SEEA 및 기타 통계 보고와의 상호 운용성도 고려해야 함. 기존의 프레임워크들(문단 3 참조)은 일반적으로 '자연 관련',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천연자본' 등의 넓은 용어를 바탕으로 범위와 요구사항을 설정하며, 각 용어는 고유한 중점을 가짐. 이러한 용어들은 부록 A: 자연 관련 정의에서 추가로 설명됨</p> <p>(d) 실행가능성: 최근 ISSB BEES 프로젝트의 업데이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할권들은 이미 의무적이고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BEES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갖추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의무적 공시 항목은 물, 폐기물, 생물다양성임. 그러나 관할 구역 내에서 자연 관련 공시의 의무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SRG 회원들은 IPSASB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유럽에서 ESRS 생물다양성 기준을 구현하는 데 매우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요구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예시로 들었음</p> <p><b>[의사결정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항목이며, 의사결정 필요사항 없음</li> </ul>
10.2.6	<p><b>지속가능성 보고 – Breakout 세션 토론</b></p> <p><b>[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문서는 IPSASB members 및 technical advisors가 12월 회의 중 Breakout 그룹 세션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배경과 질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li>○ Breakout 그룹 세션 토론은 IPSASB members 및 technical advisors가 IPSASB의 프로젝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가 주요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할 때 공공 이익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이 프로젝트들이 이사회 자원의 제한에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실행 가능하지에 대한 예비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ul> <p><b>[Breakout 그룹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12월 회의에서 IPSASB, Technical Advisors, 그리고 Observers는 IPSASB의 지속가능성 작업 프로그램 내 미래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Breakout 그룹으로 배정됨. Breakout 그룹에서 도출된 주요 인사이트는 회의에서 IPSASB에 보고되며, 이 정보는 Staff가 연구 및 범위 설정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고려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li> <li>○ 각 Breakout 그룹은 세 가지 주제를 모두 논의하고, 할당된 주제에 대해 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RPG 1 및/또는 RPG 3에 대한 공식 지침 개발(Agenda 10.2.3)</li> <li>(b)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Agenda 10.2.4)</li> <li>(c) 자연 관련 공시(Agenda 10.2.5)</li> </ul> </li> </ul> <p><b>[질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Breakout 그룹은 세 가지 주제를 모두 논의함. 논의는 유동적이겠지만, 회의에서 IPSASB에 보고될 주요 피드백은 IPSASB의 프로젝트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다음 질문들에 중점을 두어야 함:</li> </ul>

안건 항목	내용
10.2.6	<p><i>일반 프로젝트 우선순위 설정</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IPSASB의 프로젝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세 가지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다음 기준에 따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확산성</b>: 해당 이슈가 전 세계 공공부문 실체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지 여부</li> <li>☞ <b>결과</b>: 해당 이슈가 GPFS와 GPFR이 회계책임 이행 및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여부</li> <li>☞ <b>긴급성</b>: 해당 이슈가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li> <li>☞ <b>실행 가능성</b>: 기술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다른 프로젝트의 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및 현재 자원 제약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li> </ul> </li> <li>- 각 주제를 진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주요 이점은 무엇인가?</li> <li>- 각 주제를 진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주요 도전 어려움은 무엇인가?</li> <li>- 다음 IPSASB SRS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결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추가 연구는 무엇인가?</li> </ul> <p>○ 또한, Breakout 그룹은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별 질문들을 고려할 수 있음:</p> <p><i>RPG 1 및 RPG 3에 대한 공식 지침 개발(Agenda 10.2.3)</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가 RPG 1과 RPG 3를 비공식 지침으로 결정한 원래의 결정 요인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특히 공공부문에서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및 서비스 성과 정보 보고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여러분의 경험과 관찰에 비추어 어떻게 생각하는가?</li> <li>- RPG 1과 RPG 3를 IPSASB SRS 기준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나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예: 목표, 적용범위,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li> </ul> <p><i>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Agenda 10.2.4)</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가 민간부문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li> <li>-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고 표준화된 접근 방식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가?</li> <li>- IPSASB가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다른 잠재적인 프로젝트들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가?</li> </ul> <p><i>자연 관련 공시(Agenda 항목 10.2.5)</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 관련 이슈와 정의의 폭넓음 및 다양성을 고려할때, 공공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 관련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예: 생물 다양성, 생태계, 생태계 서비스, 토지, 물, 폐기물 등).</li> <li>- 기존 IPSASB 자원과 국제적 프레임워크의 현황을 고려할 때, IPSASB가 이 주제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실행 가능한가?</li> </ul>
10.3.1	<p><b>부록 A: 자연 관련 정의</b></p> <p>○ 자연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존의 프레임워크와 기준들은 자연 관련 보고에 대해 다양한 적용범위를 갖고 있으며, '자연 관련',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천연자본'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각 용어는 고유한 초점과 뉘앙스 차이를 가지고 있음</p> <p>○ 예를 들어, TNFD 용어집에서 제공된 다음의 정의들은 잠재적인 자연 관련 프로젝트의 연구 및 적용범위 설정 시 고려해야 할 복잡성과 뉘앙스를 보여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자연은 자연 세계를 의미하며, 살아 있는 유기체들(사람을 포함)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둠</li> <li>(b) 천연자본은 식물, 동물, 공기, 물, 토양, 광물 등과 같은 재생 가능 및 재생 불가능 천연자원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li> </ol>

안건 항목	내용
10.3.1	<p>(c) 환경 자산은 지구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 및 비생물적 요소로, 생물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며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함</p> <p>(d) 생물 다양성은 육상, 해양 및 기타 수생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출처에서 살아 있는 유기체들의 변동성을 의미하며, 이는 종 내, 종 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함</p> <p>(e) 생태계는 식물, 동물, 미생물 공동체와 비생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단위를 의미함</p> <p>(f) 생태계 서비스는 경제적 및 기타 인간 활동에 혜택을 주는 생태계의 기여를 의미함</p> <p>○ 또한, TNFD 권장 사항에서 제공된 다음의 다이어그램은 용어 간 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사회 및 경제와의 상호작용을 보여줌</p> <div data-bbox="345 683 1228 1423"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b>Agenda Item 10.3.1</b> Page 1</p>





## 4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 배경 및 목적

- (배경) 천연자원의 회계처리에 대한 개정 소요 발생
  - 기존의 IPSAS 기준서, 자문보고서(CP), 개념체계 등에서 유형자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인식 기준을 개정함
  - 천연자원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별도의 IPSAS 기준서로 마련할 것이며, 중복되는 기존 IPSAS 기준의 회계처리 요건을 같이 검토함
- (목적) 천연자원의 잠재적인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함

### ■ 주요 논의사항

- 천연자원에 관한 ED 초안의 적용범위를 수정하고, 천연자원의 측정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제시할지 그 방법에 대해 검토
- 천연자원의 후속 측정 모형을 비교 및 분석

### ■ 진행 경과(2024년 말 기준)

- 프로젝트 개요(2020. 3.) 및 자문보고서(2022. 3.)의 승인 이후, 공개초안을 개발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 중임

Project Brief (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 (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 (공개초안)	IPSAS (기준서 발표)
--------------------------	-------------------------------	--------------------------	-------------------

## ■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보고서

### 1 2024년 3월 정례회의

- (발표자) Edwin Ng
- (목적) 천연자원의 잠재적인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함
- 진행 경과
  - (2020년 3월) 프로젝트 개요(PB) 승인 및 자문보고서(CP) 개발 착수
  - (2022년 3월) CP 승인
  - (2022년 12월) CP 의견 조회
  - (2023년 3월) CP에 대한 의견 검토
  - (2023년 6월) 천연자원의 재무 보고에 관한 공개초안(ED) 개발
  - (2023년 9월) 이슈 논의
    - 천연자원의 재무 보고에 관한 ED의 개발
    - IFRS 6 및 IFRIC 20에 관한 ED의 개발 및 승인(2023년 12월까지)
  - (2024년 3월) 이슈 논의
    - 천연자원의 재무 보고에 관한 ED의 개발
  - (2024년 6월) 천연자원의 재무 보고에 관한 ED 승인
- 정례회의 논의사항
  - 천연자원에 관한 ED 초안의 범위 수정
    - (배경) 천연자원 중 일부는 기존 IPSAS 기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천연자원에 관한 ED 초안에서 언급함. 다만 이에 해당하는 천연자원을 ED 초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복되는 기존 IPSAS 기준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요건을 상호 참조하였음

- (분석) 일부 천연자원 자산은 다음의 IPSAS 기준 범위에 해당하는 목적 등으로 보유될 수 있으며, ED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 (a) IPSAS 45: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공급,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의 정의를 충족함
  - (b) IPSAS 12: 생산 과정이나 용역 제공 과정에서 소비되는 원재료 또는 소모품으로 구성되거나, 일반적인 운영 과정에서 공급을 위해 보유되거나,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한 생산 과정에 있는 경우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함
  - (c) IPSAS 16: 임대수익을 얻기 위함이거나, 평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함이거나 혹은 임대 수익과 평가이익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투자자산(부동산)에 해당함
  - (d) IPSAS 27: 판매, 공급 또는 농산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생물학적 전환이 관리되는 경우 생물자산(biological asset)으로 간주함
  - (e) 기타: 천연자원 관련 채무(IPSAS 19), 매각 목적 보유 자산(IPSAS 44), 조사 및 평가 자산(ED 86, 광물 자원의 탐사 및 평가)
- 이와 같이 기존의 IPSAS 기준과 중복되는 항목은 천연자원 ED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ED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존 IPSAS 기준의 적용범위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다른 IPSAS 기준과 상호 참조하지 않고 중복을 피할 수 있음

○ 보전(Conservation)의 정의

- (권고사항) 천연자원 태스크포스(Task Force, 이하 TF)는 보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천연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행위
- (배경) 2023년 12월, IPSASB는 공익을 고려하여 천연자원 회계 지침을 별도의 IPSAS 기준서에 포함하기로 함.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Staff는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한 천연자원은 IPSAS 45, '유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IPSASB는 “보전(conservation)”에 대한 정의 또는 설명의 개발을 지시함
- (분석) TF는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천연자원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보전에 대한 설명보다는 정의를 개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타 국제기구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보전”의 정의 및 영어 표현상의 정의 또한 같이 제시함
- 제시된 모든 정의는 다음을 포함함

- (a)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부터 자연 또는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행위
  - (b) 효율적이거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천연자원의 사용을 관리하는 행위
  - TF는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한 천연자원을 다른 천연자원(예: 재화나 용역의 생산·공급, 임대,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IPSAS 45 적용범위에 속한 천연자원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정의를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degradation)으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함
- ED에서 측정 지침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 (권고사항) ED에 제시되는 측정 지침과 관련하여 TF는 다음과 같이 권고함
    - (a) ED의 강제적 문헌에서는 ‘IPSAS 46, 측정’에 규정된 원칙 수준의 지침만 참조하도록 함
    - (b) 적용 지침에서는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천연자원의 현재가치는 현행운영가치(Current Operational Value)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명시함
    - (c)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에는 실제 사례에 기반한 사실관계를 활용한 예시를 포함하여 천연자원의 현행운영가치를 측정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잠재적인 접근법을 설명할 것임
  - (분석) TF는 ED의 본문이 ‘IPSAS 46, 측정’의 원칙 수준의 지침을 참조하는 것에 동의하며, IPSAS 46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 최초 측정에 관한 지침: 천연자원이 교환거래의 결과로, 자산으로 인식되면 거래 가격을 사용하고, 비교환거래로 인하여 인식된 때에는 추정원가(현재가치)를 사용함
    - (b) 현재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관한 지침
    - (c) 후속 측정에 관한 지침
  -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천연자원은 재정적 역량이 아닌 운영적 역량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해당 천연자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재평가의 요인이 되며 분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TF는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천연자원은 현행운영가치로 측정해야 함을 적용지침에 명시할 것을 제안함
  - 실무적용지침과 예시사례가 측정의 관점에서 유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천연자원이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관계를 포함하여야 함. TF 위원들은 각자의 관할 구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관련 사례를 개발할 예정임

○ 후속 측정 지침의 개정

- (권고사항) TF는 천연자원에 관한 ED에서의 천연자원 자산은 'IPSAS 45, 유형자산'과 같은 측정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함
- (배경) 2023년 12월 회의에서 TF는 천연자원 자산의 후속 측정은 현재가치를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IPSASB는 역사적원가 모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천연자원의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공공부문 실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토지, 건물, 설비와 같은 유형 자산의 후속 측정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들어 재검토를 지시함
- (분석) TF와 Staff는 여러 IPSAS 기준상의 후속 측정 모형을 검토하였으며, 천연자원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a) IPSAS 45 - 유형자산(PP&E) 모형: 역사적원가 모형 및 현재가치 모형
  - (b) 가치 변동을 자본에 인식하는 현재가치 모형: 일부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식과 유사함(IPSAS 41, 금융상품)
  - (c) 가치 변동을 당기손익(surplus or deficit)에 인식하는 현재가치 모형: 생물 자산의 후속 측정(IPSAS 27, 농업) 및 일부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IPSAS 41, 금융상품)과 일치함
- 상기 세 가지 유형 모두 IPSAS에서 도출된 것이며 공공부문 실체의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포함된 일반적인 측정 원칙과 대체로 일치하며, TF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 다음의 분석을 수행함
  - (a) 후속 측정에 따른 회계 이슈(제거 등)의 다양한 측면을 비교 검토
  - (b) 각 유형에 따라 생성되는 정보의 질적 특성과 제약 사항 - 어떤 유형이 가장 관련성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적시성 있는 정보를 생성하는지
- 세 가지 후속 측정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TF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a) 현재가치는 일반적으로 역사적원가와 비교하여 더 적절성 있고, 적시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실질을 보다 충실하게 표현하는 정보를 제공하나,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천연자원(가치 변동이 크지 않고, 그 효익을 예측 가능한 자원)의 경우 역사적원가와 현재가치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가치 변동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취득 또는 손상은 역사적원가 모형에도 반영됨
  - (b) 유형자산 모형으로 생성되는 정보는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더 우수할 것으로 보이며, 유

형자산 모형에서 제공하는 역사적원가 모형은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됨. 또한 유형자산 모형은 공공부문 실체의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역사적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측정 방법 선택의 유연성은 다른 두 선택지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기적인 재평가를 요하므로 더 큰 비용이 소요됨

〈후속 측정 모형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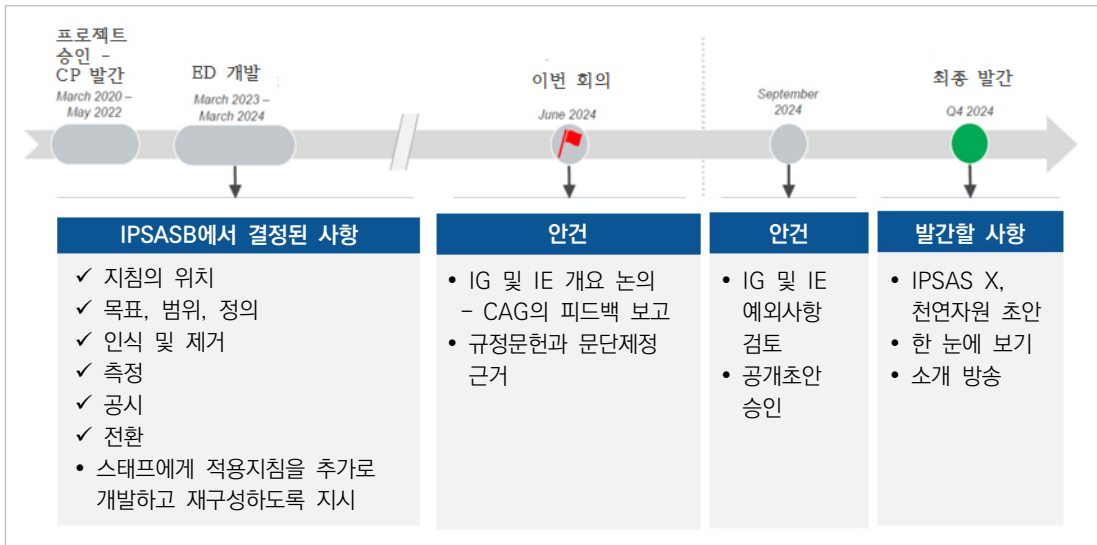
구분	IPSAS 45, 유형자산 모형		현재가치-자본	현재가치-당기손익
	역사적원가	현재가치		
적절성·적시성 및 표현 충실성	△	○	○	○
이해가능성	○	△	△	△
비용 - 편익	재평가 불필요	정기적 재평가로 더 큰 비용 소요		
유연성	실체의 여건에 따라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후속 측정 방법 선택 불가	

- 세 가지 유형을 분석한 결과, TF는 IPSAS 45의 유형자산 모형이 정보의 질적 특성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천연자원의 후속 측정은 IPSAS 45와 동일한 후속 측정 모형을 사용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함

**2 2024년 6월 정례회의**

- (발표자) Edwin Ng
- (목적) 천연자원의 잠재적 인식 및 측정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것
- 진행 경과

〈천연자원 프로젝트 진행과정〉



- 2020년 3월에 프로젝트 개요가 승인된 이후, 2022년 3월에 자문보고서가 승인되어 2022년 5월 9일에 발간됨
- 2022년 12월에 자문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 여러 이슈에 대한 논의와 천연자원 재무보고에 대한 공개초안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례회의 논의사항
  - 2024년 9월 천연자원 공개초안의 승인까지 진행될 프로젝트 계획 논의
  -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주요 원칙의 방향과 이러한 방향의 실행에 관한 지침
    -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에 대한 자세한 개요
    - 천연자원 공개초안의 결론을 위한 강제적 문헌 및 문단제정근거에 대한 수정

안건 9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9.2.2	<b>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에 대한 개요</b>
	<p><b>[질문]</b>                      실무적용지침(IG)과 예시사례(IE)의 개요에 동의하고 제안된 비강제문단이 천연자원 공개초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까?</p>
	<p><b>[권장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원 TF는 부록 A에 제시된 세부 개요를 기반으로 천연자원 공개초안에 IG 및 IE 초안을 작성할 것을 권장함</li> <li>○ 또한 Staff는 인식되지 않은 토지 공시에 대한 예시의 위치를 IPSAS 45, 유형자산 내에서 정할 것을 권장함</li> </ul>
	<p><b>[분석]</b>  <i>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까지 수행된 작업을 IPSASB에 업데이트하기 위해 Staff는 부록 A에 IG 및 IE의 개정된 표를 추가함. 이 표는 2024년 3월 회의에서 제시된 버전을 기반으로 하며 IPSASB에 다음과 같은 추가 세부 정보를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예비 실무적용지침 질문 및 계획된 답변의 핵심 사항</li> <li>(b) 각 예시에서 설명될 예비 결론 또는 핵심 원칙</li> </ul> </li> <li>○ 2024년 3월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G3 및 IG4는 이전에 제안된 하층토 자원, 물 및 생활자원 인식에 대한 적용 지침을 기반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는 목적이 변경되어 실무적용지침으로 재배치됨</li> <li>(b) “재야생화(Rewilding)”에 대한 실무적용지침을 통합하기 위해 IG8을 추가함</li> <li>(c) 다른 IPSAS의 범위에 속하는 천연자원에 대한 정보 공시 문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IG12를 추가함</li> </ul> </li> </ul> <p><i>특정 실무적용지침 또는 예시사례의 위치</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실무적용지침과 예시사례는 다른 IPSAS 범위 내에 있는 항목을 다루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b>예시 IE1과 IE2</b>는 IPSAS 45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천연자원과 그에 따른 지출을 다루고 있음. Staff는 이러한 IE의 목적이 일부 천연자원은 ED XX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참조를 표시하도록 함. 따라서 IPSAS 45에 이미 IPSAS 45를 적용하고 있는 구성요소는 해당 기준에서 이러한 예의 중복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li> <li>(b) 실무적용지침 IG4는 추출되지 않은 하층토 자원이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음. Staff는 추출된 하층토 자원이 재고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실무적용지침을 IPSAS 12(재고자산)로 재배치하거나 복제할지를 고려함. 그러나 IG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출되지 않은 하층토 자원은 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없음. 더욱이, 기초 자원과 분리된 이러한 하층토 자원의 추출은 자산 인식 및 IPSAS 12 적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 따라서 Staff는 이 IG를 재고자산 기준에 재배치하거나 복제하지 않을 것을 권장함</li> <li>(c) 예시 IE3는 비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의 현재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을 다루고 있음. 이 예는 천연자원에 관한 구성원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Staff는 공공부문 실체에 의해 관리되는 토지가 일반적으로 IPSAS 45의 범위 내에 있거나 특정 시나리오에서 IPSAS 16 투자부동산에서는 덜 일반적이라는 점에 주목함(예: 토지는 IPSAS 16의 문단 12(b)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한 사용을 위해 보유함). 그러므로 Staff는 이 사례를 IPSAS 45로 이전하고, 토지가 투자부동산으로 보유된다면 IPSAS 16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주석을 추가할 것을 권장함</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9.2.2	<p>(d) 실행 지침 IG11은 손상을 다루지만 IPSAS 21(현금비창출자산의 손상)과 IPSAS 26(현금창출자산의 손상)에 대한 길잡이만 다루고 있음. IE1과 IE2의 예와 유사하게, 이미 IPSAS 21이나 IPSAS 26를 적용하고 있는 구성요소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길잡이를 요구하지 않음. 따라서 이 지침을 재배치하거나 복제할 필요는 없음</p> <p>○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Staff는 IG4, IG11, IE1 및 IE2를 ED XX, 천연자원에 배치하고 IE3를 IPSAS 45에 재배치할 것을 권장함</p>
9.2.3	<p><b>[초안] IPSAS [X] (ED XX), 천연자원에 대한 주요 개정</b></p> <p><b>[질문]</b></p> <p>○ IPSASB는 [초안] IPSAS [X] (ED XX), 천연자원에 대한 개정 제안에 동의합니까?</p> <p><b>[배경]</b></p> <p>○ 2024년 3월 회의에서 제공된 지침을 바탕으로 Staff는 강제적 문단과 ED XX, 천연자원의 결론도출 근거를 여러 차례 수정함. Staff는 개정된 ED에 대한 IPSASB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변경사항을 요약 및 설명함</p> <p><b>[분석]</b></p> <p><i>의견요청사항(Specific Matters for Comment, SMC)</i></p> <p>○ 다음의 의견요청사항(SMC)이 ED의 pp. 3~4에 추가됨</p> <p>(a) 2024년 3월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공개초안의 범위를 제안하기 위해 사용된 접근방식에 관한 SMC 1이 추가됨</p> <p>(b) SMC 2는 공개초안의 범위 내에서 인식된 천연자원이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며 감가상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박 가능한 가정에 대한 견해를 구하는 내용임</p> <p>(c) SMC 3는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자원의 추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공시를 면제하도록 질문하는 내용임. IPSASB는 2024년 3월 회의에서 이러한 면제 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함</p> <p>(d) 2024년 3월 회의에서 IPSASB는 기업이 전진적 또는 소급적으로 ED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을 허용하는 데에 동의함. 제안을 소급하여 적용하면 특정 기간의 과거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초 적용일의 개시 순자산 및 누적손익은 두 접근방식에서 모두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SMC 4는 ED의 소급 적용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함</p> <p><b>목적과 범위</b></p> <p>○ 문단 1-2의 목적 부분은 기타 유형자산에 대해 IPSAS 기준과 보다 일치하도록 수정됨. 또한 2024년 3월 회의 지침에 따라 3~6항의 적용범위 부분이 간소화됨</p> <p><b>측정</b></p> <p>○ ED 범위 내의 천연자원이 비교환거래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ED의 문단 16~19에 있는 최초 측정에 대한 지침의 순서를 바꾸어 해당 부분에서 먼저 비교환거래에 대해 간주원가(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이어서 교환거래에 대해 원가로 측정하도록 함</p> <p>○ Staff는 일관성을 위해 IPSAS 45의 교환거래에 대한 “원가의 구성” 및 “원가 측정”에 대한 지침을 초기 측정 부분에 통합하는 것을 고려함.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천연자원은 비교환거래에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ED의 지침을 반복하는 대신 IPSAS 45의 관련 문단을 참조하도록 표시하는 것을 제안함. 해당 참조는 ED의 문단 19에서 찾아볼 수 있음</p> <p>○ 2024년 3월 지침에 따라 후속 측정 부분을 수정하여 모든 천연자원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문단 29~39를 추가함. 비한정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의 과소계상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은 ED 문단 29에 언급됨</p> <p><b>공시</b></p> <p>○ 최초 인식 이후 현재가치 측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ED 문단 57~59에 추가됨. 지침의 중복을 피하고자 ED의 문단 59는 IPSAS 45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고려 사항을 설명함</p>

안건 항목	내용
9.2.3	<p><i>적용지침</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3월에 지시된 바와 같이, 보존을 위해 보유하는 천연자원에 대해 제안된 지침이 통합되어 ED 문단 AG4~AG6의 적용지침으로 이전됨. IPSAS 45의 범위 내에서 보존을 위해 보유된 천연자원과 유산 항목 사이의 잠재적 중복을 설명하기 위한 단락 AG7도 추가됨</li> <li>○ 제안된 원칙의 적용 관련성으로 인해 일부 문단은 핵심 문단의 2024년 3월 버전에서 적용지침으로 이전됨. 해당 문단에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AG17 - 교환거래의 신뢰성 있는 측정</li> <li>(b) AG22 - 후속 비용</li> <li>(c) AG23 - 천연자원을 복원하거나 재생하는 비용</li> <li>(d) AG24 - 인식되지 않은 천연자원에 대한 후속 지출</li> <li>(e) AG25~AG33 - 측정, 특히 현재가치 측정 기준에 대한 지침, 현재가치 모델 적용 및 감가상각</li> <li>(f) AG34~AG35 - 인식되지 않은 천연자원의 공시</li> </ul> </li> </ul>

**3 2024년 9월 정례회의**

□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 경과

- (배경)
  - 공공부문에서 천연자원은 많은 국가에서 총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적 부와 유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
  - 현재 IPSAS 문헌에서는 “천연자원”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음
- (목표) 유형의 천연자원 프로젝트의 목표는 천연자원의 인식, 측정 및 표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문보고서와 하나 이상의 공개초안을 개발하기 위함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경과(2024년 9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0. 3월	PB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원 프로젝트 개요 승인</li> <li>• 천연자원 프로젝트 범위 지정</li> </ul>
2021. 6월	CP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보고서의 광범위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하층토자원, 생물자원, 물</li> </ul> </li> </ul>
2022. 3월	CP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보고서 1단계 승인</li> </ul>
2022. 12월	CP	의견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17일까지 약 5개월간 자문보고서에 대한 의견 접수</li> </ul>
2023. 3월	CP	의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보고서 답변 검토(4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설명, 인식, 보고, IFRS6 및 IFRIC20 대응</li> </ul> </li> </ul>
2023. 6월	ED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초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범위, 정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li> </ul> </li> </ul>
2023. 9월	ED	이슈 논의 &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상황에서의 인식 및 측정</li> <li>• 적용지침(AG) 수정</li> </ul>
2023. 12월	ED	이슈 논의 &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강제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론도출근거(BC) 수정</li> </ul> </li> </ul>
2024. 3월	ED	이슈 논의 &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강제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적용지침(IG) 및 예시사례(IE) 수정</li> </ul> </li> </ul>
2024. 6월	ED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초안의 승인까지 진행될 프로젝트 계획 논의</li> <li>• 강제적 문헌 및 문단제정근거 수정</li> </ul>
2024. 9월	ED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초안의 검토 및 승인</li> <li>•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에 대한 페이지별 검토</li> </ul>

- 정례회의 논의사항(발표자: Edwin Ng)
  - 공개초안의 검토 및 승인
  - 비강제 문헌인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에 대한 페이지별 검토 수행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시사점
  - 해당 사항 없음

참고	천연자원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
안건 6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6.2.1	<p><b>ED92, 유형의 천연자원 초안에 대한 개정사항</b></p> <p><b>[배경]</b> 2024년 7월 체크인 회의에서 IPSASB는 ED 92에 대한 자세한 페이지별 검토를 수행했으며 Staff에게 ED 수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사항과 지시사항(instruction)을 제공함</p> <p><b>[분석]</b> <i>결정사항: '유형의 천연자원'에 대한 정의</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의 천연자원은 (a)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b) 용역잠재력 또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 또는 둘 다를 창출하는 항목임” 이 변경사항은 정의에서 용역잠재력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언급해야 한다는 7월의 IPSASB 결정을 반영함. IPSASB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유형의 천연자원이 ED 92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였으나, 해당 사항은 정의가 아닌 ED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임</li> <li>○ 또한 Staff는 정의가 유형의 항목을 지칭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조회함(예: “유형의 천연자원은 ...” 등과 같은 유형의 항목임). Staff는 “유형의”라는 단어가 이미 안건 제목에 포함되어 있고 ED 전체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므로 정의에 추가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제안은 업데이트된 정의에 반영되지 않음</li> </ul> <p><i>지시사항 1: 결론도출근거에서 “유형의 천연자원”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전개할 것</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IPSASB의 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위제목을 추가하고 문단 BC5~BC6를 수정했으며, 이를 통해 유형의 천연자원에 초점을 맞춤</li> </ul> <p><i>지시사항 2: ED에서 “유형의 천연자원”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시된 대로 Staff는 ED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ED에서 “유형의 천연자원”이라는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함</li> </ul> <p><i>지시사항 3: 섹션별 검토에서 제기된 기타 변경 사항</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의 43항은 유형의 천연자원이 해당 자원을 보유하는 기업의 주요 목적에 따라 별도로 표시되어야 하며, 각 유형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이 주요 목적이 설명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됨</li> <li>○ 멤버 및 기술 고문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여러 편집 및 서식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개정은 ED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이나 지침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음</li> </ul> <p><i>기타 변경사항</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변경사항 외에도 제안된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에 대해 BC41 단락이 추가됨</li> </ul>
6.2.2	<p><b>실무적용지침(IG) 및 예시사례(IE)</b></p>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6월 IPSASB 회의에서 IPSASB는 실무적용지침과 예시사례로 구성된 ED 92의 비강제 문헌에 대한 개정 개요를 검토함. 이 검토를 바탕으로 IPSASB는 실무적용지침과 예시사례에 대한 제안된 주제에 동의하고 TF에 개발을 위임함</li> <li>○ Staff는 또한 2024년 6월 회의에서 IPSASB 협의 자문단(CAG)과 제안된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에 대해 논의함</li> </ul>

안건 항목	내용
6.2.2	<p>○ IPSASB의 결정 및 지침과 CAG의 조언에 따라 Staff는 TF와 협력하여 실행지침 및 예시사례의 초안을 작성함</p> <p><b>[분석]</b></p> <p>○ 2024년 6월 결정 및 지침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용지침을 ED 92, 유형의 천연자원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1: 유형의 천연자원이 [초안] IPSAS [X] 또는 다른 IPSAS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결정(문단 IG1~IG3). 이 IG는 ED의 문단 3~4에 있는 범위 지침을 살펴보고 각 실체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li> <li>- B.1: 천연자원의 식별(문단 IG4). 이 IG는 실체가 관할권 내에서 유형의 천연자원을 식별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제공함</li> <li>- C.1: 통제의 결정(문단 IG5~IG12). 이 IG는 통제 지표와 그것들이 물이나 생물자원과 같은 특정한 유형의 천연자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li> <li>- C.2: 지하자원 인식의 어려움(문단 IG13). 이 항은 존재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추출 광물 또는 석유 매장량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함</li> <li>- C.3: 회계 단위(문단 IG14~IG16). 이 항에서는 적절한 회계 단위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범위,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잠재적인 연쇄 효과를 논의함</li> <li>- C.4: 보전(문단 IG17~IG20). 이 IG는 보전이 다른 IPSAS 범위 내의 유형자산이 일반적으로 이용될 때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유형의 천연자원이 주로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요소를 제공함</li> <li>- C.5: 유형의 천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발생한 후속 지출(문단 IG21). 이 항에서는 후속적인 보전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가 ED 문단 8에 명시된 회계처리와 동일하며 유형자산과 관련된 후속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와 유사하다고 설명</li> <li>- C.6: 주요 용도 변경(문단 IG22~IG24). 이 IG는 “재야생화” 개념을 설명하고 토지 용도 변경 시의 회계 절차를 설명</li> <li>- D.1: 현재가치 결정(문단 IG25~IG27). 이 IG는 유형의 천연자원의 현행운영가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함</li> <li>- D.2: 현재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없음(문단 IG28~IG29). 이 IG는 유형의 천연자원의 현재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봄</li> <li>- E.1: 공시의 그룹화(문단 IG30~IG32). 이 IG는 IPSAS가 ED 92의 범위 내에서 유형의 천연자원의 공시를 다른 IPSAS에서 요구하는 공시와 그룹화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금지하지 않으며, 공시를 그룹화하고자 할 때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함</li> </ul> <p>○ 다음의 제안된 예시사례도 추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1: 서로 다른 용도를 갖는 물리적으로 유사한 자산의 회계처리(문단 IE3~IE7). 이 예는 서로 다른 주요 용도때문에 물리적으로 유사한 자산이 서로 다른 기준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줌</li> <li>- 예 2: 자연 공간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문단 IE8~IE10). 이 예는 RPG 3의 예 3(서비스 성능 정보 보고)를 기반으로 하며 녹색 인프라 개발에 대한 잠재적 회계처리를 설명함</li> <li>- 예 3: 사용하지 않는 공공소유 토지(문단 IE12~15). 이 예는 실체가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보전을 위해 보유한 토지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줌</li> <li>- 예 4: 수정된 소급 전환법과 완전 소급 전환법 간의 차이점(문단 IE17~IE28). 이 예는 ED 92의 문단 61~63에 제안된 전환 지침을 살펴봄</li> </ul> <p>○ IG와 IE는 비강제 문헌이기 때문에 Staff는 2024년 9월 회의에서 예외적으로 IPSASB와 이러한 항목을 검토할 계획임. 이는 2024년 6월 IPSASB 회의에서 논의된 접근방식과 일치함</p>

안건 항목	내용
6.2.3	<p><b>ED 92, 유형의 천연자원 초안의 승인</b></p> <p><b>[질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 92의 승인과 ED 92를 120일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까?</li> </ul> <hr/> <p><b>[분석]</b></p> <p><i>적법절차</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원 프로젝트는 2020년 3월 천연자원 프로젝트 개요 및 개요의 공식 승인으로 시작됨. IPSASB는 2022년 5월 9일 천연자원 자문보고서(CP)를 개발하고 발표함. CP 수집 기간은 2022년 10월 17일에 마감됨</li> <li>○ IPSASB는 2023년 3월에 CP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초기 검토를 수행하고 Staff에게 진행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li> <li>○ IPSASB CAG는 CP에서 제기된 중요한 이슈와 IPSASB가 2023년 6월, 2023년 12월, 2024년 6월 회의에서 제기한 다른 이슈를 논의함. CAG는 IPSASB가 분석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과 조언을 제공함</li> <li>○ 천연자원 TF는 여러 차례의 대면 및 화상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논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멤버들의 피드백과 IPSASB의 지시에 따른 ED 92의 범위 및 천연자원의 정의</li> <li>- 멤버 및 IPSASB의 피드백을 고려한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li> <li>- ED 92의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 개발</li> </ul> </li> </ul> <p><i>공개 기간</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IPSASB의 적법절차와 작업기간을 고려해 120일의 일반 공개 기간을 권장함</li> </ul>

**4 2024년 12월 정례회의**

□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 경과

○ (배경)

- 천연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통해 IPSASB는 광물자원의 탐사 및 추출에 관여하는 공공부문의 실체에 발행될 특정 지침의 필요성 확인
- 현재 탐사 및 평가 지출이나 박리원가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부문 회계 지침은 존재하지 않음
- IPSASB는 잠재적으로 다양한 회계 관행을 다루고 향상된 책임성과 비교 목적을 위해 이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목표)

- IPSAS를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에 맞춰 개발\*
  - \* 탐사평가 지출을 자본화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인식된 탐사평가 자산에 대한 측정, 표시 및 공시 요구사항이 포함됨
- IPSAS 지침서를 IFRIC 20,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Stripping Costs in the Production Phase of a Mine)에 맞춰 개정\*
  - \* 노천광산의 폐기물 제거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러한 폐기물 제거 활동을 'Stripping'이라고 함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경과(2024년 9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0. 3월	PB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원 프로젝트 개요 승인</li> <li>• 천연자원 프로젝트 범위 지정</li> </ul>
2021. 6월	CP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보고서의 광범위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하층토자원, 생물자원, 물</li> </ul> </li> </ul>
2022. 3월	CP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보고서 1단계 승인</li> </ul>
2022. 12월	CP	의견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17일까지 약 5개월간 자문보고서에 대한 의견 접수</li> </ul>
2023. 3월	CP	의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보고서 답변 검토(4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설명, 인식, 보고, IFRS6 및 IFRIC20 대응</li> </ul> </li> </ul>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3. 9월	ED	이슈 논의 &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FRS6 및 IFRIC20 대응 필요성</li> <li>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 반영 위치 - IPSAS 부록</li> </ul>
2023. 12월	ED	이슈 논의 &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초안 승인</li> </ul>
2024. 3월	ED	의견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5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접수</li> </ul>
2024. 6월	ED	의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초안에 대한 답변 의견 검토</li> </ul>
2024. 9월	ED, IP	이슈 논의 & 최종 발표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D 답변 분석 및 이슈 논의</li> <li>최종 발표문 페이지별 검토</li> </ul>
2024.12	IP	최종 발표문 승인	-

□ **주요 논의사항**(발표자: Christoph Braxton)

-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ED 86 및 ED 87)와 관련하여 최종 발표문의 검토 및 승인
- ED 86(IFRS 6 대응)와 관련하여 ED 86에 대한 답변 분석, IFRS 6의 공공부문 개정안과 제한적 일치, 결론도출근거
- ED 87(IFRIC 20 대응)과 관련하여 ED 87에 대한 답변 분석, IFRIC 20의 공공부문 개정안과 제한적 일치, IPSAS 12 부록 지침, 결론도출근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시사점**

- 해당 사항 없음

<b>참고</b>	<b>천연자원 - IFRS 및 IFRIC 대응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b>
<b>안건 7</b>	<b>천연자원 - IFRS 6 및 IFRIC 20 대응</b> (Natural Resources-IFRS 6 and IFRIC 20 Alignment)
<b>안건 항목</b>	<b>내용</b>
7.2.1	<p><b>ED 86 및 ED 87: 답변 검토</b></p> <p><b>[목적]</b> 공개초안(ED) 8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ED 87,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상위 수준의 검토를 제공함(IPSAS 12에 대한 개정 사항)</p>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는 2024년 1월 31일에 ED 86와 ED 87을 발표함</li> <li>○ ED 86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안함. 제안은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수정을 제외하고는 IFRS 6(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의 요구사항과 대부분 일치함</li> <li>○ ED 87은 IPSAS 12, 재고자산에 부록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노천광산 채굴 작업 시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를 자본화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때 회계처리지침을 제공하며,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수정을 제외하고는 IFRIC 20(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의 지침과 일치함</li> <li>○ 이 안건 항목은 IPSASB에 ED 86 및 ED 87의 답변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제공함</li> </ul>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 86와 ED 87은 각각 28개의 답변을 회신받음. 두 ED 모두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는 ED 86와 ED 87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하였음</li> <li>○ 각 ED에 대한 답변 검토는 의견요청사항(SM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동의: 응답자는 ED 제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안을 하지 않거나 ED 제안을 지지하는 추가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ED 제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음</li> <li>(b) 부분적 동의: 응답자는 ED 제안에 동의하며 원칙은 수정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제안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제공함. 각 제안은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확한 설명, 편집적인 부분 또는 지침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li> <li>(c) 비동의: 응답자는 ED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함. 응답자가 ED 제안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제안은 ED 제안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의 제안과 함께 고려됨</li> <li>(d) 무응답: 응답자는 구체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음</li> </ul> </li> <li>○ 답변 분류의 하나로, Staff는 답변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여 IPSASB가 각 ED 개발의 일부로 고려하지 않은 사항을 개별 답변에서 제기하는지에 대해 확인함</li> <li>○ 답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포함된 안건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 86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안건 7.2.2</li> <li>- ED 87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안건 7.2.3과 7.2.4</li> </ul> </li> <li>○ 안건 7.3.1과 7.3.3에서는 ED 86, ED 87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기능 및 언어별로 접수된 답변 분석</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변자 조직 및 개인 목록</li> <li>- 각 SMC(의견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요약</li> </ul>
7.2.2	<p><b>ED 86: 제한된 공공부문 개정안과 IFRS 6의 일치(SMC 1)</b></p> <p><b>[권장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IPSASB에 다음을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 31, 무형자산에 대한 수정을 위해 다른 IPSAS에 대한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함</li> <li>(b) 최종 공표문의 결론도출근거(BC)를 수정하여 다음을 명확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문단 8의 일시적 적용 면제에 대한 내용 삭제</li> <li>(ii) 상업적 채굴 작업에 대한 적용이며 용역 제공 목적이 아님</li> <li>(iii) 국가의 탐사권 발행 권한을 설명하는 데까지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음</li> </ul> </li> <li>(c) 보조 문서에서 제시하는 개정 사항을 승인함</li> </ul> </li> </ul>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 86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요청사항(SMC)이 포함되어 있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의견요청사항 1:              IPSASB는 ED 86에서 IFRS 6에 대응되는 기준을 제안하기로 결정함(문단 BC2-BC7 참조). 공공부문을 위한 IFRS 6에 대한 수정안이 용어 및 다른 IPSASB의 서식 및 일관성 수정에 국한한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문단 BC8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로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안건은 최종 공표문에 대한 ED 86의 제안을 강화하기 위한 응답자의 답변에 대해 다루고 있음</li> </ul>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다수의 응답자는(24명, 86%) ED 86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하였음. 3명(11%)의 응답자는 ED 86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1명(3%)의 응답자는 동의 및 비동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li> <li>○ ED 86 제안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한 응답자들은 최종 공표문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음. Staff가 동의 또는 일부 동의한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부록 A.1, A.2)에 따라, Staff는 최종 공표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ED 86에서 생략된 IPSAS 31, 무형자산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기 위해 다른 IPSAS 기준을 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수정안은 IPSAS 45, 유형자산 수정안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해당 IPSAS의 문구에서 이 최종 공표문을 참조하고, 이 주제를 다루는 국제 또는 국가회계 기준을 참조할 수 없음</li> </ul> </li> <li>(b) 상업적 성격의 탐사 및 평가 활동에 대한 적용과 “용역 제공”, 즉 “용역 잠재력”과 관련된 공공부문에 국한되는 용어의 제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BC5 및 문단 BC8을 업데이트하여 최종 공표문의 범위를 명확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업적 이익을 위해 탐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IFRS 6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공공부문과도 연관이 있음에 동의함</li> </ul> </li> <li>(c) IPSAS 3의 원칙을 적용할 때 ‘일시적 적용 면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IPSASB의 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BC11을 업데이트함. 이는 IFRS 6에 대한 IASB의 결정과 일치함. 응답자들은 IFRS 6가 여전히 IAS 8, 회계정책, 회계 추정치의 변경 및 오류의 일부 원칙에 대한 ‘일시적 적용 면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함. IASB가 면제를 영구화하기로 한 결정은 아직 공식 발표에서 영향을 받지 않음. 응답자들은 IFRS 6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ED 86에 공개된 IASB의 결정과 일치하도록 IPSASB가 내린 결정을 BC에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li> </ul> </li> </ul>

안건 항목	내용
7.2.2	<p>(d) 최종 공표문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탐사권을 발행하는 국가의 권한에 대한 회계처리까지 확장되지 않음(문단 BC9 참조)                      많은 응답자는 최종 공표문의 범위가 탐사권 발행 권한에 대한 설명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해석함. BC에서 범위를 명확히 하면 지침을 더 잘 적용할 것으로 보임</p> <p>○ Staff의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되면 재무제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비교성이 제한될 수 있음</li> <li>(b) ED 86는 공공부문의 모든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음</li> <li>(c) 응답자의 관할권에 ED 86 제안을 적용하는 데는 실행가능성이 부족함</li> <li>(d) 일부 탐사 및 평가 자산은 국가가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함</li> <li>(e) 손상 지표는 ED 86 문단 21의 지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됨</li> <li>(f) 손상 지표는 통제 상실을 나타낼 수 있음</li> <li>(g) 공공부문 실체의 일반목적재무보고(GPFR)를 위한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 적용 및 자산 정의에 관하여 불일치가 존재함</li> <li>(h) 탐사 및 평가 자산의 분류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함</li> </ul>
<b>ED 87: 제한된 공공부문 개정안과 IFRIC 20의 일치(SMC 1)</b>	
7.2.3	<p>[권장사항]</p> <p>○ Staff는 IPSASB에 다음을 권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박토 활동 자산에 대한 측정기준이 IPSAS 45 및 IPSAS 46의 측정 요구사항과 일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A14를 수정함</li> <li>(b) 최종 공표문(IPSAS 12 개정) 부록 A의 문단A항에 있는 인식 기준이 실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국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BC10을 수정함</li> <li>(c) 보조 문서에서 제시하는 개정사항을 승인함</li> </ul> <p>[배경]</p> <p>○ ED 87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요청사항(SMC)이 포함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의견요청사항 1:                      IPSASB는 ED 87에서 IFRIC 20에 대응되는 지침을 제안하기로 결정함(문단 BC10 참조). 공공부문을 위한 IFRIC 20에 대한 수정안이 용어 및 다른 IPSASB의 서식 및 일관성 수정에 국한한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문단 BC10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로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p> </div> <p>○ 이 안건은 최종 발표문에 대한 ED 87의 제안을 강화하기 위한 응답자의 답변에 대해 다루고 있음</p> <p>[분석]</p> <p>○ SMC 1은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대다수의 응답자(26명, 94%)가 SMC 1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함. 단 한 명(6%)만이 SMC 1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한 명(6%)의 응답자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음</p> <p>○ SMC 1의 답변에 대한 Staff의 검토를 바탕으로 Staff는 최종 공표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함(IPSAS 12에 대한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박토 활동 자산의 측정 기준이 IPSAS 45 및 IPSAS 46의 측정 요구사항과 일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A14를 수정함                      ED 87은 IPSAS 45 및 IPSAS 46에서 측정 기준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재평가 금액”에 대한 내용을 공개함</li> </ul>

안건 항목	내용
7.2.3	<p>(b) 최종 공표문(IPSAS 12 개정) 부록 A의 문단 A9의 인식 기준에 용역잠재력이 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BC10을 업데이트함. 실체가 이러한 운영을 용역 제공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p> <p>새로운 지침을 IFRS와 일치시킬 때 일반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경제적 이익' 과 함께 '용역잠재력' 원칙을 포함하는 것임. 그러나 IPSASB는 이 지침이 상업적 목적이 있는 사업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응답자들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BC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을 원함</p>
7.2.4	<p><b>ED 87: IPSAS 12의 부록 지침 (SMC 2)</b></p> <p><b>[권장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IPSASB에 다음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 12의 부록 A에 지침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종 공표문(IPSAS 12, 재고자산에 대한 개정)의 문단 BC12를 개정함</li> <li>(b) 보조 문서에서 제시하는 개정 사항을 승인함</li> </ul> </li> </ul>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 87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요청사항(SMC)이 포함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의견요청사항 2:              IPSASB는 ED 87에서 IPSAS 12, 재고자산에 대한 수정안으로 IFRIC 20에 대응되는 지침을 제안하기로 함(문단 BC11 참조).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문단 BC11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로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안건은 최종 발표문에 대한 ED 87의 제안을 강화하기 위한 응답자의 답변에 대해 다루고 있음</li> </ul>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C 2는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대다수의 응답자(27명, 97%)가 SMC 2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하였음. 단 한 명의(3%) 응답자만이 SMC 1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음</li> <li>○ SMC 2 제안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한 응답자는 ED 87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함.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 및 부분적 동의 의견 일부를 요약하여 Staff는 최종 발표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B가 IPSAS 12, 재고자산 부록 A에 지침을 포함하기로 한 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BC12를 업데이트함. 2023년 12월 IPSASB의 논의에 따라 이 해석의 가장 적절한 위치로 지정됨</li> <li>응답자들은 IPSASB가 IPSAS에 지침을 포함시키는 것의 적절한 이유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함</li> </ul> </li> <li>○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에 대한 Staff의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해석 지침은 IPSASB의 별도 발표문이어야 함</li> <li>(b) 응답자의 관할권에 ED 87 제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행가능성이 부족함</li> </ul> </li> <li>○ Staff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 응답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 12의 부록. 응답자는 IPSASB가 ED 87 개발의 일부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 특히 해석 지침을 IPSAS 12의 부록으로 포함하는 것, 즉 IPSASB 기준 제정 방식이 아닌 별도의 발표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음.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li> <li>(b) 관할권 차이. 한 관할권에서는 그 관할권에서 광물 채굴에 정부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다른 응답자들은 지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li> </ul> </li> </ul>





5

**중요성 판단 기준**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 5 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 ■ 배경 및 목적

- (배경) 일반목적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의 부재
  -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일부 공공부문 실체들은 IPSAS의 공시 요구사항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활용함
  - 중요성 판단 기준의 부재는 재무제표에 관련성이 낮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등의 공시 문제를 초래함
- (목적) IPSAS 기반 일반목적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의 중요성 판단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개발

### ■ 주요 논의사항

-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 개요(PB)의 목적 및 범위 논의
- IPSAS 문헌에서의 중요성 정의 일관성, 중요성 지침의 지위와 문서 유형 등의 주요 이슈 논의

### ■ 진행 경과(2024년 말 기준)

- 프로젝트 개요의 논의(2024. 12.) 및 승인(2025. 3.) 이후 공개초안(ED) 개발이 진행될 예정임

Project Brief (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 (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 (공개초안)	IPSAS (기준서 발표)
--------------------------	-------------------------------	--------------------------	-------------------

## ■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보고서

### 1 2024년 12월 정례회의

#### □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 경과

- (배경) 일반목적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 부재
  - 일부 공공부문 실체들이 중요성 판단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IPSAS의 공시 요구사항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는 실정임
  - 이러한 관행은 재무제표에서 관련성이 낮은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반면, 실제로 중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공시 문제를 초래함
  - 공공부문실체가 IPSAS에 따라 일반목적재무제표(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이하 GPFs)를 작성할 때, 명확한 중요성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지침이 필요함
- (목표) IPSAS 기반 GPFs 작성 과정에서의 중요성 판단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개발

〈프로젝트 추진 계획(2024년 12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4. 12월	PB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의 목적 및 범위 논의</li> <li>• 주요 이슈 논의</li> </ul>
2025. 3월	PB	PB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B 승인</li> </ul>
2025. 9월	ED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초안의 이슈 논의 및 검토</li> </ul>
2025. 12월	ED	ED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초안 승인 및 발행('26년 1월)</li> </ul>
2026. 4월	ED	의견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26년 4월 말까지 4개월간)</li> </ul>
2026. 6월	ED	의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회신 검토</li> </ul>
2026. 9월	IP	검토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검토 및 IPSAS 승인</li> </ul>
2026. 10월	IP	기준서 발행	-

#### □ 정례회의 논의사항(발표자: Agustina Llambi)

- 중요성 판단 기준 프로젝트의 목적 및 범위 논의
- 중요성 판단 기준 프로젝트의 주요 이슈 논의

<b>참고</b>	<b>중요성 판단 기준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b>
<b>안건 4</b>	<b>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b>
<b>안건 항목</b>	<b>내용</b>
	<b>Project Brief: 목적과 범위(Objective and Scope)</b>
4.2.2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9월 회의에서 IPSASB는 중요성 판단 기준에 관한 제한적 범위 프로젝트의 착수에 동의함</li> <li>○ 해당 프로젝트는 2021 중기 업무 프로그램 협의(2021 Mid-Period Work Program Consultation)에서 사전 약정된 사항임</li> <li>○ IPSASB는 IFRS 실무서 2,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와 정합성을 갖춘 지침을 개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실체가 IPSAS에 따라 일반목적재무제표(GPFS)를 작성할 때 중요성 판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임</li> </ul> <hr/>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체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요성 판단을 하기보다는 IPSAS의 공시 요구사항을 점검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IPSASB는 중요성 판단 기준 프로젝트를 업무 프로그램(Work Program)에 추가함</li> <li>○ 중요성은 재무제표 작성 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실체는 IPSAS에 따라 인식, 측정, 표시, 공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성 판단을 수행하여야 함. 이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실체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IPSAS 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li> <li>○ 재무제표의 주석에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 판단 방법과 관련된 지침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에 따라 제안된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 기반 GPFS 작성 과정에서의 중요성 판단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개발</li> </ul> </li> <li>○ 이와 같이 제안된 본 프로젝트의 목적 및 범위는 다음에 부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가 2021 중기 업무 프로그램 협의에서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사전에 약속한 이유</li> <li>- 중요성 판단 관련 공공부문 특화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IFRS 실무서 2의 목적 및 범위</li> </ul> </li> </ul>
	<b>Project Brief: 주요 이슈(Key Issues)</b>
4.2.3	<p><b>[Staff 권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IPSASB가 Project Brief에 다음의 주요 이슈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B의 문헌 전반에서 중요성의 정의가 일관되도록 조정</li> <li>(b) 해당 지침의 지위와 문서의 유형</li> </ul> </li> </ul> <hr/>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연구 및 범위 설정 단계에서 다음의 주요 이슈를 식별하였으며, 이를 Project Brief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음</li> </ul> <p><b><i>IPSASB의 문헌 전반에서 중요성의 정의가 일관되도록 조정</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실무서 2는 기업이 IFRS에 따라 일반목적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요성 판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실무서 2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개념체계에 따른 중요성 정의를 차용하며, 이는 IFRS 18,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중요성 정의와 유사함</li> </ul>

안건 항목	내용
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IPSASB 문헌의 경우, IPSAS 1 재무제표의 표시에 따른 중요성의 정의와 IPSASB 개념체계에 따른 중요성의 정의는 서로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는 IPSAS 1이 2024년에 개정된 IPSASB 개념체계 제3장 질적 특성의 완료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IPSAS 1을 개정하여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고자 논의된 바는 없음</li> <li>○ 또한 IPSAS와 IFRS의 중요성 정의 간에도 서로 차이가 존재함. IPSAS에서는 “이용자(users)”를 기준으로 중요성을 정의하는 한편, IFRS에서는 “주요 이용자(primary users)”를 기준으로 중요성을 정의함</li> <li>○ 중요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IPSASB 문헌 전반에서 중요성의 정의가 일관되도록 하는 조정이 필요함.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IPSASB 문헌상 중요성 정의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검토해야 하며, 이는 IPSAS에 따른 중요성 판단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는 데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li> </ul> <p><b>본 지침의 지위와 문서의 유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는 해당 지침의 지위와 이러한 지침이 포함될 문서의 유형을 결정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ASB는 중요성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독립적인 비강제 지침인 실무서(Practice Statement) 형태로 발행하였음</li> <li>(b) IPSASB가 IASB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할 경우, 어떤 유형의 비강제 문서가 적절한지 결정해야 함</li> </ul> </li> </ul>